

2023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1231-01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판례분석 연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법무부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공동연구자	배수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연구자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연구자	김예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본 연구보고서는 2023년도 법무부 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내용은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

〈목 차〉

제1장 서설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3
가. 분석대상자료	3
나. 분석대상자료 수집방법	5
제2장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	7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7
2. 법원 아동학대 통계	8
3. 분석대상 판결문 아동학대 집계	10
가. 분석대상사건	10
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10
다.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11
라. 소결	11
제3장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분석	12
1.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 분석 개요	12
1. 학대행위의 분류	12
가. 신체적 학대행위	12
(1) 정의	12
(2) 신체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음	13
(3) 신체적 학대행위의 이유 개요	14
(4) 원칙적으로 처벌이 인정되지 않음	15
(5) 신체적 학대행위 내용	17
나. 정서적 학대행위	18

(1) 정의	18
(2)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 충분함	19
(3) 정서적 학대행위 예시	21
(4) 정서적 학대행위 이유	21
(5) 신체적 학대행위 내용	22
다. 유기·방임행위	23
(1) 정의	24
(2) 유기·방임행위의 주체는 아동의 보호자	24
(3) 방임행위의 판단방법	26
(4) 방임행위의 이유 및 내용	27
라. 성적 학대행위	27
(1) 정의	27
(2) 성적 학대행위의 판단방법	29
(3) 성적 학대행위의 이유	30
(4)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	31
마. 중복 학대행위	32
3. 교육기관 별 학대행위	33
가. 유치원	33
(1) 신체적 학대행위	33
(2) 정서적 학대행위	35
(3) 유기·방임행위	37
(4) 중복 학대행위	37
나. 초등학교	38
(1) 신체적 학대행위	38
(2) 정서적 학대행위	43
(3) 유기·방임행위	49
(4) 성적 학대행위	49
(5) 중복 학대행위	51

다. 중학교	52
(1) 신체적 학대행위	52
(2) 정서적 학대행위	57
(3) 성적 학대행위	60
(4) 중복 학대행위	65
라. 고등학교	67
(1) 신체적 학대행위	67
(2) 정서적 학대행위	68
(3) 유기·방임행위	70
(4) 성적 학대행위	70
(5) 중복 학대행위	75
마. 기타(학원 등)	76
(1) 신체적 학대행위	78
(2) 정서적 학대행위	85
(3) 유기·방임행위	91
(4) 성적 학대행위	91
(5) 중복 학대행위	96
제4장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례 심층분석	98
1. 분석대상사건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판례의 경향	98
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신빙성 판단	98
나. 공소사실 특정 기준	100
다. 아동학대 유형 사이의 죄수관계	101
라. 아동학대 판단 기준	102
2.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의 태도	104
가.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109
나.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109
다. 상당한 지도방법 등이 아닌 경우	110
라. 과도한 방식을 사용한 지도 등의 경우	111

마.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1
(1)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112
(2)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112
(3)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한 행위	112
3. 판결문 심층 분석	113
가.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113
나.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116
다. 상당한 지도방법 등이 아닌 경우	121
라. 과도한 방식을 사용한 지도 등의 경우	137
마. 성적 학대행위 판례 심층 분석	148
(1)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148
(2)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150
(3)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행위-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서적 학대로 판단	156
(4) 수업시간에 부적절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다수한 행위	160
(5) 수업 외 온라인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발언이나 요구를 한 행위	166
 제5장 장애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례	170
1. 분석의 개요	170
2. 신체적 학대행위 판례	172
3. 정서적 학대행위 판례	176
4. 성적 학대행위 판례	182
5. 중복 학대행위 판례	183
 제6장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무죄 판결 심층분석	187
1. 분석의 개요	187

2. 신체적 학대행위 무죄 판례	188
3. 정서적 학대행위 무죄 판례	198
4. 유기·방임행위 무죄 판례	214
5. 성적 학대행위 무죄 판례	217
6. 중복 학대행위 무죄 판례	223

제7장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분석225

1.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개요	225
가. 아동학대 범죄 양형 관련 선행 연구	225
나. 아동학대 범죄 양형의 특수성	226
(1) 법률 개정 및 양형기준표의 마련	226
(2)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진행 가능성	227
(3) 아동학대 행위태양의 다양성	228
(4) 피해자 중심의 양형요소 고려의 필요성	229
다.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양형분석의 특수성	230
2.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232
가. 2014년 舊양형기준	232
나. 2018년 수정 양형기준	234
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235
3.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판례 양형 분석	240
가. 가중인자	241
나. 감경인자	242
다. 피해자 관련 요소	249
(1)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시	250
(1)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판시	251
라. 교원 등의 지위	254
마. 지도 및 훈육의 목적 등 참작할 사유	258

제8장 결어262

법원¹⁾ 이름 색인

대법원	대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천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법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영동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법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서부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주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김천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상주지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지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동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서부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지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지원	울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여주지원	울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지원	울산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지원	울산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지원	울산지방법원 거창지원	거창지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목포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장흥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영월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홍성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주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정읍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논산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남원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안지원		

1) 시군법원 및 가정/회생/행정/특허법원은 제외하였음

제1장 서설

1. 연구의 필요성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3호).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교사,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은 위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아동학대 행위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²⁾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7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던 2020년경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등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³⁾ (단위: 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치원교직원	281	189	155	118	140	100
초중고교직원	1,345	2,060	2,154	882	1,089	1,602
학원,교습소 종사자	217	176	320	208	319	254
보육교직원	840	818	1,384	634	1,221	600

202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6,243명의 교사를 상대로 한 ‘아

2)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은 전체의 82.7%로 나타났다.

3)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0명 중 9명은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받거나 받은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61.7%였고,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고 밝힌 교사의 61.4%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신고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폭언, 따돌림 유도, 차별대우 등의 정서 학대로 61%에 달하였다.

한편,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의 교사 등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피해 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안내하여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도 있다.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의 학대의 신고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기관 내에서 아동학대의 신고의무 또는 아동 보호의무를 가지고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의 다수는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되거나 신고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필연적으로 수사 및 재판 등 사법절차가 뒤따르게 되는바, 이러한 절차는 행위자들이 소속된 교육기관의 향후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학대행위자의 분리를 통한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해 아동 이외의 다수의 학생들의 수업권과 사이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학대행위자의 학대 내용 및 정도가 확정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따라서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을 분석 결과는 학대 원인, 상황 및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차후 교육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억제 정책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가. 분석대상자료

본 연구는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례를 통한 학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동법 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의 범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교육기관에서 교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집⁴⁾의 경우는 주로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점 및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다만, 학원은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곳이라고 규정⁵⁾되고, 지역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상당한 시간을 학원 교육과정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교육기관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각종 “학원” 내 교육종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사자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아동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동법 제2조)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172호 2016. 5. 29. 일부개정]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해당 규정은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⁶⁾. 본 조항이 신설된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등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의 합의가 있더라도 종결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 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할 판결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2017. 1. 1.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하였다⁷⁾. 아동학대 사건이 수사에서 재판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 1. 1. 이후부터 2023. 8. 31.까지 선고된 판결 중 범행일자가 2017. 1. 1. 이후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판결선고일 기준 연도별 심층분석 판결문 수〉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46	80	78	75	34	19

6)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7) 예외적으로 2017년 이전 사건이 매우 드물게 분석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아동대상 사건의 특성상 적시 신고가 되지 못한 사정 및 행위 양태나 동기, 재판 결과 등이 참고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으로만 포함하였다.

나. 분석대상자료 수집방법

판결문은 법원 대국민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열람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므로, 교육종사자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판결문을 검색하였다. 행위자 관련 키워드는 “교사 아동학대”, “강사 아동학대”, “담임 아동학대”, “선생 아동학대”, “감독 아동학대”, “코치 아동학대”, “지도자 아동학대”, “지도사 아동학대”, “지도원 아동학대”, “시설장 아동학대”, “센터장 아동학대”, “관장 아동학대”, “원장 아동학대”, “학원 아동학대”, “부장 아동학대”, “치료사 아동학대”로 검색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거주시설 종사자는 본 연구범위인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2018. 1. 1.부터 선고된 모든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상 “선고일자(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연도별 검색기준을 2018. 1. 1.부터 2023. 8. 31.까지 선고된 판결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검색된 판결 수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키워드 검색 판결문 수〉

(단위: 건)

키워드\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사 아동학대	211	308	296	279	190
강사 아동학대	25	27	36	32	28
담임 ⁸⁾ 아동학대	75	30	24	122	6
선생 아동학대	0	0	0	0	0
감독 ⁹⁾ 아동학대	114	166	170	232	205
코치 아동학대	7	12	16	20	12
지도자 아동학대	0	4	5	3	5
지도사 아동학대	1	2	4	1	1
지도원 아동학대	7	2	6	9	2
시설장 아동학대	0	1	9	6	2
센터장 아동학대	1	0	4	7	2
관장 아동학대	6	10	11	7	15
사범 아동학대	0	0	0	0	0
원장 아동학대	68	93	83	95	68
학원 아동학대	0	0	0	0	0

부장 아동학대	8	8	11	7	5
치료사 아동학대	0	3	6	3	2
합계	523	500	681	599	338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된 판결문 중 중복 검색된 판결문,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가 아닌 판결문, 성적 학대행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성폭력 사안은 제외하고 각 연도별 분석할 판결문을 최종 선별하였다.

-
- 8) ‘담임 아동학대’로 검색한 것임(담임, 담임교사, 담임 교사, 담임선생님, 담임 선생님, 담임보육교사, 담임 보육교사 등이 함께 검색되었음)
- 9) ‘감독 아동학대’로 검색했을 때, 행위자의 직업이 “감독”인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 “보호·감독하는”,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함께 검색되었으며, 이 중 행위자가 “감독”으로 된 판결문만을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제2장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¹⁰⁾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2018년	3,436	5,862	910	2,604	11,792
2019년	4,179	7,622	883	2,885	14,476
2020년	3,807	8,732	695	2,737	14,934
2021년	5,780	12,351	655	2,793	16,026
2022년	4,911	10,632	609	2,044	9,775

<연도별 대리양육자 아동학대 건수>

(단위: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치원교직원	189	155	118	140	100
초중고교직원	2,060	2,154	882	1,089	1,602
학원및교습소종사자	176	320	208	319	254
아동복지시설종사자	313	408	556	217	175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33	87	14	58	8
기타시설종사자	27	63	12	93	69
부모의동거인	270	363	444	404	193
보육교직원	818	1,384	634	1,221	600
위탁부	7	3	4	6	2
위탁모	2	8	16	17	9
아이돌보미	11	41	42	46	35

<연도별 대리양육자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2018년	1,702	2,473	823	490	5,488
2019년	2,593	3,352	687	857	7,489
2020년	1,504	1,941	243	443	4,131
2021년	1,995	2,618	245	451	5,314
2022년	1,388	2,195	220	172	3,975
계	9,182	12,579	2,218	2,413	26,397

※중복학대 포함

10) 2018~202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2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미만	108	227	3	207	545
1~3세	664	1,636	2	467	2,769
4~6세	1,172	2,504	35	578	4,289
7~9세	2,462	3,941	120	677	7,200
10~12세	3,465	4,755	184	610	9,014
13~15세	4,160	4,899	320	439	9,818
16~17세	1,926	2,283	202	150	4,561

※중복학대 포함

2. 법원 아동학대 통계¹¹⁾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동 복지 법	아동 학대 처벌 법	아동 복지 법	아동 학대 처벌 법	아동 복지 법	아동 학대 처벌 법	아동 복지 법	아동 학대 처벌 법	아동 복지 법	아동 학대 처벌 법
아동보호 사건접수		2,933		4,153		4,878		8,765		8,524	
1 심	접수	594	144	651	267	696	257	870	291	753	289
	유 기 징역	72	16	114	33	106	34	176	63 ¹²⁾	147	53
	징역 집 행 유 예	246	58	246	96	282	85	349	93	336	107
	벌금 형	143	36	137	39	150	62	186	55	78	129
	벌금 집 행 유 예	1		7		10		19	3	2	3
	선고 유예	17	6	14	10	12	1	9	6	6	28
	무죄	14	16	20	10	21	22	23	15	16	79

11) 2018~2022.사법연감

	면소										1
	공 소 기각					1					2
	소 년 부 송 치	2		1		5		2			143
	기타	34	7	52	32	50	38	58	26	25	142
	합계	529	139	591	220	637	242	822	262	788	287
항 소 심	접수	232	72	242	88	252	100	308	129	285	148
	유 기 징역	15	4	28	2	17	3	27	4	17	19
	징 역 형 집 행 유 예	22	11	39	16	30	19	41	21	33	11
	별 금 형	24	5	30	15	17	9	16	9	18	7
	별 금 형 집 행 유 예	1		1		1		3		4	2
	선 고 유예	5	3	6	5		2	1		1	
	무죄	6	3	12	1	2	1	2	6	5	5
	형 면 제									1	
	면소									1	
	항 소 취하	5		6	2	8		3	1	6	4
	기타	4	3	12		7	1	7	2	9	
	합계	202	81	245	69	216	79	254	132	277	108
상 고 심	접수	63	25	82	29	62	31	82	52	82	41
	환송			1	1	1	1	1	1		1
	이송									1	
	상 고 기각	25	16	42	14	21	10	25	24	35	34
	상 고	4		4	2	2	1	8	2	10	4

취하											
기타	31	8	43	9	31	15	48	15	40	15	
합계	64	24	90	26	55	27	82	42	86	54	

3. 분석대상 판결문 아동학대 집계

가. 분석대상자료

키워드를 통해 판결문을 검색하여 분석대상 판결문을 선별한 결과 1심 판결 선고 기준 2018년에 선고한 판결문 46건, 2019년에 선고한 판결문 81건, 2020년에 선고한 판결문 78건, 2021년에 선고한 판결문 75건, 2022년에 선고한 판결문 34건, 2023년에 선고한 판결문 19건, 합계 333건을 분석하였다. 교육기관 내에서 교육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은 아니지만, 각 행위유형별로 선별하여 검색한 판결문이 아니라 행위자의 직업 유형에 따라 검색한 결과이므로, 그 자체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¹³⁾	계 ¹⁴⁾
2018년	27	27	4	8	66
2019년	56	48	0	19	123
2020년	48	37	3	23	111
2021년	32	30	2	30	94
2022년	17	20	0	10	47
2023년	10	6	0	5	21
계	190	168	9	95	462

※ 중복학대 포함

12) 무기징역형- 1명

13) 성학대와 상상적경합으로 처벌된 강간 1건, 위력에 의한추행 10건, 강제추행 1건 포함

14) 중복학대를 포함하였기에 판결문의 합계와 학대유형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

다.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단위: 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계 ¹⁵⁾
유치원교사 등 ¹⁶⁾	12	14	3	0	29
초등교사 등 ¹⁷⁾	44	38	1	10	93
중등교사 등 ¹⁸⁾	26	24	0	24	74
고등교사 등	16	20	1	35	72
특수교사 등 ¹⁹⁾	20	18	2	1	41
학원강사 등 ²⁰⁾	67	46	2	22	137
기타 ²¹⁾	4	4	0	2	10
계	189	164	9	94	456

라. 소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았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줄어든 반면 성적 학대 비율이 높아졌다. 장애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사의 경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았으며, 학원 강사 등에 의한 아동 학대 유죄판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중복학대를 포함하였기에 판결문의 합계와 학대유형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6) 유치원교사 등: 보육교사, 원장, 부원장, 도우미교사 포함

17) 초등교사 등: 담임교사, 교과교사, 운동부코치·감독, 방과후교사, 기간제교사 포함

18) 중등교사, 고등교사 등: 담임교사, 교과교사, 운동부코치·감독, 기간제교사 포함

19) 특수교사 등: 초·중·고등 특수교사, 생활재활교사, 특수지도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포함

20) 학원 등: 교과목강사, 교과목학원장, 공부방교사, 예체능관장·원장·코치, 학습지 강사, 과외교사, 학원운전기사, 대안학교교장, 어학원인솔자 포함

21) 기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법무부복지공단 **각 소속교사**

제3장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분석

1.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 분석 개요

2018. 1. 1.부터 2023. 8. 31.경 사이에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과외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판결문을 기관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류하고 학원과 과외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 기관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행위, 성적 학대, 중복 학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가 선고된 각 판결문에 실시된 학대의 원인이나 동기 등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실제로 처벌된 아동학대의 행위를 명시하여 아동학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후, 문단의 마지막에 학대행위의 유형을 기재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판례에 따라 피해 아동이라는 표현과 피해자라는 표현이 혼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제3항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를 소개할 때 특별한 이유나 원인 설명 없이 학대행위로 나아간 것은 학대행위만 기재하였다.

2. 학대행위의 분류

가. 신체적 학대행위

(1) 정의

신체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상해에 이를 정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 신체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음

자백하지 않는 사건에서 아동학대 행위자는 신체 학대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신체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교육 목적이나 훈계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3) 신체적 학대행위의 이유 개요

유치원에서 행위자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유로는,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혔다거나 피해 아동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어지럽혔다 등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에서 행위자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유로는,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려고 했다, 소란스럽게 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시끄럽게 했다, 시험에서 졌다, 정리하지 않고 장난친다 등이 확인되었다.

중학교에서 행위자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유로는,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았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 청소를 하지 않았다, 책상에 바르게 앉지 않았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연습을 잘 못했다,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다 등이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행위자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유로는, 말대꾸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하여, 학급 분위기를 흐렸다 등이 확인되었고, 학교 현장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가 신체적 학대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기타 기관에서 행위자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유로는, 가르쳐 준 내용을 잘 모른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 장난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 연습을 잘 하지 않는다, 욕을 하였다, 지각했다, 가르쳐 준 대로 따르지 않는다 등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교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저지른 일들로 파악되었다. 법원은 이들 행위를 유죄로 보면서 피고인이 훈계나 시정을 위한 신체 학대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고 신체 학대로 나아갈 불가피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음을 설시하고 있다.

(4) 원칙적으로 체벌이 인정되지 않음

(가)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체벌과 훈육에 대한 구별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0조,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7항 등에 의하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도방법 중 특히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한 때, 즉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22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 따르면 체벌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시기에도 체벌이 교육 목적으로 불가피한 때에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정당행위라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개정 소요

초·중등교육법은 2022. 12. 27. 법률 제1909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에 대한 징계의 권한을 교장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동법 제18조)을 두고, 동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의 지도(징계)의 방식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 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의 양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²²⁾ 정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대한 일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2. 12. 27. 법률 제19096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기존 동조에서 학교장에게만 인정하고 있던 학생의 지도권한을 교원에게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제20조2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3. 9. 27. 법률 제19738호로 개정된 동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하였다²³⁾.

22) 교육부, 2022. 12. 27.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교육부, 2023. 8. 23.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참조

23)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령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체벌과 훈육의 구별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교원이 훈육이나 훈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체벌이나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 신체적 학대행위 내용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체적 학대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아동의 몸이나 팔을 잡아 흔들고 몸, 팔이나 손목을 잡아 끌거나, 주저 앉히거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얼굴을 쥐어박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얼굴을 때리고 이마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의 신체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위 특성을 보인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볼을 비비고 꼬집고, 목젓, 뺨, 턱, 어깨, 가슴, 엉덩이, 배, 부위를 때리고, 스테이플러, 물병, 배구공을 아동을 향해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몸을 힘껏 누르고, 목을 조르고, 팔이나 목, 다리 등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고, 친구들에게 때리게 하고 옆드려뺨쳐를 시키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머리, 뺨, 목, 팔, 손바닥,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리고, 다리로 발로 차고, 옆드려 뺨쳐를 시키고, 긴 구간을 여러 바퀴 왕복하여 뛰도록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는 시키고, 멍살 잡아 밀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다.

학원 등 기타 기관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건을 아동을 향해 던지거나, 뺨, 얼굴, 머리, 명치, 가슴, 배, 팔, 등,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 가슴 등을 꼬집고, 기합을 주고, 멍살을 잡아 내동댕이 치고, 손으로 찌르고, 발로 차고, 급소를 누르는 행위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된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잘못된 관행으로 있어왔던 체벌행위가 아직 교육기관에 남아 있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현행법령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벌은 물론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된 행위들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이나 학부모, 일반적인 제3자가 보기에 도 상기 열거된 행위들이 훈육상 불가피했다고 수용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행위자들은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를 시정하거나 교정할 목적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행위자는 가르치는 지위에 있고 피해아동은 배우는 위치 있다는 점과 더욱이 피해아동은 가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저항하기 쉽지 않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행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지도의 명목하에 폭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1) 정의

본 연구에서 교육기관을 통틀어 신체적 학대 이외 가장 많은 행위 유

형은 정서적 학대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방임이나 유기로 인정된 사건이 적은 것을 감안하면,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이외에 대부분의 학대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고, 체벌이 금지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동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들, 욕설 등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금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말한다²⁵⁾.

(2)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 충분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에 상처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학대 고의가 없었다거나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행위자가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만 있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다.

24) 2022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 수는 27,971 건 이었는데, 그 중 정서적 학대 사건은 10,632 건(전체의 38%)이었고, 중복학대 (9,775 건)에 대부분 정서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서적 학대와 중복학대 총 합계는 20,407 건(전체의 73%)에 달했다.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5)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여기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거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 13488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도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하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학대를 당한 아동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결정)』라고 판시하였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예시하였다.

(3) 정서적 학대행위 예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범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채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라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아동에 대해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다.

(4) 정서적 학대행위의 이유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인사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밥을 늦게 먹고 식판정리를 하지 않는다 등이 행위자가 정서적 학대를 한 이유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학생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학생이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 발표하지 않는다, 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 친구와 싸우고 억울해한다, 운동 실력이 부족하다, 떠든다, 숙제에 이름을 쓰지 않았다 등이 행위자가 정서적 학대를 한 이유로 확인되었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늦잠을 잤다,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동작이 느리다,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등이 행위자가 정서적 학대를 한 이유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교실에 늦게 들어왔다, 교사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 운동을 잘 못한다, 운동하기 싫다고 했다 등이 행위자가 정서적 학대를 한 이유로 확인되었다.

기타 기관에서는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거짓말한다고 의심해서, 반말한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5) 정서적 학대행위 내용

정서적 학대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에 따라 폭언이나 위협의 정도가 달라질 뿐 모든 교육기관에서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팽개치고, 신문지를 구겨 얼굴을 향해 던지고, 귀를 세게 잡아당기거나 5분간 계속 의자에 앉아 있게 하거나 앉지 못하게 하거나 간식을 뺏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학생의 작품을 뜯고,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구렛나루를 잡아당기고, 턱을 잡아 흔들고, 겁을 먹고 우는 아이 얼굴 옆에 대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손목을 비틀어 넘어뜨리고 바닥, 벽을 향해 던지거나 내리 찌고, 학생의 숙제를 찢어버리고, 교실 앞에 서 있게 하거나, 개새끼야, 음치새끼야, 미친놈, 찌질이, 이것도 못하냐, 아가리에 불싸질러 버린다, 뇌가 없냐, 파충류의 뇌, 씹할새끼 라고 말하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병신, 또라이, 좆만이, 멍청이, 지랄, 개보다도 못한 새끼, 씨발새끼,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하고, 재수 없다고 말하며 물병을 집어던지고, 열차려를 시킨 후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시키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능지처참을 하겠다, 자결해라, 인성이 지저분하다 등 폭언하고, 엉덩이를 세계 걸어차고, 용지를 먹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학부모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

기타 기관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어깨, 등, 엉덩이 등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허벅지를 밟고, 바지를 잡아당겨 속옷이 보이게 하고, 방에 혼자 두고, 넘어뜨리고, 물건을 던지고, 닥쳐줄래, 아이큐가 70인가, 뒤지기 싫으며 똑바로 해라, 또라이 세포가 있다, 인간 쓰레기, 멍청하다, 개새끼, 씨발새끼, 병신 등이라고 말하고, 욕설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겁을 먹게 하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

다. 유기·방임행위

(1) 정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기·방임 행위는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기관보다는 가정에서 유기·방임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유기·방임행위로 분류된 사건은 다른 학대행위 유형에 비하여 그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 특히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유기행위로만 기소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2) 유기·방임 행위의 주체는 아동의 보호자

대법원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 달리 ‘아동의 보호자’가 그 지위에서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 달리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는 자 역시 아동의 보호자로서 유기, 방임행위의 주체가 되고, 학원의 교사 역시 계약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3) 방임행위 판단방법

대법원은 방임행위를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역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는 학대 행위의 일종이므로 방임행위에도 방임의 고의가 필요하고, 학대행위 성립 여부는 여타의 형사법 해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대법원이 방임행위에 관하여『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

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49 판결, 대법원 2013도1493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4) 방임행위의 이유 및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결 중 방임행위로 처벌된 행위는 아래의 4개로 확인되었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고열을 보이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교실 밖에 방치한 행위, 고등학교에서 후배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한번만 때려도 마비가 되는 부분을 안다고 하면서 더 아픈 부위를 알려준 행위, 영어 학원에서 아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밥을 굶긴 행위, 체험학습을 가던 단체 버스에서 초등학생 아이에게 비닐에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창피하게 생각한 아동이 체험학습을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동을 두고 가버리는 행위 등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자로서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경우이다.

라. 성적 학대행위

(1) 정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이다. 성적 학대행위는 통상의 성범죄와 성착취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은 물론이고,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 행위 역시 포함되므로 통상의 성폭력 범죄보다는 범주가 넓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²⁶⁾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구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 중에는 교육기관에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한 사례가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의 주목하여 분석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력, 성착취 범죄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만 아니라 언어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성희롱도 포함된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2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성적 학대행위의 판단방법

성적 학대행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의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²⁷⁾.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2항, 제3항)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제3조 제7호)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란 아

27) 대법원 2022. 7. 28. 2020도12419 판결 등 참조

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대법원은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2174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다.

(3) 성적 학대행위의 이유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결문 중에는 유치원에서 성적 학대가 인정되어

처별된 사례는 없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아동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상황을 이용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다. 중학교에서는 잘했다는 이유로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나아간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말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행위들이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다.

기타 기관에서 행위자가 성적 학대행위로 나아간 이유로는 약속을 지켜 등원하여서, 성교육한다며, 수련 과정에서 느닷없이, 상담 중 갑자기 등 무방비한 상태인 아동에게 접근이 가능한 상황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아동의 처지를 이용하여 등이 확인되었다.

(4)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행위로, 허리를 감싸 안고, 등이나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주무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안거나 밀착시키고, 손을 잡는 등이 확인되었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행위로, 성기 부위를 톡톡 치고,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딸치냐, 가슴 없잖아, 야동 보냐, 허를 빨아먹어 등이 라고 말하고, 외모 평가를 하고, 발기된 성기를 아동의 신체에 닿게 하고, 강제로 안거나 안도록 하고, 손을 잡고 손가락지를 끼고,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브래지어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 허리 등을 쓰다듬는 등이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팔뚝을 주물거리고, 어깨를 감싸 만지고, 화장실에 가서 옷 벗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말하고, 자위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말하고, 외모나 몸매에 대해 말하고, 가슴, 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안고, 성기를 잡아당기고, 노래방에서 되게 참았어 라며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이

확인되었다.

기타 기관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행위로, 옷 속으로 손, 머리, 가슴, 팔, 등, 허리, 골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안고, 사랑한다, 내 사랑 등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 새끼 고추 달려 있네, 성관계하면 기분이 좋다 등으로 말하고, 성기를 아동의 팔에 비비고, 성기가 닿도록 안는 등이 확인되었다.

마. 중복 학대행위

본 연구에서 심층 분석한 판례 중 여러 유형의 학대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판결이 다수 존재하였다.

중복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1) 한 개의 행위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것(동시에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행위) 또는 (2)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복 학대행위로 분류하여 기술한 판례는 이 중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정하였다. (2)에 해당하는 사건은 각 학대 행위별로 나누어 해당 학대행위 유형 부분에 정리하였다.

한편, 상해에 이르지 않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례가 많은데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혹행위나 상해에 준하는 학대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만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가 중복된 사례에서 신체적 학대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복 학대가 아닌 신체적 학대행위로만 기소된 사례도 있다.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분류할 실익이 적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간혹 판례 중에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분류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하나의 학대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²⁸⁾.

3. 교육기관 별 학대행위

가. 유치원

(1)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 아동의 몸과 이마 부위를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들며 피해 아동을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고, 피해 아동이 점심시간에 편식을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자 샷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2회 밀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평택지원 2018고단1621)

이사 등 개인적 문제와 평소 유치원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이 나 있던 중 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1회 때린 다음 재차 손으로 얼굴을 1회 쥐어박고, 태권 단련 수업시간에 다른 원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머리를 2회 쥐어박고, 볼펜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옷을 신경질적으로 강제로 벗기고, 양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팔을 잡아 이리저리 끌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19고단2913)

28) 수원지법 2022고단10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가 원생 E의 손가락을 물은 일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E에게 물게 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울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가 벗은 실내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 C 얼굴을 1회 때려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8고단1906, 광주지법 2019노1661)

피해 아동들이 마른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전자호루라기로 피해 아동들의 정수리 부분을 1회씩 때려 폭행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 D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 아동의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주지원 2019고단1403, 춘천지법 2020노977)

책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종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왼쪽 볼을 꼬집은 후 재차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어 폭행하고,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학습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놓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는 등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법 2020고단2120, 창원지법 2020노2874)

교실에서 뛰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있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의자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꼬집고 잡아당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8고단29)

그림그리기 시간임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스케치북을 넘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꺾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넘기는 것처럼 이마를 수 회 밀치고 간지럼을 태우는 것처럼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속에서 빠져나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를 긁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8고단29)

피해 아동이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서 입 주변에 거품을 문혀 장난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 아동의 눈 주변 부위를 잡고 끌어내려 상처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김천지원 2017고단879)

(2) 정서적 학대행위

유치원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피해자들에게 강연자가 동성애자, 동물성애자, 기계성애자, 시체성애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항문성교를 위하여 관장을 하거나, 항문을 손으로 넓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약 27분 동안 보여주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서부지원 2019고단3897)

등교하던 피해자에게 악수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악수를 한 후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왜 인사를 그따구로 하나’ 고 말하고, 이후 조회시간에 악수를 재현해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팽개치듯이 하면서 ‘새끼야, 싸가지없는 새끼야, 왜 악수를 이렇게 하나’ 고 욕을 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을 구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9고단1732)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바닥에 앉힌 후 다른 원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5초간 꼬집고, 피해자의 양팔을 약 15초간 잡은 채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점심 식사 배식시간에 약 5분간 계속 의자에 앉아 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1262, 서울북부지법 2019노541)

밥을 먹으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일어서게 하여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밥을 먹지 못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법 2020고단2120, 창원지법 2020노2874)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은 시간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원생보다 늦게 밥을 먹고 식판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내 교실 문 앞에 데려가 앉혀 놓아 약 12분 간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교실에서 그림그리기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원생보다 그림을 늦게 그리자 다른 원생들에게만 간식을 주고 피해자는 교실 문 앞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이 남긴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놓인 간식 쟁반을 빼앗아 다른 원생들에게만 간식을 주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8고단29)

(3) 유기 · 방임행위

피해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시간 30분 이상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방임하였다.

(대구지법 2018고단1137)

(4) 중복 학대행위

피해자가 장난을 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해자를 교실 뒤쪽에 약 50분 동안 서 있도록 벌을 주었고, 간식을 배식받는 동안 장난을 치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특별활동실로 데려간 후 약 16분 동안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며 강제로 가방을 매게 하고 밀치고 끌어당기어 훈계를 하였고,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며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손뼉을 강하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1회 때리고 오른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수저집을 책상에 내리쳐 피해자를 울게 하여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주지원 2019고단611)

영어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남, 9세)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책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나가”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공부방 밖으로 내보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시원 2020고단2003, 인천지법 2020노4554)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은 다음 식판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후 피해자가 식판을 다시 주워 자신 앞에 두자 피고인은 다시 와서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으며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가서 식판을 빼내려고 하자 식판을 주지 않으면서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몸통을 밀쳐 폭행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판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식판을 찾으려고 하는 실랑이가 계속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수저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고 가며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수저마저 빼앗아 가지고 나가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법 2020고단2120, 창원지법 2020노2874)

나. 초등학교

(1)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가 같은 반 여자아이를 향해 때릴 듯이 발을 치켜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비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김천지원 2019고단1094)

피해자가 친구들과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여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인천지법 2019고단5681)

숙소에서 조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E, F, G, H,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엎드려뺨쳐를 시킨 뒤 아이들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고, 패스게임 훈련 중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F, I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3~4초간 흔들고, 점심시간에 H, G, F가 뛰어나가면서 논다는 이유로 축구부 컨테이너 안으로 위 아동들을 데리고 들어가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고, 동계훈련 중 G, F에게 피고인의 옷가지를 세탁하도록 시킨 뒤 아동들이 세제를 많이 넣어 가루세제가 뭉쳤다는 이유로 리조트 내 세탁실에서 “개새끼야”, “네 빨래랑 내 빨래가 같냐” 등의 이야기를 하며 양손으로 G의 뺨을 4회 때리고 빨래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고, 스트레칭 훈련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넨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빨래건조봉대 알루미늄봉으로 I의 발을 3대 때리고 H, F, G의 손바닥을 3대 때렸으며, 주말리그 경기에서 프리미어 팀에게 패하였다는 이유로 그 다음 월요일에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하였는데 I가 체력이 부족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자 가방을 메고 반바지 차림으로 모래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I의 가방 고리를 잡고 질질 끌어 다리 피부가 까지게 하고, 축구부를 그만둔 P와 마주치자 피고인이 놀지 말라고 구렛나루를 포함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P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훈련 중 센터백인 L이 몸싸움을 잘 못하자 피고인이 직접 보여주겠다며 감정을 실어 팔꿈치로 L을 매우 세게 쳐서 심하게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9고단3654)

반 전체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 아동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20고정733)

피해자 D가 공을 계속 놓친다는 이유로 엎드리도록 하고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년체전 대회 전 합동훈련에서 피해자 D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리고 엎드리도록 하여 엉덩이 부

위를 3회 때리고, 체력운동인 헌불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 D가 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몽둥이(길이 50cm)로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 아동 12명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체벌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20고단2480, 울산지법 2020노1140)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집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2~3회 차고, 피해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성명불상 여자 고등학생과 대련하게 하고 그 여학생에게 세게 하라고 지시하고 초등부에서는 하지 않는 경기 규칙인 조르기를 장시간 하면서 초등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르기를 장시간 피해자에게 가하였음에도 계속 대련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다리를 차고 “꺼져, 개새끼야,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고 욕하고 강제로 내쫓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법 2019고단3589)

청소 시간에 의자를 정리하지 않고 친구들과 물병 세우기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강당 내 기구실로 데려가 약 5분간 분리시킨 후 위 기구실로 들어와 양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이후 수업을 마칠 때까지 피해 아동을 위 기구실에 혼자 있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충주지원 2020고단126, 청주지법 2020노860)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 피해 아동이 코로나 관련 열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권투를 하듯 피해 아동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별다른 이유 없이 배구공을 피해 아동을 향해 3~4회 던져 피해 아동의 다리 및 옆구리 부위를 맞추었다. 피해 아동이 자신의 생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세계 때렸다.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아 아쉽다’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4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7회 때려 멍이 들게 한 다음, 손가락을 튕겨 딱밤을 때리듯이 피해 아동의 목젓을 2회 때렸다. 피고인 주변으로 다가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 아동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후 ‘다음날까지 안내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뒤에서 팔로 레스링 하듯이 목을 졸라 피해 아동을 넘어뜨렸다. 피해 아동의 몸 위로 빈백(쿠션의자)을 들어 올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힘껏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목포지원 2021고단1214)

피해자가 친구들과 다투며 물병이 든 신주머니를 다른 학생에게 돌리는 행동을 하여 물병의 물이 피고인에게 튀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교실 내 쓰레기통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수 회 반복하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얼굴을 찡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서부지원 2018고단3679)

초등학교 태권도 코치인 피고인은 체중 문제로 피해 아동이 시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움켜쥔 채 캐비닛으로 피해자를 3회 밀쳐 뒤통수를 캐비닛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이 길어 훈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문구용 가위로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김천지원 2022고단1098)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장구채로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수학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고 장구채로 복부를 수 회 찌르고,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은 채

약 5m 거리를 이동하여 교실 밖 복도로 끌고 나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진주지원 2022고단1651)

피해 아동이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장난을 섞어 훈육하던 중, 간지럼을 참지 못한 피해 아동이 바닥에 드러눕자 다른 학생들에게 '밟아'라고 말하여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 아동의 팔, 다리, 등 부분을 실제로 때리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통영지원 2023고정82)

치어리딩 시간에 피고인이 키순으로 서라고 했으나, 이를 듣지 못한 피해자 G(6세)가 잘못 서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지게 하였고, 치어리딩 시간에 피해자 D(6세)의 행동이 느리자 피해자에게 ‘빨리 움직여’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으며, 치어리딩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서 치어리딩 수업에 대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개 항목 중 선택하는 것에 피해자 I(6세)가 5개 모두 선택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남지원 2018고단2999, 수원지법 2021노1469, 대법원 2022도10503)

교실에서 피해자 B(7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억지로 끌어 당겨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 C(7세)가 수업 중에 떠들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교실에 있던 30cm자를 들고 손으로 끝부분을 당겨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D(8세)가 쉬는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세게 꼬집어 2주간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21고단1501, 인천지법 2021노2437)

(2) 정서적 학대행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등 학생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나가놀다가 쳐 죽어라”, “이 음치 새끼야”, “뛰어다니면 미친놈이라” 라고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에게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해도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I 초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데 C 초등학교는 공부를 못한다. 아예 비교가 안된다” 라고 말하였다.

수업시간에 피해자들에게 “내가 수업시간에 너희들에게 나가 쳐 죽어라는 말을 진짜로 했냐” 라며 고발받은 내용 중 피해자들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나는 결백하고 잘못된 것이 없는데 엄마들이 나를 고소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나도 너희 엄마들을 고소할 수 있지만 유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거다, 다른 반 선생님은 때려도 엄마들이 가만히 있는데 너희 엄마들만 나한테 이렇게 한다, F랑 H 너희 엄마는 잘못해도 야단치지도 않고 그러지?”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7고단5894)

미술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들이 만들어 제출한 미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따위 밖에 못 만들어, 다시 해” 라고 화를 내며 피해 아동을 비롯한 반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미술품을 뜯어 놓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천안지원 2018고단681)

피해자들이 서로 싸운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억울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E가 더 잘못했네, 때리면 기분 풀릴 것 같지? 너도 한 대 때려!’ 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너는 그리

고 맞고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1596)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구렛나루 부위를 잡아당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17고단2420)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단체줄넘기를 연습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줄을 걸리자 ‘이것도 못하냐’ 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교실에서 ‘전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뭐 해줄 생각은 있었냐’ 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야’ 라고 소리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9고단3858)

화랑대기 하계훈련 4~5일 차에 훈련 중 있었던 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 “아가리에 불싸질러 버린다” 라고 P를 협박하고, 적어내기 혹은 데스노트라는 명칭으로 축구부 소속 P등 아동 각자가 종이에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적어내도록 하고 빈종이를 내는 아동에게는 친구의 사소한 잘못까지 모두 적어내도록 강요하고, 부모에게 새 패딩점퍼를 사달라고 졸랐다는 이유로 축구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Q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9고단3654)

피해아동 D와 E가 제출한 미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따위 밖에 못 만들어 다시해” 라고 화를 내며 피해 아동들을 비롯

한 반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미술품을 뜯어 놓고, 미술 수업 중 피해 아동 F가 만들어 놓은 철사로 만든 인체 모형 작품을 가져가 이를 풀어버리고 배가 아파 보건실에 가겠다는 피해 아동 F를 보건실에 보내지 않고, 피해 아동 H가 쉬는 시간에 준비물을 챙기러 자신의 반에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보자 “늑이 없냐? 유치원에서 뭘 배웠냐”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H가 피고인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 설명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자 “늑이 없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냐”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천안지원 2019고단681, 대전지법 2019노3553)

친구들과 싸우고 억울해한다는 이유로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더 잘못했네 때리면 기분 풀릴 것 같지? 너도 한 대 때려”라고 하고 피해자 E에게 “넌 맞고 있고”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E를 때리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1596, 서울북부지법 2019노2159)

‘애는 육식동물이니 같이 놀지 마라’ 고 말하였다. 엎드린 자세로 글씨를 쓰는 학생에게 ‘파충류의 뇌’ 라고 말하였다.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병신’ ‘파충류는 성질을 잘 내는 거야’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서부지원 2018고단3679)

피해자가 체육 수업시간에 혼자 스트레칭을 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슬리퍼 신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710)

야구 훈련 중 피해자의 운동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왜 그것도 못 치냐. 병신새끼야. 총맞아 뒤질새끼.’ 라고

욕설을 수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5020)

피해자에게 ‘너 복도 청소해’ 라고 지시했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복도 당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시키면 해야지!’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요?’ 라면서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말해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일어나’ 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둘러 피해자를 책상 모서리, 벽 등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귀 부위를 붙잡아 흔들어서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 벽 등을 향하여 던지거나 책상에 내리찍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양지원 2017고단646)

*신체에 대한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지속 되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처를 입기까지 했지만, 이 사건은 정서적 학대행위만으로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피해자가 떠든다는 이유로 눈 감고 손을 머리에 올리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 뒤에서 ‘뭘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수업을 받던 학생들에게 ‘으이씨’, ‘귀 쳐먹었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복도에서 학생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꺼져’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인 욕설로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7고단8682)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 아동이 복도에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고 약 20m 떨어진 교실 옆까지 피해 아동을 밀고 갔다. 교실에서 15세 이상 관람가인 선정적이고 폭력

적인 애니메이션을 26회 학생들에게 보게 하고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함으로써 압박감을 느끼게 하였다.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복습도 안하나, 밥은 왜 먹냐, 쉬는시간과 주말은 왜 있어야 하나’ 라며 화를 내어 공포심이 들게 하였다. 정규수업 이후 교실에 남아 수학지도를 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 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2회 세게 치는 행동을 했다. 체육관에서 체육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팔벌려뛰기 2,000번을 하도록 시키고 실제로 200회 가량을 하게 하였다. 피해 아동이 책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교실 앞으로 부른 다음 교탁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칠판을 치며 ‘아우 진짜’ 라고 소리지르고 책상에 있던 책을 집어 피해 아동의 책상으로 세게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춘천지법 2023고단187)

**모두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서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다.

교실에서 피해자들(6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출한 숙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찢어버렸고, 2교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피해자(6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되어 바지가 다 젖었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의 바지가 젖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땀아’ 라는 말만 하여 6교시 후 하교할 때까지 피해자의 바지가 젖은 상태로 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남지원 2018고단2999, 수원지법 2021노1469, 대법원 2022도10503)

교실에서 학급의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 C(7세)에게 “C야 시끄러워” 를 외치게 하고, 학급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장애인 같아. 너 정말 미친애 같아” 라고 말하였고, 학급 학생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친구 E가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외계인 부부, 외계로 돌아가”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21고단1501, 인천지법 2021노2437)

피고인은 동시를 외우게 하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7세)이 동시를 잘 외우지 못하자 약 10분간 교실 앞에 서 있도록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5분 후에 내가 하라고 했잖아. 외웠어 안 외웠어? 대답도 못해? 병어리야?”, “우리 반에서 그냥 바보 같은 애들 2명 있네. 빨리 써. 니가 내 아들도 아니고 지들이 안 해서 그러는데. 창피해 봐야 정신을 차리지.”, “차렷하고 해, 너 입 닥쳐. 너 때문에 지금 우리반 애들 몇 분이나 너 기다린지 알아? 조용히 하라고! 앞으로 나와서 지금 몰라? 뭐 하는지? 왜 그러고 있어! 알면 왜 안해!”라고 다그치고, 해당 수업 교시가 끝날 때까지 피해 아동을 교실 앞에 서 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교실에서 피해 아동(7세)이 책상 서랍 안에 무엇인가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바닥에 쏟은 후 피해 아동에게 “없는 척 하지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는 공부하지 말고 이거 정리해. (피해 아동) 빼고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말고 책상 속 물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달팽이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만 교구를 지급하는 등 피해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고, 같은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을 지칭하며 “우리 반에서 한 명을 없애고 싶으면 그게 피해 아동일 거예요.”라는 등 말하고, 피해 아동에게 “진짜 꼴보기 싫어. 좋아하려면 좋아할 수가 없어. 불쌍하다, 불쌍해. 너네 엄마는 너를 낳고 행복했을 텐데. 니가 학교에서 이렇게 미움 받는지 모르겠지.”라는 등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군산지원 2020고단1955, 전주지법 2021노1397)

체험학습을 하던 중, 위 피해 아동들이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었다는 이유로 “찌질한 놈, 수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교실로 돌아온 뒤 위 피해 아동들에게 “내가 너 얼굴 보면서 사먹지 말라고 했잖아. 찌질한 놈, 찌질이 바보, 말을 못 알아 듣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아침 봉사활동 시간에 맞추어 일찍 등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약 20분 동안 “찌질이 다. 수준이 낮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인간도 아닌 놈.”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E가 수업시간에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하냐. 찌질한 놈, 다른 애들은 공부 다 잘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 E랑 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이 양말을 신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 아동의 책상을 분리하여 칠판 앞에 혼자 앉게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E는 더럽다. 앞으로 E는 5.5반이다. 5학년 8반이다(우리 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1042, 부산지법 2021노2152)

(3) 유기 · 방임행위

현장학습 체험을 위해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 중 피해자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휴게소가 멀고 차를 갓길에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남녀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 뒷좌석에서 비닐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변을 누고 뒤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휴게소에 도착한 이후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현장학습에 갈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에 태운 채 휴게소를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자, ‘다른 아이들이 너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 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발하던 버스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하였다.

(대구지법 2017고정2029)

(4) 성적 학대행위

피해자를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바닥에 가시가 찔렸다고 호소하자 이를 봐준 후,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들을 칭찬하면서 피해자 D에게 ‘너는 많이 컸으니 **이에게 젖 좀 줘라’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등을 쓰다듬고 양손을 피해자들의 각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수업시간에 풀죽은 모습을 보고 나오라고 하여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며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교실에 남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17고단2420)

짧은 머리를 한 피해자가 여학생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오인하여 남학생 줄로 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여학생이라고 하자, 여학생인 것을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꺾꺾 누르며 주물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서부지원 2022고합62)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 C(여, 12세)에게 “너는 잘 하잖아. 니가 좀 해라”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수업 중 피해자 H(여, 12세)가 타자를 잘 치지 못하자 뒤로 다가가 이를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수업 중 피해자 M(여, 12세)가 컴퓨터가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자, 컴퓨터를 봐준다고 하면서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19고단768)

피고인은 수업을 마치고 교실 교사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피해

자 C(여, 7세)가 교실에 놓아둔 우산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를 불러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위 아래로 쓰다듬고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춘천지법 2021고합35, 서울고법(춘천) 2022노4)

(5) 중복학대

수업시간에 피해 아동이 종이를 늦게 붙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끝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피해 아동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 아동이 임의로 교실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교실 뒤에 세워두고 발로 피해 아동의 무릎을 1대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이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친구에게 ‘형님아, 미안’ 이라고 말하도록 하고, 급식실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뒤에 서서 피해 아동의 손가락으로 밥을 약 10회 억지로 떠먹였고, 피해 아동이 친구의 이름을 크게 물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혼자 교실에 있다가 긴 바늘이 6에 가면 나오라’ 고 말하고 나머지 학급 아동들은 체육활동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 아동을 약 30분 동안 혼자 교실에 있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19고단592)

급식 식기 반납을 하면서 다 마신 주스팩을 잘못 놓았다는 이유로 주스팩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해 아동이 의자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뒤로 잡아 빼 피해 아동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고, 연필을 깎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고, 장난을 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하

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시지원 2018고단818)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떠들며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귀를 3회 잡아당기고 장구 열채로 발바닥을 3회 때리고 북채로 배를 3회 찌른 뒤, 피해 아동에게 ‘병신, 미친놈, 씨발, 미친새끼, 염병, 또라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 뺨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목포지원 2022고단629)

곤봉수업 중 곤봉이 창문가에 걸려서 보고 서 있는데 ‘보고 있으면 곤봉이 내려오냐고’ 하면서 ‘미친년 멍청이 병신’ 이라고 욕하였다. ‘대체 왜 못하는 거냐고, 넌 도대체 잘하는 것이 뭐냐’ 며 소리 지르고 망머리를 잡아당기고 밀쳐서 발목을 빼게 하였다. 아파서 우는데 ‘그만 쳐울고 운동이나 하라’ 고 소리 지르고 ‘돼지’ 라고 소리 지르고, ‘오늘 있었던 일 부모님께 얘기하면 입을 찢어 놓겠다’ 고 소리 질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3032)

수업시간에 피해자(7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억지로 끌어 수업 중인 3학년 4반 교실로 데려가, 그 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3학년 4반 담임 교사에게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3학년 4반 담임교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21고단1501, 인천지법 2021노2437)

다. 중학교

(1) 신체적 학대행위

과학 시간에 발표준비를 하지 않은 K아동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해 45분간 손을 들게 하고, 귀를 잡아 당기고, H아동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교실 문고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출석부로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A4종이를 말아서 머리부위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J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실 뒤로 나가게 한 후 아동의 뒷목을 손으로 1-4회 때리고, 등 위에 올라 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팔 부위를 때리고 그 광경을 보고 웃는 K를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슬리퍼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강릉지원 2018고단1053)

운동부 숙소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피해자 외 9명의 선수들을 빙 둘러 세워놓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엎드리게 해 놓고 밀대 나무몽둥이로 엉덩이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법 2018고단5450)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책상 밖으로 내놓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막대기로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내리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04)

피해자들이 체험 관련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각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19고단2160)

수행평가 중 피해자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

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197)

야간 훈련을 마친 후 1학년 부원들에게 기합을 준다는 명목으로 운동 부원인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정해진 인터벌 훈련 시간에 맞추어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렸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자녀를 훈육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닥에 누워 양발을 들어올리도록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기로 발바닥을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속초지원 2019고합4)

배구시합 준비 명목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저녁 식사 후 리조트 외부를 걷도록 하였으나 천천히 걷는다는 이유로 30분 내에 500m 구간의 리조트 외부를 15바퀴 뛰도록 하고, 제 시간에 뛰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30분 내에 15바퀴를 뛰도록 하고, 전지훈련 연습경기에서 경기내용이 부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배구코트를 평소 훈련량에 비해 매우 과도한 횟수인 약 300회 가량 왕복으로 뛰게 하고, 소년체전 성적이 좋지 않아 교양을 하던 중 피해 아동 K가 졸았다는 이유로 매고 있던 가방을 피해 아동 K에게 던지고, 피해 아동 H가 선배에게 공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배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던져 맞추도록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9고단5408)

피해자 D가 농구 연습게임 중 삼각패스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코치 지시사항을 잘못하였다고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구 때려치고 병원에 가라고 소리지르면서 탈

의실로 들어가라고 한 후 뒤따라 탈의실에 들어가 짐을 싸서 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상대팀 1명이 부상으로 빠져도 너희는 지겠다고 말하면서 뺨을 3회 때리고, 상대팀보다 느리게 게임한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발로 1회 차찰과상을 가하고, 힘이 들어서 훈련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밀어서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벽에 머리를 4~5회 부딪치게 하고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팔뚝을 3회 때리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숙소에 도착하여 “너 네 좀 맞자” 라고 말하면서 각 1회씩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고 무서워서 손을 올리자 샤워타올로 양손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32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다.

(상주지원 2019고단432, 대구지법 2020노1412)

다른 반 학생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약 50회를 하게 하고, 일부 학생이 장난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너 뒤지고 싶냐,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4회 때리고, 재차 앉았다 일어났다 약 50회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렸다고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2~3회 때리고 다시 앉았다 일어서기 50회를 시킨 후 머리카락을 잡고 “다음에 이러면 진짜 뒤져” 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천안지원 2019고단2575, 대전지법 2020노967)

피해자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197, 서울북부지법 2020노53)

미술 수업에 충실하지 않고 수업 종료 후 미술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젖을 누르며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꼬집고,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과 뒷목을 잡고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3088, 서울서부지법 2020노593)

반성문 쓰는 학생에게 장난친다고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살 잡아 교실 뒷문 쪽으로 밀치고, 목살 잡은 상태로 피해 아동을 들어올려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제주지법 2020고단1264)

노트필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단소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씨발’ 이라고 욕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10여분 간 교실 안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18고단1502)

누군가 던진 지우개를 머리에 맞은 피해자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나와 서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한 차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21고정465)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옆드려 자라고 해 놓고, 피해자가 옆드린 채 질문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

를 들어 젖힌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22고단866)

(2) 정서적 학대행위

반 전체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집중을 하지 않자 “야 이 병신 새끼, 개새끼들아, 좇만한 놈들아” 라고 욕설하고, 창의체험 시간에 “병신이나 새끼들아, 자러 왔냐, 또라이 년들이” 라고 욕설하고, P아동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좇만이” 라고 호칭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강릉지원 2018고단1053)

피해자가 늦잠을 자 운동부 소속 버스에 늦게 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상놈의 새끼, 너 짐싸서 팀에서 나가, 재수 없으니까 꺼져’ 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지원 2018고단2978)

피해자가 배구 연습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닥에 받는 ‘얼차려’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경기 끝난 후에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광주지법 2019고단1507)

리조트 객실을 옮기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 아동들의 동작이 늦었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짐을 들고 방을 왕복하거나 짐을 풀었다 썼다를 반복하도록 하고 “너희들을 때리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괴롭히는 방법은 수백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여 새벽 2:00까지 약 4시간 동안 잠

자지 못하도록 하고, 전지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교양을 한다는 명목으로 새벽 1: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잠자지 못하도록 하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수백가지다, 부모님에게 알릴려면 알려라, 내 인맥 총동원해서 괴롭히겠다”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9고단5408)

다른 반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벌칙을 주고 제대로 안해서 머리채를 잡았다는 말을 하면서 “너무 불쾌했다. 머리카락을 잡아서 다 뜯어버리고 가발하나 만들어주려고 했다. 그 새끼 때리는 걸 너희들이 봤어야 했다”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천안지원 2019고단2575, 대전지법 2020노967)

피해자의 장래희망이 변리사라고 하자 “얼굴 몸 다 뜯어고쳐서 변리사인 남자한테 시집가는 것이 빠르겠다” 라고 말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턱이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 턱수술 해야겠다”,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너는 고쳐야겠다, 화장 왜 하나 화장해도 못생겼는데”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냥 때리고 싶게 생겼다” 라고 말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넌 가슴이 크다” 라고 말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산지원 2019고단4887, 수원지법 2020노3095)

피해자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왜 이런 걸 못 알아듣니, 널 혼내주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너 이해 하나도 못하니?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그러니?”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지목하여 비난하고 피해자의 손에 있는 가위를 빼앗은 다음 반 학생들에게 “애들아 어떻게 죽여줄까” 라고 묻고 “널 죽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 잘라주는거다 ” 라고 말을 하고 피

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애들아 내가 때리기라도 했니? 훌쩍 거리는 소리내지마, 너 눈물 한방을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말하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20고단2423, 울산지법 2020노1679)

수업 도중에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 “지랄하네”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9고단6571, 인천지법 2020노4781)

학년 부장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책을 피해 아동의 옆으로 던지면서 피해 아동에게 “너 생각이 있는 거냐, 정신 빠진 새끼, 씨발새끼, 개보다도 못한 새끼, 학교 똥칠하는 새끼”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의 목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 때리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제주지법 2020고단1264)

피해자가 그림을 제출하려 하자 ‘그림이 잘못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다시 그림을 그려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여러 차례 그림을 고치던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물어보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21고정465)

학생들을 상대로 ‘성드립’에 관한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다른 여자 친구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진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교실 앞으로 불러낸 뒤, ‘남자애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여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더럽고 추잡하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

해자에게 ‘니네 엄마 왔다간 날, 사실 목을 뺐어. 니가 용기가 있다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뒤틀이 좀 있어. 많이 있어. 나는 뒤틀이 있어봤자 뭐하니, 생기부 밖에 없잖아. 어?’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지원 2018고단2833)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다가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성욕을 못참냐, 너가 짐승이지 사람 취급 받을 자격이 있냐’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 쳐 돌은 것아. 아니 그러니까 씨발 니가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쳐 앉아가지고 그냥 씨발 라면 빨 생각이나 하고 이 쳐 죽일것아. 이 개미쳐가지고. 아 씨발 이 친구 미친 거아냐 이거’ 라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제주지법 2021고단1075)

(3) 성적 학대행위

수업시간에 출석부로 I아동의 성기부위를 톡톡 치고, 책상 정리 중인 Q아동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성기 부위를 2회 문지르고, 다리를 떨고 있는 G아동에게 “딸쳐” 라고 말하고 다리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손을 얹고 있냐, 자위하냐, 딸치지 마라” 라고 말하고,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G처럼 딸 치지 마” 라고 말하였고, M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지며 “너 여자냐” 라고 말하고, M아동에게 반 학생들 앞에서 “나는 고자입니다” 를 3회 외치도록 하고 “그 고자가 고성능 자지인지, 고장 난 자지인지 둘 중에 골라라, 고성능 자지면 세워서 이름을 써보고 고장 난 자지면 검사를 받아라”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강릉지원 2018고단1053)

농구 수행평가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농구공을 가슴 쪽으로 던져 앞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잠시 머뭇거리자 웃으며 피해자에게 ‘없잖아, 그냥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가슴이 없잖아’ 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탁구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잡은 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서부지원 2019고단1079)

수업을 일찍 마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약 3~5분 동안 어깨를 안마하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어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를 똑바로 앉혀 계속해서 성기를 접촉하였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맞닿도록 꼭 끌어안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²⁹⁾.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04)

피해 아동들에게 사탕을 준 후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것이 없냐’ 라고 말한 후 피해 아동들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섰다. 머뭇거리는 피해 아동들에게 ‘안기라는 뜻이잖아’ 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차례로 피고인을 껴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 아동들의 등을 쓰다듬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19고단2160)

체육시간에 잘 했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19고단1348, 광주지법 2020노272, 대법원 2021도13756)

피해자 E가 엎드려 있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어깨를 툭툭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등 및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쓸어내리는 식으로 만

29) 아동·청소년위력추행으로 처벌됨

지고, 학생들이 줄지어 비좁은 출입문을 통해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자 출구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랑 쓰다듬고, 공통점 찾기 게임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G가 손을 들자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주무르며 “너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는 식으로 만지고, 게임하던 중 “오늘 속옷 입은 애들 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 H가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어깨와 팔꿈치 부분을 5~6회 가랑 찌르고, 장기자랑 시간에 춤을 추고 들어가는 피해자 J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만져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장흥지원 2019고단73)

피해자가 휴게소 화장실에 가기 위해 관광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의 입술 화장을 지적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살을 움켜잡고, 수업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찌르다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 회 오르내리며 만지고, 키보드를 치느라 별려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수 회 눌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631, 서울고법 2019노1873)

강사 G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자 강사에게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70명의 학생들 앞에서 “네가 성추행 개념을 아냐? G선생이 네 가슴을 만졌냐, 아니면 엉덩이를 만졌냐? G선생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해봐라,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면 이름에 빨간 줄 그인다. G 선생이 너네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다. 너네가 G 선생이 사는 지방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빌든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장님, 여기서 말썽 안하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는 여왕벌이다. 남자애들에게 그만 좀 짹짹 대라” 라고 말하여 성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남지원 2020고단2274, 수원지법 2020노7439)

여학생 있는데 남학생들에게 “너희들 야동 어디까지 보았냐?”, “채찍까지 봤냐, SM 좋아하냐?” 라고 말하고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듣고도 “SM 좋아하냐, 왜 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고 “섹스, 베이비” 며 몸통을 흔들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혀를 입 밖으로 내어 불펜 핥고, 틴트를 바르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위아래로 쳐다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너 다리 예쁘다” 라고 말하고 “얼굴이 동양적으로 생겼어, 다시 말하면 섹시하게 생긴 거지”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산지원 2019고단4887, 수원지법 2020노3095)

피해자를 컴퓨터실로 부른 다음, ‘손을 잡아도 되냐’ 고 말하며 손을 잡고 각지를 꺾다.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마음이 불안하다, 연애를 하자’ 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되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답을 해주고 가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알겠다’ 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서부지원 2021고합197)

첫 수업에서 ‘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아이다’ 라고 말하였다. 책상에 낙서하는 것을 보고 ‘계속 그렇게 낙서해 놓으면 부모님을 부른다. 불러서 옷 다 벗겨 버릴거다. 아 부모님을 부르면 엄마옷을 벗겨야지.’ 라고 말하였다. 쪼그려 앉아 신발을 신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엉덩이 차버리고 싶네. 엉덩이 보인다. 선생님과 단 둘이 떡볶이(생리 중인 여자와의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먹으러 갈까’ 라고 말하였다. 작품 속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면 옷을 벗겨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너희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여자는 화장을 하고 예쁘면 된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18고단4835)

수업을 듣던 피해자에게 ‘쌍꺼풀하면 예뻐지겠네. 나는 중학생인데 살이 많이 찼네? 다이어트를 해라’ 라고 말하였다. 강당에서 피해자의 몸매를 아래위로 훑어보고는 ‘너는 살 좀 빼야겠다. 다리가 너무 뚱뚱하다. 돼지 같다. 나는 몸매가 듬직하네’ 라고 말하였다. 강당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나는 얼굴이 너무 크다.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애. 허리는 예쁜데 다리는 못생겼네. 니 몸매를 보면 초딩 몸매 같네. 일자 몸매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22고합85)

학생이 ‘선생님 배 나왔어요’ 라고 말하자 칠판에 그림을 그린 뒤 ‘여자는 이렇게 가슴이 나와 있고 젖꼭지도 있다’ 라고 말하였다. 수업 도중 가지를 들어 보이며 ‘남자 거시기 같네’ 라고 말하였다. 오른쪽 검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종이컵이 없으면 물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서 여자 거시기로 흘러내린다’ 라고 말하였다. 체육복 소매 안에 팔려 들어간 교복을 꺼내는 학생을 보고 ‘왜 선생님 앞에서 계속 속옷을 만지고 있냐’ 고 말하였다. ‘자초지종’ 이라는 한자어를 설명하며 ‘이걸 줄이면 자지야 자지’ 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의 옆자리 학생에게 ‘애 왜 자냐 혹시 마법의 날이야’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진주지원 2018고단752)

피고인은 중학교 과학과목 교생으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들과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 G(12세)가 피해자 H(12세)에게 혀를 내밀면서 ‘메롱’ 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혀를 빨아먹어”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주지법 2021고합255, 광주고법(전주) 2022노132)

수업 중 눈썹 화장을 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수컷은 암컷을 꼬시려고 꾸미는데, 너는 누구를 꼬시려고 화장을 했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여, 14세)등 2학년 5반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수업을 하던 중 연음법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꽃으로’ 라고 적고 그 옆에 ‘꼬츠로’ 라고 적은 다음 ‘꼬츠로’ 의 ‘一’ 자 아래로 선을 하나 긋고 “ ‘꼬추로’ 라고 발음하면 안되요” 라고 4-5회 반복하여 말하고, 피해자 F(여, 14세) 등의 3학년 1반 학생 및 E(여, 14세) 등 3학년 6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문 수업을 하던 도중 “ ‘클 태(太)’ 자와 ‘개 견(犬)’ 위에 적힌 점은 강아지 불알이다.” “남자가 꼬추를 막 휘두르고 다니면 개새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고, ‘일백 백(百)’ 자에서 한 획을 없애면 ‘흰 백(白)’ 자가 됨을 설명하면서 “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 꺼풀 벗기면 하얗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산지원 2021고단395, 창원지법 2021노3198)

(4) 중복 학대행위

피해자가 배구부 후배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이런 소리를 들어봐라, 후배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가위를 들고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봤냐’ 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강릉지원 2018고단1247)

피해자가 후배 E 머리를 자른 일로 E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자 화가나 중학교 집기류 보관창고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 1대 때리고 발로 허벅지 1회 걷어차고, 가위로 머리 자르는 시늉을

하며 “이런 소리를 들어봐라, 후배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가위를 들고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봤냐”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강릉지원 2018고단1247)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친구 E에게 ‘D를 이길 사람이 있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렸다. 이후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교감이 찾아와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재 때문에 죽어버려야지, 진짜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청주지법 2020고단1149, 청주지법 2021노28)

피해자가 친구들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30초간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고, ‘미쳤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동부지원 2021고단1913)

학생인 피해자가 왜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묻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그냥요’라고 성의 없이 대답했다는 이유로 ‘너 뭐라고 했어. 이리와봐’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거울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치고, 오른손목을 수회 세계 잡은 다음, 피해자 얼굴 옆 엘리베이터 벽면을 주먹으로 수회 치다가 이에 놀라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울어 죽고싶냐’고 욕설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277)

라. 고등학교

(1)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에게 도민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번에 운동장에서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가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채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죽어, 죽어, 내가 교직원 생활 안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30초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속초지원 2018고합59)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갑자기 “5, 4, 3, 2, 1”을 세면서 벽을 잡으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양손으로 벽을 잡자 눈을 치우는데 사용하는 녹색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세게 때려 피해자가 울도록 하고, 정구대회에 참관하러 가는 차 안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상체를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방향으로 강제로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에 호흡 곤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 거부의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합120, 서울고법 2019노2434).

학교 정문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서로 사귀는 사이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

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 출입구에 꿰어앉게 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가랑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469)

피해자가 교실 컴퓨터 관리 권한을 남용하여 와이파이를 생성시키는 무선랜을 설치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친구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하여 학급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책상을 잡고 돌아서게 한 후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서 만든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775)

(2) 정서적 학대행위

교장실 청소담당인 피해자 D가 청소를 한 후 교실에 늦게 들어오자 ‘팔다리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시켜버리겠다. 활활 불타오르는 캠프파이어에 던져버리겠다. 쳐 죽일놈’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청소 때문에 늦은 게 거짓말 치는 거면 다신 학교에 발도 못 디디게 감금해서 때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그 후 피해자가 청소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땀 새끼가 늦게 들어오니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고 폭언하였고, 수업 시간 중 피해자 F가 질문에 잘못 대답하자 ‘성적이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 고 폭언하고, 피해자 E가 수학여행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왜 가족끼리 여행을 가냐, 너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거냐, 여행 일정을 바꿔라, 대학 진학을 포기해라’ 라고 폭언하고, 피해자 I에게 수련회 설명을 하면서 ‘한라산 등반하다가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자결해라’ 고 폭언하였고, 피해자 S에게 K와 비교하면서 ‘그런 것은 인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 너는 인성이 지저분하다’ 고 폭언하고, 피해자 T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냥 죽어버리지 왜 왔어’ 라고 폭언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양지원 2019고단224)

정구부 숙소로 들어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세계 걷어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합120, 서울고법 2019노2434).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소프트볼 공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가 운동을 하기 싫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A4 용지에 피해자가 잘못된 점을 작성하고 그 용지를 먹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훈련 중 공을 피한다는 이유로 평소 훈련과 달리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프트볼 방망이로 공을 세계 쳐 피해자 C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등 온몸을 맞추고, 과거 부상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 후배 선수들이 왔는데도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후배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수치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 C로 하여금 실내연습장 밖에서 키우던 개집 옆에 가서 개와 같이 짖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20고단648)

동아시아 수업 중 피해자 F에게 “너는 윗입술을 까뒤집어야겠다” 라고 말하고, “귀걸이가 예쁘다, 나는 이런 거를 보면 뜯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라고 말하고, “졸업생들이 결혼을 할 때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데 그 때 여자애들이 빼쩍 말라서 온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E를 가리키며 “이런 애들이 빼쩍 말라서 오기도 하고 빼쩍 마른 애들이 이렇게 되어서 오기도 한다”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법 2019고단4401, 의정부지법 2020노1547)

피해자가 늦잠을 자 버스에 늦게 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상놈의 새끼. 너 짐싸서 팀에서 나가. 재수 없으니까 꺼져’ 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지원 2018고단2978)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친과 갈등관계 중에, 피해 아동에게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찌겠니 니네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니네 엄마 이상한 짓 하지말라고 전해’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주지원 2022고단1350)

수업 중 아동인 피해자 C(여, 17세)등 여학생들에게 ‘D 희생자들은 오텅이 된 애들이다’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서부지원 20202고단3089, 대구지법 2021노2761)

(3) 유기·방임행위

피고인은 실습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C와 G가 후배로 1학년인 피해자 D, E, F를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채,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엉덩이)를 때려야 더 아프다.” 라고 말하여 방임하였다.

(춘천지법 2021고단12)

(4) 성적 학대행위

국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실 통로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거렸다. 피해자가 수학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자 문제를 풀어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만졌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학 수업 시간에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뒤로 나가 미친년아, 저년은 저래서 안된다, 물구나무나 서야 돼, 물구나무 서” 라고 말하는 등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8고합441)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가 지금 너한테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라고 말하고, 수업 시간에 “자기반 애들이 생리 조퇴 허락받으러 오는데 불편하다, 이해가 안간다, 생리가 부끄럽지 않게 대놓고 말을 한다. 생리가 혐오스럽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수업 시간에 “생각만 하는 건 나쁜게 아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나쁜 것이다, 나는 둔산동에 가면 젊은 여자들을 볼 때 성폭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수업 시간에 칠판에 산 모양을 그려놓고 “이게 어린 여자 가슴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칠판에 곡선을 그리고 “여자의 바스트와 엉덩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해수욕장에 가면 여자들 다리를 쳐다본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요즘은 인공지능이 니네보다 똑똑하다, 휴대폰에다 ‘나랑 섹스 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칠판에 여자 엉덩이와 가슴을 부각시켜 그려놓고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니네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니네를 좋아할 일은 없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19고단1992)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반의 담임선생님 J의 모습과 자신의 처의 모습을 칠판에 그리며, ‘J는 체구에 비하여 가슴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여 그들의 몸매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9고합115)

점프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아래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잡아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배드민턴을 잘 친다고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수업 끝나고 교실로 가는 피해자 B의 외쪽 편에서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B의 어깨에 손을 얹고, 농구 수업 중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뒤쪽에서 왼쪽 허벅지를 들어 올리고, 기지개를 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농구 수업 중 자세 교정해 준다고 피해자 J의 뒤쪽에서 오른손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고 팔뚝을 잡아 들어 올리고, 농구 자세 교정해 준다고 피해자 L의 왼쪽 옆구리 속옷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충주지원 2019고합20, 대전고법(청주) 2020노12)

“시합을 가든 학교에서 휴식을 하든 휴대폰만 보며 뒹굴뒹굴하지 말고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해 준다고 피해자들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허벅지 부위까지 주무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학생 숙소에 누워있던 피해자 G 몸 위로 엮드린 상태로 올라가 몸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위아래로 누르고,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고무줄 반바지의 허리춤을 내리듯이 잡아당겨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나게 하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다시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나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고법 2019노2434, 서울동부지법 2019고합120)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2시에 교실로 불러내어 찾아온 피해자를 손으로 3~4회 끌어 안은 후,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얹어 만지고, 위 교실 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한번만 더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3~4회 끌어 안은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채 ‘5분만 있자’ 고 말하여 1~2분동안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에게 ‘사랑해도 되냐?’, ‘뽀뽀’ 라고 말하며 입술을 내미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상주지원 2022고합30)

등교 발열체크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얘기좀 하자, 보고 싶어서 상사병 걸릴 뻔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그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두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부터 사타구니, 성기 부분을 옷 위로 건드리고, 놀란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어디 만져보자’ 라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더듬으면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속옷 바로 아래까지 만져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경주지원 2022고합62)

미술동아리 수업 중 피해자가 ‘이번 축제에서 타투를 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자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네가 비키니 입고 영당이에 타투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22고정1917)

자율학습 시간 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포경수술을 해주겠다, 가위를 가져오라’ 고 말하였다.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제 재와 통화를 했는데 신음소리를 냈다’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자습 중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혹시 너 그거(자위행위)하러 가냐’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22고합233)

피고인은 1학기 반팔 생활복을 입을 시기 무렵에 지각을 한 피해자 I(여, 16세)에게 “오늘 지각 처리를 하지 않겠다. 애들이 알면 괜히 편애한다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 대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155, 서울고법 2021노465, 대법원 2021도9429)

피고인은 피해자(남, 16세)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에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자위하게 하거나, 성기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산지원 2020고합84, 부산고법(창원) 2021노129, 대법원 2021도15684)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여, 16세)에게 ‘불에다 뽀뽀도 해주고 은팔찌 찰게’, ‘너랑 노래방에서 되게 참았어 19금’이라는 내용의 SNS(카카오톡 비밀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413)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종교와 철학’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로, 수업 중 영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해 아동 C(여, 16세), D(여, 16세), E(남, 16세) 등 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25명에게 “구린내 나는 여자애를 누가 먹고 싶겠니” 라고 말하여 여성들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지칭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918, 서울중앙지법 2021노1661)

고등학교 기숙사 근처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5세), D(여, 15세)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학교 펜싱부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기숙사로 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E나 D가 이거 다 벗고 가슴 내놓고 들어오면 남자들이 난리가 날 것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청주지법 2021고합37, 대전고법(청주) 2021노77)

교실에서 수업 중 아동인 피해자 C(여, 17세) 등 여학생들에게 ‘내 딸의 가슴은 식탁에 올라갈 정도로 큰데 너희들은 어떠냐’ 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서부지원 20202고단3089, 대구지법 2021노2761)

(5) 중복 학대행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쪼다새끼야, 붕어대가리야, 이 정도 밖에 못하냐” 라고 말하며 소프트볼 공으로 피해자 E 머리를 3회 때리고, 공을 잘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잘래 새끼냐, 장애인이나” 라고 말하고, 스윙을 알려준 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걸 몇 번을 가르쳐주는데 못하냐” 라며 나무망치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툭툭 치고, 피해자 E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밀고, 배팅하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쪼다년 그것도 못하냐” 고 말하면서 야구배트로 피해자 G의 팔, 허벅지, 무릎을 수회 때리고,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때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20고단648, 2020고단744(병합))

피고인은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야 취업이 잘 된다. 껌데기라도 좋아야 한다’ 라며, 학생들을 ‘이년 저년’ 이라 지칭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장애인이나 숫자도 못 세’ 라고 말하였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친년, 멍청한 년’ 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원소기호를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불러내어 등이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너 생리통이야?’ 라고 말하고 ‘5살 여자 애는 옷을 벗겨봐야 여자인 줄 안다’ 고 말하였다. 학교에 먼지가 많다며 ‘먼지들이 치마속으로 다 들어간다. 너희 밑으로 들어가. 나는 바지를 입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수업을 하면서 ‘졸업한 언니 중에 한명이 정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뻐서 남자로서 꼬시고 싶을 정도였는데 취업이 잘 되었다. 너희는 예쁘지가 못하니 머리가 비어 있으면 안된다.’ 라고 말하였다. 원소의 무게를 설명하면서 ‘옷을 훌쩍 벗고 몸무게를 재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7고단7300)

피고인은 피해자(남, 17세)가 교과서 배부 서명표에 다른 학생들 대신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혼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너 같은 병신새끼 때문에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다 수능 망치게 생겼네. 이 또라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21고정403)

마. 기타(학원 등)

(1)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 D(13세)이 영어 단어를 모르겠다고 하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수업에 늦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화를 내며 영어 공책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영어단어를 틀리게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G가 푼 문제 정답이 틀렸다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N(12세)가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R(11세)가 푼 문제 정답이 틀렸다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선생님 무서운 사람 손들어봐’ 라고 한 후 피해자 Q가 손을 들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꼬집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A(8세)가 알파벳을 암기하지 않고 쓰면서 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볼펜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9고단3435)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를 엿드리게 한 후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4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천안지원 2018고단1909)

피해자가 한자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평소 체벌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손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18고단852)

방과 후 수업시간에 바둑돌을 던지면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서부지원 2019고단3584)

피해 아동을 상대로 무술 수업을 진행하던 중, ‘뒤로 가서 줄을 서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발차기미트로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정22)

피해자가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966)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를 화장실에서 때리고 가두었다는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손을 집고 옆드려 뺨치게 한 후 목검과 연습도구인 막대기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등, 팔, 엉덩이, 머리, 발바닥 등을 수 회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찌르며 발로 허벅지와 배를 수 회 때렸고, 계속하여 대련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호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영동지원 2019고단94)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14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계속하여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누히고, 편의점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채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9고합248)

피해자(14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치자 화가 나 “내가 니 친구냐,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 회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9고단5580, 광주지법 2020노1978)

피해자(7세)가 승품 준비를 위한 연습을 잘 따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로 플라스틱 막대(길이 60cm, 두께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각 4회 때리고, 품새를 틀린다는 이유로 위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가슴 부위,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20고단1489)

태권도장에 누워서 장난을 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관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계속하여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어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19고단4913)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11세)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볼을 잡아 흔들고, 등을 꼬집고 뒷통수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20고단360)

피해 아동(9세)가 혼잣말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금 나한테 욕했냐?” 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법 2020고단2621³⁰⁾)

아이스링크장에서 훈련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C(남, 10세)의 머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내리쳐 폭행하고,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놓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휴식 중에는 스케이트를 벗고 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휴식 중에 스케이트를 신고 있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귀를 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20고단7816, 인천지법 2020노4793)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4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해남지원 2022고단87)

피해자가 살을 빼야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꼬집어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79)

30)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과 그 피고인을 고용한 사용인인 공동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례임

물을 마시러 가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왼쪽 갈비뼈 부위를 손끝으로 찌르고, 피해 아동이 줄넘기를 하다가 줄에 발이 걸려 줄넘기를 하지 못하자 ‘뭐하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법 2022고단2911)

피해자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폰 패턴을 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717)

피해자가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박자를 맞춘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여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양지원 2017고단1962)

피해자가 학원에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칠판을 잡고 서게 한 후 종이 전단지를 말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21고정1188)

피해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천천히 하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씨’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교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22고단1347)

장애아동 치료센터의 특수치료사인 피고인이 여러 장애아동들에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손가락이나 손, 연필로 머리카락이나 팔을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법 2017고단8221)

장애아동 치료센터의 특수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여러 장애아동들에게 자신의 말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먹이나 팔꿈치로 머리카락을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거나, 양 볼을 양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복부나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16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시법 2021고단3267)

피해자가 태권도장과 축구장 사이에 설치된 유리 칸막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양쪽 허벅지를 발로 각각 1회 걷어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8고단1345)

피해자가 태권도 시합을 앞두고 상의 없이 머리를 잘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쇄골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8고단 7051)

피해자가 자신이 지도한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주지법 2021고단 1932)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와 다투었다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7회 때리고 책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청주지법 2022고정210)

태권도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구두 주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때리고, 옆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급소를 3회 눌러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릴 때까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평택지원 2017고단2168)

영어공부방 교사인 피고인은 19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 2022고단3210)

피고인은 학습지 교사로 피해 아동(남, 5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을 가르치던 중, 피해 아동이 산만하게 굴며 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때리거나 손등을 꼬집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법 2020고정1085)

중학교 정구부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남, 14세)가 운동을 게을리 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2회 쥐어박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김천지원 2020고단2039)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은 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연습경기 전 반전으로 마친 축구부 소속 피해자 F(남, 10세)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1대 가격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겨누고 총알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스치게 하였고,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골대에 머리를 박도록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남지원 2020고단2201)

초등학교 테니스부 코치인 피고인은 초등학교 테니스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13세)가 다른 선수의 햄버거를 손에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취도 못 먹어” 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테니스 대회 중 아침 운동을 하면서 피해자 F(남, 13세)와 피해자 D가 신발 끈을 묶으면서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뛰어”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쥐고 흔들면서 서로 박치기를 시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동지원 2020고단953, 대구지법 2021노2625)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 D(11세)의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지금 나 갖고 노냐? 사람 인격 테스트하냐?” 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아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거나 피해자를 수영장 바닥 가까이까지 밀어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왕복 수영을 하도록 한 후 “너 수영 정말 못한다” 라며 피해자가 머리가 차고 있던 고무줄로 된 물안경을 잡아당겼다가 피해자의 눈을 향해 놓음으로써 물안경 렌즈 부분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 E(7세)에게 수영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두 지시내용을 미처 듣지 못해 “어디로 가라구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며 되물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초시계 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목포지원 2019고단2201, 광주지법 2021노1525)

피고인은 학원에서 피해자 D(여, 9세)의 피아노 연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같은 친구까지 다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강하게 내리쳤고, 피해자 E(남, 8세)의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제주지법 2020고단1830, 제주지법 2021노175)

학원강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가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것도 몰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태블릿 PC의 터치펜(길이 1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산지원 2020고단5227, 수원지법 2021노6653)

초등학교 야구감독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 E(남, 13세)가 버피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발을 벗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 아동 F(남, 11세)이 독감 증세로 인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옆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방망이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법 2020고단6718, 수원지법 2021노2262)

(2) 정서적 학대행위

학원에 다니는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밟은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등을 약 2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137)

피해자가 숙제를 다 해가지 못해 혼자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남아서 하든지, 집에 가서 하든지 지금은 공책을 덮어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숙제를 하면서 ‘한 번만 적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묻자 ‘닥쳐줄래’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눈 깔아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교재에 적힌 숙제 내용을 가리키며 ‘이것도 못 알아보나, 아이큐가 70이가?’ 하며 피해자의 책과 공책을 책상에 집어 던지고, ‘휴대폰 게임이나 쳐 하든지, 집에나 쳐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업을 받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공부할 가치도 없다’ 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법 2019고단1183)

피해자가 칠판 앞에 나와 수학 문제를 풀던 중 다른 친구들은 다 풀고 제자리에 돌아갔으나 피해자 혼자 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18고단852)

수학 문제집 풀이를 해주던 중 피해 아동(12세)가 우측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 아동에게 “만만하냐! 적당히 까불어라 뒤지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다리를 걷어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법 2019고단5242)

성폭력, 대피훈련 교육 중 피해자 D(여, 11세), E(여, 10세)에게 “또라이 세포가 암세포를 생기게 하는데, 너 또라이 세포가 있다. 또라이 세포는 암유발에 쉽다, 잘라내야 한다” 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말하고, E로부터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간다는 말을 듣자 E에게 “왜 기다려, 빨리 안 꺼져? 싸가지 없는 새끼야, 빨리 가” 라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9고단2654)

피해 아동(2세)가 다른 아동의 볼을 꼬집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 아동을 들어올려 옆구리에 끼고 다른 교실로 가서 볼을 꼬집고 피해 아동이 교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밀치면서 못 나가게 하고 양팔을 잡고 끌어다가 바닥에 앉히고 피해 아동이 다리를 움직이자 다리를 치고, 피고인을 따라가려고 하자 피해 아동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면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 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가고 피해 아동이 따라 나오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붙잡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1회 찔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128, 서울동부지법 2020노837)

성인들의 음악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10세)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무로 된 드럼스틱(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9고정1943)

피해 아동 G(8세)가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너도 밀치면 기분이 좋겠냐? 니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 아동 E(11세)가 미술대회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쳤냐, 또라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독서록을 보고 글씨체가 나쁘다는 이유로 “글씨체가 이따구냐!”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F(12세)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된다. 왜 이렇게 못했냐!” 라고 말하고, 체육 수업을 받고 씻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머리으 떡졌어! 기름 졌어”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9고단6713, 인천지법 2020노3993)

피해자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인간쓰레기’라고 폭언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22고정450)

피해 아동의 영어 이름인 A를 주어로 하여 ‘A는 멍청하다. A는 못생겼다’라는 등의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피해 아동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21고단3989)

피해자의 지저분한 책상을 지적하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돼지라는 동물 알아, 돼지는 어떻게 생활하니, 너랑 돼지의 차이점은 돼지는 혼자 씻지 못하는데 너는 씻을 수 있고, 같은 점은 돼지와 너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법 2017고단5112)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지만, 정서적 학대만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

피해자에게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주먹으로 툭 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며 ‘개새끼, 씨발새끼, 좆밥새끼, 내가 좆밥으로 보여’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힘껏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집어 땅바닥으로 힘껏 집어 던지고, 피해 아동을 벽면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20분간 차렷 자세로 세워두고 얼마 아빠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법 2021고단 4347)

수업 시간에 떠들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 아

등을 향해 보드마카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책상을 2회 내리치고, 피해 아동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미친새끼, 싹통바가지 없는 새끼. 너네 부모가 안쓰럽다. 그딴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 어찌할 내? 이 새끼야. 이 미친새끼야. 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워 쳐먹었냐. 애를 죽일 수도 없고’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18고단4082)

피해자가 던진 전단지가 피고인에게 날아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땅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이거 너한테 던지면 좋냐, 너한테 던져도 좋냐’ 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21고합447)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 마 장난치나 씨발놈아 너 어디야 개새끼야 죽일뿔라’ 며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717)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병신같이 이게 뭐하는 거야’, ‘되게 병신 같이 했어’ 라고 피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22고정308)

피해자가 팔목이 너무 아파 울고 있자 (다음날 김스를 함) 피해자의 아픈 팔을 잡아 이리 저리 돌린 후 ‘찌병 부리지 마라’ 라는 말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제주지법 2021고단1519)

피해 아동이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펴!’ 말하며 등과 허리를 치고,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 놓으면 피해 아동의 손목을 꼭 잡아 책상 위로 올려놓는 행위를 수회 하고, ‘어깨 똑바로 해야지’ 하며 손바닥으로 어깨를 치고, 피해 아동이 잘 모른다고 말을 하면 짜증내는 말투로 ‘너 문제부터 그림까지 다 쓰게 하는 오답노트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춘천지법 2022고정146)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틀(기성세대를 낮춰보는 표현)’ 이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법 2022고정1595)

피고인은 무용학원 원장으로, 무용학원에서 피해 아동(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 태평무 작품을 하면서 제작한 시가 280만원 상당의 무용 의상을 학원에 기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어머니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 아동에게 “태평무 의상 가지고 와” 라고 수 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아동에게 수업 중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오라고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21고단476)

피고인은 연기학원 원장으로 수업 도중 피해자 D(여, 17세)가 같은 학원생과 사귀다는 이유로, “바쁘고 시간없지? 근데 왜 연애하냐? 니네 아빠 울어, 나한테 전화해서 운다니까, 미친년아 안 믿기지? 씨발년아, 내가 니가 내 딸이었으면 나는 너 칼로 찔러죽이고 감옥 들어갔어” 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를 가리켜 “저 년은 대학가면 다른 남자 만날 년이야, 애들아 재 믿지 마, 악어의 눈물이다” 라고 욕설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20고단4334)

수학 강사는 피고인은 학원을 다니는 피해자 C(남, 15세)가 보강수업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학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7:47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화난 목소리로 피해자를 혼계하던 중 피해자에게 “책이나 펴라 이 새끼야” 등 욕설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21고정219)

(3) 유기·방임행위

영어 공부방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베개를 3회 던지고 공책을 맡아서 6회 가랑 때리고 밥을 굶기고 전날 영어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다 쓸 때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밥을 굶기고, 반성문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함께 영어캠프에 참석한 피해 아동 1명이 음식이 맞지 않아 저녁 식사 중 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영어캠프에 참가한 19명 전원에게 별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등 3끼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밥을 굶겨 방임행위를 하였다.

(서산지원 2017고단800, 대전지법 2018노3013)

(4) 성적 학대행위

호신술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바지 허리끈이 풀려 입고 있던 도복 바지가 벗겨져 울자 사무실로 데려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 아직 성장기여서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짐을 둘 장소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상의 옷을 위로 젖혀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꼼지락 거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왁마 이쁜거 내사랑”, “내 사랑을 받아줘, 답을

해라 웃지만 말고 1년만 기다리면 되는거야, 난 진심인데”, “OO이 보고 싶다 난 가평에 있는데”, “자니? 사랑해 그 후로 말이 없었다....., 내 사랑을 거부하니? ㅌㅌ 까인건가”, “그럼 내 사랑 받아주는 거야, 뽀뽀 좋았겠다, 같이 타고 싶다. 6일날 갈까?, 명절 잘 보내고 관장님 보고 싶으면 전화해~~~ 평창에서 보드 타다가도 전화받을게 ㅋ”, “납치해서 내꺼 하고 싶다, 사랑하니까, 내 고백이 너에게 부담인거니, 내가 사랑하면 안되는거야”, “내 사랑 잘 잤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상하게 OO이가 보고 싶네” 라고 보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고법 2018노498).

영어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 후 피해자 D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D를 껴안고 “나 좋아?” 라고 물어보고 마지못해 “네” 라는 대답을 들으며 뒤를 돌아보자 입술에 4회 입맞춤을 하고, 옆드려 “졸리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 D의 턱을 손으로 만지면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 D로부터 “ 쌤, 개가 된 기분이에요” 라는 말을 듣더니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학원에서 내 꺼해” 라고 말하며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고 담배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패딩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 E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껴안고, 담배 검사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벌리게 한 다음 겨드랑이부터 가슴 옆, 허리, 골반,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천안지원 2019고합111, 대전고법 2019노441)

피해 아동이 약속 시간을 지켜 등원하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이 새끼 고추는 달려있네” 라고 말하고, 학원 강의실에서 앉아 있는 자세를 지적하며 “피씨방에서처럼 앉으면 불량 고추가 된다” 라고 말하고, 학원에서 “이 새끼는 공공아이핀을 안 만들어 올 것 같다. 주말에 엄마 손 잡고 공공아이핀 만들러 가, 고추를 걸고 약속” 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브이자 모양으로 만들어 피해 아동의 손가락을 올리게 한 뒤 성기를 절단하는 듯한 동작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20고단2393, 대전지법 2020노3085)

피고인이 지시한 프린트지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14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쳤고, 시험지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고, 자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궁금한 것이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풀려고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책상 밖으로 튀어나온 피해자의 팔꿈치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10~15초 가량 비비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개인 강의를 해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으로 간질 듯이 긁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19고합60, 부산고법 2019노579)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F(12세)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G(12세)를 사무실로 불러서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G의 손과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물러 추행하고, 사무실로 불러 갑자기 피해자 C(15세)의 손을 잡고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손등을 비비면서 “손이 보들보들하네, 까칠까칠 하지도 않고 여자 손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가 손을 빼려고 하면 더 세게 손을 잡으면서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동부지원 2018고합139, 부산고법 2019노617)

합숙 훈련을 하던 중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13세 미만 아동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다’ 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눌러 추행하고 성교육을 한다며 ‘섹스파트너의 의미, 자위하는 법, 몸파는 여자’에 대해 말을 하고 가슴 사이즈를 알아야 한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고,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상의를 올려보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성교육을 한다면서 ‘니 자신의 소중한 부위를 만져봤나,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는 친구의 소중한 부위를 터트렸다’ 라고 말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 F를 안은 후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져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드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입고 있는 하나씩 벗게 하는 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고법 2020노144, 부산서부지원 2019고합198, 2019전고17(병합))

피고인이 성악계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한 접촉을 당하더라도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악지도를 마친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여, 14세)를 껴안으면서 “너 예뻐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너도 내 껴 만져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에 닿게 한 후 CCTV 설치되지 않은 밀폐된 레슨방으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의정부지법 2019고합298, 서울고법 2020고단672).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린 후 손가락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교실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올린 후 그 사이로 자신의 발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발이 닿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 회 밟아 추행하였다.

(광주지법 2021고합479)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인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이 밀착되도록 꼭 끌어안고 이빨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었다. 상담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빈방으로 데려가 ‘눈웃음이 참 예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을 정도로 꼭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동부지원 2022고합77)

원장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잠시만 이리 와봐’ 라고 말하여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마스크를 고쳐준다고 피해자를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씌워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8고합172)

피고인은 수업을 끝내면서 피해 아동에게 ‘딸딸이 치냐’ 고 말하였다. 빔 화면에 성인영화 포스터를 클릭하여 재생하고 피해 아동에게 ‘야동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라고 말하였다.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을 때 ‘의식주가 있는데 성도 중요하다. 야동 보고 자위하는 그런 성욕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 아동의 성기를 보며 ‘작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진주지원 2021고단951)

피해자의 오빠와 언니도 피고인으로부터 수학을 배우는 등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알리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스킨십이라는 명분으로 강의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2차례 만진 행위 등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평택지원 2021고합194)

(5) 중복 학대행위

지도한 내용을 암기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뭐였다고?’ 라고 물어본 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린 뒤 재차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꼬집고, 문제집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시대별 왕위 계승 순서를 외우지 못하자 ‘멍청아, 그게 맞냐’ 고 말하고, 옆에 있던 다른 과외교사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애는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네요’ 라고 비꼬듯이 말하여 망신을 주고 ‘이거 외우세요. 시험 볼거네요. 안 외우면 또 싸대기 맞을 준비를 하세요’ 라고 겁을 주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목포지원 2018고단914)

피해자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를 다른 수강 학생에게 보여주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717)

피해자의 체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건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다른 교습생들에게 ‘살 빼, 살 못 뺀 사람은 바닥이니까 말도 걸지 마라’ 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산지원 2017고합294)

피고인이 피해자 쌍둥이 중 A에게 ‘남자새끼가 왜 머리를 묶었어’

라고 지적을 하는데 A가 ‘그냥요 왜요’ 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에게 엎드려뺨쳐 기합을 주고 어깨를 붙잡고 관장 사무실로 끌고 가 밀친 후 거친 말과 큰 소리로 훈계를 하였고, A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찾으려 하자, 피고인이 A의 뒷통수를 1회 손으로 때린 후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팔을 잡아끌었다. 이를 보던 쌍둥이 피해자 B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하자 ‘너 이 새끼는 왜 우냐’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B에게도 엎드려뺨쳐 자세를 하게 하고,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21고단2205)

피해 아동이 다른 검도장 원생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 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주지법 2017고단2037)

제4장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례 심층분석

1. 분석대상사건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판례의 경향

제4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판례 중, 아동학대 여부 판단 기준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판례 38개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판단의 경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판례를 선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 해당 여부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을 이유로 심급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경우
- 훈육·지도 등의 목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 양형에 있어 교육기관 내의 특수한 사정 등을 반영한 경우

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신빙성 판단

한편, 분석대상 판례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였으며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성인지 관점’에서의 판단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기도 하였다.

(1) 신빙성 판단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압박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

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 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신빙성 판단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2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 8583 판결 참조).

(3) 신빙성 판단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 7709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특정 기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가 거듭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인 피해자의 연령, 인지능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 당시의 일시, 장소 등이 명확하게 진술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측에 대하여,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언급한 판시들이 확인되었다.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440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위 각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함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 각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다. 아동학대 유형 사이의 죄수관계

아동학대 범죄의 죄수와 관련된 판시 중, 여러 개의 유사한 범죄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닌 각 행위별로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다. 하나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사안에 있어서는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같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는 아동인 각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인바(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참조) 설령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학대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수회의 학대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2808 판결)이다.

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동일한 범정형으로 처벌하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규정 체계상 유형력을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포섭되기는 어려운 반면에 반대의 경우는 충분히 상정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범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회관념상 하나의 학대행위를 이중으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문제가 생기는 점, ③ 학대행위의 태양에 따라 행위자의 주된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수원지법 2022고단1031 판결).

라. 아동학대 판단 기준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있어 각 판례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아래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기준³¹⁾〉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기준³²⁾〉	〈성적 학대행위 판단기준³³⁾〉
①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②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③ 행위의 정도와 태양 ④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 ⑤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⑥ 행위자의 평소 성향 ⑦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⑧ (행위가 지속된) 기간	①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②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③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④ 피해아동의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⑤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⑥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⑦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⑧ 행위의 정도와 태양 ⑨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⑩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⑪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①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②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④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⑤ 구체적인 행위 태양 ⑥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3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32)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3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2174 판결 등

2.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의 태도

교육기관 중 특히 학교 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과거 교사의 체벌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교사의 징계와 지도행위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헌법상의 권리인 비례의 원칙의 상응하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건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그런데 최근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권한과 내용이 규정되었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³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학생에 대한 교

3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원의 생활지도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규정)가
2023. 9. 1. 자로 시행되는 등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 되었다³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
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
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한다.

3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정하여 고시한다.

이상과 같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의 대법원 판시의 취지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려한다면, 교원이 훈육이나 훈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체벌이나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고시를 이유로 교원이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초·중등교육법령의 규정이 존재함과 더불어 기존의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해당 지도행위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별한 판례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정리하였다.

가.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과 무관하게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학생에게 강요하는 등의 경우이다.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순천지원 2019고정539),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거부한다고 성인용 숟가락에 반 정도를 강제로 먹인 행위 (서울북부지법 2020노328),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이유 없는 학대행위(수원지법 2022고단1031)가 이에 해당하였다.

나.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피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도, 훈계, 훈육의 필요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부

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를 여기에 분류하였다. 출력되고 있는 프린터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행위(고양지법 2018고정 1186), 피해자가 엉뚱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얼굴에 갖다 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746, 서울중앙지법 2019노1543), 부모의 항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여장을 시켜 촬영한 행위(인천지법 2018노4315)의 판례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 상당한 방법 지도 등이 아닌 경우

지도, 훈계,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선택한 지도 등의 방식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지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즉 지도 방식이 부적절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례를 여기에 분류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학생의 손가락을 물자 물린 학생에게 피해자를 동일하게 물도록 시킨 행위(광주지법 2018고단1906, 광주지법 2019노1661), 피해자 부모의 훈육 부탁이 있는 상황에서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한 행위(고양지법 2019고합248, 서울고법 2020노1665),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사용하여 칠판 앞 의자에 강제로 앉힌 행위(안산지법 2020고단2708, 수원지법 2021노1997), 반성문을 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순차로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시킨 행위(서울북부지법 2018고단5059, 서울북부지법 2019노670),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계단까지 끌고 간 행위(대전지법 2018고정465), 피해 아동들에게 기합을 주고 이를 촬영한 행위(대구지법 2021노4368), 수업 중 불손하게 구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성남지법 2020고정829, 수원지법 2021노1746), 학생이 교사의 행동에 대하여 신고를 하자 무고죄를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춘천지법 2019고단1127), 피해자의 행위를 조현병이라 빗대며 지도한 행위(청주지법 2021고단524, 청주지법 2022노24), 현장학습을 가던 중 피해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홀로 휴게소에 두고 가 방임한 행위(대구지법 2017고정2029, 대구지법 2018노1960), 수업시간에 산만하여 교실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교실 밖까지 끌고 나간 행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595, 부산지방법원 2020노2816) 등의 판례가 이에 해당하였다.

라. 과도한 방식을 사용한 지도 등인 경우

이는 지도, 훈계,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지도 방식이 폭력성을 가지는 등 과도하여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여기에 분류하였다. 품새를 지도 중에 자주 틀린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 아동을 때린 행위(고양지원 2019고단921, 의정부지법 2019노2105), 수영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스노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군산지원 2018고단160, 전주지법 2019노487),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폭력으로 초등학생 선수들을 지도한 행위(부산동부지원 2019고단2222, 부산지법 2020노2716), 피해자들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시하고 때린 행위(수원지법 2020노5609), 학생들에게 “짐승의 뇌”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급식시간에 남은 음식을 섞어서 억지로 먹게 한 행위(대구서부지원 2018고단3679),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년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수업시간 내내 옆드려 있게 강요한 행위(대구지법 2020고단2298, 대구지법 2021노1837),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큰소리로 면박을 주는 행위(수원지법 2020고단1612, 수원지법 2021노2979),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행위(강릉지원 2019고단220, 2019노476) 등의 판례가 이에 해당하였다.

마.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다시 구체적인 분류를 하여 분석을 하였다.

(1)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당긴 행위(서울중앙지법 2019고합347), 학생과 교제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부산지법 2018고단2325, 부산지법 2019노814)

(2)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수업시간에 잘 했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토닥거린 행위(순천지원 2019고단1348, 광주지법 2020노2724),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혀로 피해자의 코와 볼을 핥은 행위(서울고법 2019노906),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행위(여주지원 2021고합22, 수원지법 2022노350), 여성 교사가 여학생에게 “살이 좀 찢 것 같네” 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행위(정읍지원 2020고합54, 광주고등전주재판부 2021노160)

(3)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성적 요구를 한 경우

· 성적 수치심 등을 줄 수 있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 경우

‘여학생들 중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벗겨 버리겠다’ 라는 등의 말한 행위(부산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581)

‘너는 얼굴과 몸매가 안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한 행위(수원지법 2021고정465, 수원지법 2021노6117)

· 수업시간에 부적절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다수 한 행위

“다른 남자 모듬원들의 기쁨조를 하라, 우리 나라 여자들은 드세다,

일본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라는 등의 발언을 다수 한 행위(서울고법(춘천) 2020노121)

피해자에게 “눈웃음이 섹시하다”거나 가슴 쪽을 응시하며 “너는 단추를 잠그는게 낫겠다”는 등의 발언을 다수 한 행위(포항지원 2019고단723)

수업 중 피해아동들에게 “너희엄마, 아빠가 밤에 더러운 짓 해서 너희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수시로 반복한 행위(평택지원 2020고단2205, 수원지법 2021노1947)

· 온라인을 이용하여 수업 외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요구를 한 경우

여교사가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부산지법 2019고단413)

교사가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동들의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도록 강요한 행위(울산지법 2020고합400, 부산고법 2021노62)

3. 판결문 심층 분석

가.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고, 피해자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꿈속에서 C 공부 가르쳐 주는 꿈꾸면서 잘 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내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였다.

(순천지원 2019고정539)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완곡하게 항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발신 시각(대부분 늦은 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였다.

<선고>

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거부한다고 성인용 손가락에 반정도를 강제로 먹인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사립특수학교 중등부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 L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젓가락 끝에 고추냉이를 묻혀서 L에게 맛보게 하였을 때 L이 고추냉이 맛보는 것을 거부하고 옆 학생을 손으로 꼬집었다는 이유로 성인용 손가락으로 고추냉이를 반 손가락 정도 펴서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먹이고, L이 고추장이 들어 있는 비빔밥을 맵다고 먹지 않고 옆 학생의 손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성인용 손가락으로 고추장

을 반 손가락 정도 펴서 L에게 강제로 먹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328)

<판단>

피고인이 담당교사로서 피해자 L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정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이고 L의 부친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 참작하였다.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이수명령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743에서는 무죄

·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이유 없는 학대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16세)는 지적장애로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학생이다.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탐침 온도계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찌를듯이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후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정서적 학대> 피해자에게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너는 왜 똥똥하나’ 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법 2022고단1031 판결)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교육하는 자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명령

나.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출력되고 있는 프린터를 만지려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고, 피해자는 6세 아동이다. 유치원 교실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에서 수업교재가 출력되어 나오자 아동 3명이 프린터 주변에 모여들고 프린터를 만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교실을 한바퀴 돈 후 다시 피고인 앞으로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몸이 휘청거리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8고정1186)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프린터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당시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방법 외에 피해자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6세 아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과 당시 아팠었다는 느낌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의도적,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였다.

<선고>

벌금형 선고유예

· 피해자가 엉뚱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얼굴에 갖다 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이다.

교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숙제와 알림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수학익힘책이 찢어져 테이프로 이를 붙이고 나가자 “왜 이

렇게 늦게 나오냐, 싸가지 없이, 5학년때도 그랬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엉뚱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얼굴 주변에 갖다 대고 찍는 행동을 하면서 “성능 좋은 스테이플러로 너 입을 찍어줄까” 라고 말하였고,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D가 117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를 수업시간에 배제시킨 채 교실 뒤로 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그 신고 경위를 적게 하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써” 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알림장 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알림장을 제출하고 스티커 도장을 받은 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이를 듣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너 왜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안 하냐!’ 라고 소리치고 작문노트에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친구도 자신이 이를 들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을 써보라” 며 교실 바닥에 피해자의 작문노트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위 노트를 가져오게 하고 반성하는 글을 쓰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악노트를 강제로 판매한 후 피해자가 위 노트값 5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그럼 전학 보낸다’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746, 서울중앙지법 2019노1543)

<판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학생들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학생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들 내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2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선고>

벌금 2,0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

· 부모의 항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여장을 시켜 촬영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들은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다.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A를 자주 혼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 A의 보호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의 모가 교장에게 피고인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알고 피해 아동 A에게 ‘너네 엄마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엄청 힘들었다’ 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 A를 둘러싸게 하여 휴대전화로 A를 촬영하게 하고, 피해 아동에게 ‘너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 너와 너의 엄마 이름을 허락도 없이 책에 실어 너가 잘못된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다, 논문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넌 우리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잘못된 것은 도려낼 거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박껍데기를 학생들의 머리에 쓰게 한 후

머리가 통과되지 않은 아동 4명을 뽑았고, 그 중 2명은 수박껍데기를 쓴 채 사진촬영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허리가 아프다며 바닥에 매트를 깔고 피해 아동 B 등을 불러 어깨 다리 엉덩이 등을 주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하면서 피해 아동 C 등의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을 하여 강제로 여장을 한 후 사진을 찍게 하였다. 이에 대해 부모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자 피해 아동 C에게 ‘너네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어, 먹고 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거냐’ 며 소리를 질렀다.

<성적 학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에게 다가가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왔다’ 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파스를 붙이게 하고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 몇 개 들어간다’ 고 말했다.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개불알꽃을 설명하는 중 누군가가 ‘영어로 도그 파이어 붙이네요’ 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파이어볼 보다는 파이어에그(남성 성기를 뜻하는 은어)가 더 비슷하다’ 고 하며 피해 아동 A에게 ‘Do you know fire egg?’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갑자기 화를 내 면서 피해아동들에게 ‘교장이 먼저 옷 벗나, 내가 먼저 옷 벗나, 내가 벗을 건 팬티와 브래지어 밖에 없다’ 고 소리를 질렀다.

(인천지법 2018노4315)

<판단>

원심(인천지법 2017고단8684)은 이 사건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학대 행위 태양이 다양하다는 점을 기재하며 반성한다는 말만 하며 변명

에 급급한 태도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학생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며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머리가 큰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링 모양의 수박껍데기를 돌아가며 쓰게 한 다음 머리가 통과되지 않은 피해 아동들은 수박껍데기를 쓴 채 사진촬영을 하게 한 일 및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안마를 시킨 일’에 대하여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당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적으로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설시하였다.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다. 상당한 지도방법 등이 아닌 경우

· 피해자가 다른 학생의 손가락을 물자, 물린 학생에게 피해자를 동일하게 물도록 시킨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이고, 피해자(6세)는 유치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유치원 교실에서 다른 학생

B의 손가락을 물은 일에 대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B에게 물게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벗은 실내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법 2018고단1906, 광주지법 2019노1661)

<판단>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 및 그 부모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훈육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참작하였다.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명령

· 피해자 부모의 훈육 부탁이 있는 상황에서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학원 강사이고 피해자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이른바 원산 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계속하여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9고합248, 서울고법 2020노1665)

<판단>

피고인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를 벗어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학원 강사로부터의 학대 행위는 미연에 방지되어야 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소 교육에 헌신적이고,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절도, 흡연, 가출 등 비행을 일삼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였다.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사용하여 칠판 앞 의자에 강제로 앉힌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의 1학년 8반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 D(7세)는 위 반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친구들이 못 놀잖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가슴, 볼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가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교실 앞까지 끌고 간 다음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칠판 앞에 있던 의자에 피해아동을 강제로 앉히고, 피해 아동이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고 피해 아동의 어깨와 몸을

누르며 피해 아동을 강제로 앉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안산지원 2020고단2708, 수원지법 2021노1997)

<판단>

피해아동은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느껴져 자신이 먼저 친구들을 밀치거나 때렸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가짜 사과(“F야, 미안해, 너는 천재야”)에 화가 나 의자와 책상을 집어 던졌다는 등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 폭행을 당한 부위 등에 관한 반복된 질문에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자로서의 입장이나 감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고인 학급의 아동들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또는 설문지 기록조사에 의하더라도 여러 명의 아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관련자들 진술 상호간의 사소한 차이나 불일치를 들어 “피고인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때렸다” 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난 피해아동의 진술 전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아동과 목격자들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아이여서 언어적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진술도 그와 같은 아동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점, 20명이 넘는 학급 인원 중 학부모가 동의한 일부 아동만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각자의 인식과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목격자들에게 전원 일치의 완벽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흥분한 피해아동을 제어하여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판시와 같이 때리는 행위는 합당한 훈육

의 정도를 넘은 것이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나, 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의 교육적 열정과 교육현장에서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

벌금 10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 반성문을 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순차로 피해아동을 때리도록 시킨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이고, 피해자(9세)는 위 학급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성문을 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23명에게 순차로 피해자의 등을 3회씩 때리도록 지시하여 위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을 때리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5059, 서울북부지법 2019노670)

<판단>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어린학생의 품행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23명의 학급 친구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게 하였는바, 아직 인격형성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학대행위임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폭력행위를 하게 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학생들 또한 사실상

피해자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자를 학교폭력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자청하여 관리하면서 잘 돌봐 오다가 순간 훈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 변소하지만, 피해자가 학급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같은 반 급우들에게 어린 피해자를 무방비상태에서 때리게 하는 것은 사실상 폭행교사행위일 뿐 이를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택한 방법은 어린 제자에 대한 훈육이 아니라 반인격적인 학대행위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고통만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명령

·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계단까지 끌고 간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버려” 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피해아동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에서부터 계단까지 끌고가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18고정465)

<판단>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피해아동의 책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피해아동을 계단까지 끌고 간 것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애초에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용 2년차 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선고>

벌금 200만원

· 피해아동들에게 기합을 주고 이를 촬영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아동들은 고등학교 2학년(여, 16세) 학생들이다.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 내 약 10분 동안 배를 바닥에 닿도록 바짝 엎드린 채 양 팔을 위로 뻗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해아동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내 화단가꾸기 시간에 피해아동들이 화단가꾸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왜 안하냐” 라고 하며 슬리퍼를 벗고 발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엉덩이를 1회씩 걷어찼다.

<성적 학대>

피고인은 교무실에서 책상을 닦고 있는 피해아동 옆으로 다가가 피해아동 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역시 잘 자는 애는 크다” 라고 말하여 가슴 등 신체부위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네?” 라고 되묻자 웃으면서 “아니야” 라고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교무실에서 피해아동 목에 붙여 놓은 밴드를 보고, 피해아동이 다친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그만 좀 빨아라.”, “어제 집은 들어갔냐?” 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이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무실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아동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법 2021노4368)

<판단>

피고인은 이상의 행위들이 교칙 위반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인 피해아동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허위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아동을 비롯한 해당 반 소속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부터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허위로 제보, 고소하거나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잠을 많이 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소 비꼬는 취지에서 “잘 자니까 잘 크다” 라고 하거나, 지각이 잦은 피해학생을 혼내는 상황에서 “빨리 좀 다녀라, 집에 언제 들어갔니?” 라고 말한 것은 훈육행위의 일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아동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어 배를 바닥에 닿도록 엎드린 채 양팔을 위로 뻗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거나 복도에 눕게 하는 조

치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들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까지 한 것은 교권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심(김천지원 2020고단1392)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상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항소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범죄사실 중 일부가 학생 지도를 위한 동기 내지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에 대하여 교원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였다),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제까지 비교적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해고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을 명하였다.

<선고>

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수업 중 불손하게 구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인 피해 아동(12세, 여)이 피고인의 얼굴을 공책에 그리자 이를 보게 된 피고인은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공연히 모욕하여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남지원 2020고정829, 수원지법 2021노1746)

<판단>

피고인은 지도와 훈육의 한계를 벗어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아동이 피해사실과 그 구체적 정황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당시 충격과 수치심으로 울음까지 터뜨렸던 12세의 어린이가 상황을 판시와 같은 정도로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며,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교사의 캐리커처를 그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아동의 성장환경을 관련짓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며 아동의 존재 가치까지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은 교사로서 담당 학생에 대한 지도나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것이며, 피해아동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2세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동급생들 앞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린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충분하다.

<일부무죄> 피고인은 위 아동에게 “수행평가 최하점을 주겠다.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위 아동은 수업 중에 불량한 수업태도를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응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아동이 동급생들 앞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받은 영향은 기분이 좋지 않고 선도위원회 회부로 장차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불안함을 느낀 정도였다. 수행평가 점수 부여나 선도위원회 회부는 교사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최하점과 같은 극단적인 언급이 훈육의 수단으로 다소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선고>

선고유예

※ 검사 항소이유 : 수행평가는 객관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주관적 감정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최하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한 것으로 교사의 권한을 벗어난 것인 점, 당시 피해아동은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학생이 교사의 행동에 대하여 신고를 하자 무고죄를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D(15세)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위 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진로 상담 수업 중 피해아동이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어 피해아동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 일으키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상체를 잡아 2회에 걸쳐 강제로 일으켜 세웠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왔음에도 못 믿겠으니 같이 보건실에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보건실로 가도록 하였고, 교실로 돌아온 피해아동에게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며 2회 내지 3회에 걸쳐 신고를 종용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실제로 112에 신고하자 위 학교 2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해아동을 오게 한 후, “선생님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1차 조사가 경찰 조사 끝나고 2차 검찰이거든.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끝

까지 가볼까 우리? 그 사람을 징계할 목적으로 행사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처벌 무거워. 내가 그래 했다고 그래 그럼 단순폭행이야. 어느 게 형이 더 높은 줄 알아? 무고죄가 형이 높아. 너 경찰서가 어떤 곳인지 알아? 대학갈꺼잖아, 너” 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신고로 인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고할 것처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말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말은 훈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허위 과장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아동의 정서적 문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자는 취지에 불과한 바, 이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목격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가 좀 난 듯한 모습이었고 신경질을 내는 것 같았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내지 훈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의 표출로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피해아동이나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아동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려 한 시도가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옆에서 대화를 시도해 본다거나 피해아동의 몸을 가볍게 흔드는 등의 방법을 취해본 것도 아니며, 툭툭치고 “아파?” 라고 묻기만 한 후 바로 위 각 행위로 나아갔으며,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식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말 또한 훈계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유형력 행사 후 거둬 잘못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아동도 주변 친구들에게만 자신이 아프니 선생님에게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채, 교사인 피고인에게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

한 고지나 보건교사의 확인증도 제출 없이 수업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만연히 책상에 엮드린 채 별다른 반응 안보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선고>

벌금 5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 피해자의 행위를 조현병이라 빗대며 지도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일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면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차고, 피해자가 수업 중 카카오톡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공부방 학생들의 단체방에 올려 버리는 등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청주지법 2021고단524, 청주지법 2022노24)

<판단>

피고인은 공부방 지도교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부방 지도교사로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어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수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이 명백하나, 그 발생 경위에다가 아래 무죄 이유에 기재된 피해자의 행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과정에서 보여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

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일부무죄>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휴대 전화로 지인들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사회부적응자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업에 오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현병 아니냐” 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도 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공부방 등원을 두고 일관되지 않은 언행을 보이자, “조현병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여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언행을 헐난한 것인데, 이를 조현병에 빗대어 비판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대화 내용이나 변론에 현출된 피해자의 발달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의도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언행을 비판하는데 있음을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와 같은 비판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진술이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한 욕설과 조롱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피해자의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선고>

벌금 5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 현장학습을 가던 중 피해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홀로 휴게소에 두고 가 방임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이고, 피해자는 해당 반 여자 학생이

다.

현장학습 체험을 위해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 중 피해자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휴게소가 멀고 차를 갓길에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남녀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 뒷좌석에서 비닐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변을 누고 뒤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휴게소에 도착한 이후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현장학습에 갈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에 태운 채 휴게소를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자, “다른 아이들이 너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 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발하던 버스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하였다.

(대구지법 2017고정2029, 대구지법 2018노1960)

<판단>

이 사건은 버스 안에서의 배변행위를 제외한, 피해자를 휴게소에 두고 간 ‘방임’ 행위만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고 여러 명의 증인을 법정에서 불러 치열하게 다투었음에도 1, 2심 모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피해자를 홀로 두고 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만, 당시 상황상 피고인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이 혼자 휴게소에 있던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되었다.

<선고>

선고유예

· 수업시간에 산만하여 교실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교실 밖까지 끌고 나간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어민 영어강사이고 피해 아동(7세)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며 산만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스스로 나가지 않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며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교실 밖까지 끌고 나감으로써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입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595, 부산지방법원 2020노2816)

<판단>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주로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 장난을 치는 피해아동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어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전 교육이 있었고,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일정 시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타임아웃’을 실시할 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한국인 강사로 하여금 학생을 타일러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원어민 강사가 강제로 끌어낸 사례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고, 학대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도에 있어 덜 침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원어민 강사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고>

벌금 100만원

라. 과도한 방식을 사용한 지도 등의 경우

· 품새를 지도 중에 자주 틀린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아동을 때린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장 사범이고, 피해자(7세, 지적장애 3급)는 도장 수련생이다.

피고인은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의 승품심사를 위한 품새를 지도하다가 피해자가 발을 자주 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무릎, 머리 등 신체를 약 28회 대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9고단921, 의정부지법 2019노2105)

<판단>

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피해아동을 괴롭히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선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 수영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스노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수영장에서 피해자 E(여, 7세)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스노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목표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리발로 수영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목표한 기록이 나오지 않거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영장 내 창고에서 낚싯대 등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손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영장 내 창고에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는 등 14회, 피해자 G에게는 14회, 피해자 H에게는 9회, 피해자 I에게는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하였다.

(군산지원 2018고단160, 전주지법 2019노487)

<판단>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기록 향상이나 훈련 성과를 내려는 욕심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피해아동도 훈련 외 시간에는 피고인과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 특히 피고인도 학창 시절에 수영선수로 활동할 당시 훈련과정에서 체벌 등 잘못된 지도 방식을 접하여 자신의 훈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 체육 현장에서 성적으로 올리려는 수단으로 체벌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훈련방식은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에게 체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어 더는 통용될 수 없고 지양되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에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아동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나쁜 기억을 남겼는 바, 피

해아동들의 신체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폭력으로 초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정구부 코치이고 피해 아동들은 정구부 소속 선수들이다.

피고인은 시키는 대로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구 라켓으로 D 머리를 1~2회, 엉덩이를 1회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훈련 중 서브와 리시브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구 라켓 손잡이를 D, F의 머리를 3~4 회씩 스스로 때리게 하고, 같이 훈련하던 선수들끼리 서로 머리를 때리게 시키고,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옆으로 쓰러뜨리고, 새벽 훈련을 하던 중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옆드려뺨쳐를 시키고 한 쪽 다리를 들게 한 다음 라켓 테두리 부분으로 양쪽 발바닥을 1 회씩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222, 부산지법 2020노2716)

<판단>

피고인은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로서 소속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으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초등학교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피고인의 기대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폭력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였다.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이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입단속 시킨 정황도 보인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초범이고, 훈육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을 대리한 부모들과 모두 합의하고 지인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명령

· 피해자들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시하고 때린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겨강습코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점프, 스핀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목살을 잡고 끌고 가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빙상장에 약 1시간 가량 세워놓고,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 플라스틱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강사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냐, 내말 씹냐 내 말이 말같지 않냐’ 고 말하며 날집으로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5609)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 및 당

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 코치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아동들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실제 피해아동 중 일부는 병원치료를 받고 음성 틱 증상을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구체적 피해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선고>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 학생들에게 “짐승의 뇌” 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급식시간에 남은 음식을 섞어서 억지로 먹게 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 담임교사이다.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교실에서 피해자 E(8세)가 학생들과 싸우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는 육식동물이니 같이 놀지 마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G(7세)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짐승이야, 파충류 인간의 뇌를 가졌어” 라고 말하였으며, 교실에서 피해자 H(8세)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 파충류는 성질을 잘 내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 F가 급식시간에 사과샐러

드, 오이무침, 국물, 밥 등을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라고 함에도 이를 섞어서 억지로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였고, 피해자 H가 급식시간에 음식을 남기자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구역질을 참아가며 억지로 먹게 하였다.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교실에서 피해자 E가 보온물병이 든 신주머니를 들고 다른 학생들과 다툼을 하자 “너도 한번 맞아봐라” 라고 하면서 보온물병이 든 신주머니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무릎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E가 친구들과 다투던 중 보온물병이 든 신주머니를 다른 학생들에게 돌리며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물병의 물이 피고인에게 튀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교실 내 쓰레기통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얼굴을 찡게 하였고,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회 연습을 하던 중 대열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뒤로 가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가 뒤에 서 있던 J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가 충혈되게 하였고,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 H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국어책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4회 때렸다.

(대구서부지원 2018고단3679)

<판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학생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학생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행동은 교육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이 잘못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3명의 피해학생들 내지 그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년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수업시간 내내 옆드려 있게 강요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만 11세-12세)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A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던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주워 주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렸으며, 다른 날에는 화장실에서 늦게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2시간 가량 벽을 바라고 서 있게 강요하고, 4시간 가량 교실 앞에서 칠판 쪽을 향해 앉아 있도록 강요하였고, 또 다른 날에는 “A 니네 엄마 나 너나 바보같다. 수준이 똑같다” 라고 폭언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A 같은 애들, A처럼 해줄까?” 라는 등의 언행을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A 너는 정상이 아니다. 전학 가라” 라고 폭언하고, 피해아동에게 “개새끼야” 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에게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너 참 싸가지 없다” 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다른 날 피해아동이 장염 등으

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간다고 하였으나 이를 저지하고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가지 못하게 하거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발장 앞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는 피해아동 C에게 “왜 복도에서 우유를 마시냐” 라고 하며 피해아동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다른 날에는 피해아동의 옷을 쓰레기통에 넣고 학교가 끝날때까지 쓰레기통에 있는 옷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또 다른 날에는 피해아동에게 “쪼개지 마라”, “꿀도 보기 싫다”, “니 노는 걸 보면 짜증난다” 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또 다른 날에는 피해아동에게 “왜 안경을 벗느냐, 꿀 보기 싫으니 안경을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라” 라고 말하며 5분여간 지속적으로 폭언하였고, 또 다른 날에는 피해아동에게 “공부하기 싫으면 너는 옆드려라”, “넌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수업시간 내내 옆드려 있게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에게 “너 웃음이 나오냐” 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다른 날에는 피해아동에게 “느그 엄마 그날 왜 울었는데” 라는 등으로 비꼬는 듯 폭언하였다.

(대구지법 2020고단2298, 대구지법 2021노1837)

<판단>

피고인은 이상의 행위들이 훈육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으며,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불만한 자료가 없고, 이를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와 피해아동들의 진단서 등이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 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아동들의 고통 등을 종합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일부인 피해아동에게 “내 밥 먹는거 안보이나, 밥 다 먹으면 다시와라” 고 차별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점 등에 있어, 해당 범죄사실 증명을 위한 증인들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일부 언행에 있어 반 학생 전체에게 공지하여 적용하였고,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명령

•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큰소리로 면박을 주는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실에서 머리카락이 내려와 머리핀을 꽂고 있는 피해 아동 H(13세)에게 “사내자식이 왜 핀을 꽂고 있냐.” 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책에 있는 미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12세) 머리를 부채로 1회 때리고, 피해아동 H(12세)에게 “반말하는 거냐” 며 부채로 머리를 1회 때렸고, 피해아동 K(12세) 글씨를 못쓴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돈을 벌어오라는 숙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을 하자 갑자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폐지줍기라도 하든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하라” 라고 큰 소리로 폭언하고, 피해아동 A(여, 12세)가 공책을 꺼내자 손으로 이마를 1회 때렸고, 피해아동 R(12세)에게 진도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손으로 등을 1회 때렸다.

(수원지법 2020고단1612, 수원지법 2021노2979)

<판단>

과제 이행방식을 질문하는 학생에게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것은 비록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할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불필요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시킴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선고>

벌금 7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고구마 썸, 호두 썸”이라고 부르고 놀리고,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춤 뒤쪽을 잡아 들어올려 교탁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책상 쪽으로 집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교탁에 배를 대고 엮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머리채를 잡고 등을 밀어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밀어낸 후 복도에서 손을 들고서 있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부친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자, 교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반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할 걸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알려라, 너네 아빠 버릇없다, 너희들은 피해자랑 놀지 마라” 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강릉지원 2019고단220, 2019노476)

<판단>

피해자가 먼저 장난을 치면서 피고인을 놀리고, 피고인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평소 피해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임무가 있음에도,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행동에 자제력을 잃고 어린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어린 피해자에게 돌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기변명에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다만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다른 학생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웃자,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사로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선고>

마. 성적 학대행위 판례 심층분석

(1)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당긴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운동부 감독인 자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선수들이다.

피고인은 운동부실에서 피해자 F(12세)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을 하였고, 아이스링크에서 피해자 G, J의 젖꼭지를 손으로 꼬집어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을 하였고, 운동장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347)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운동부의 감독으로서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 일정과 내용을 정하며 운동부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등 시합과 훈련, 운동부 생활 등에 있어서 소속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운동부에서 선수로 활동한 학생들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1학년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훈련을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이동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인데, 운동부의 막내로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운동부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들이 감독인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감독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꼬집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젖꼭지 부위이다. 피고인은 평소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는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12~13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성별의 남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이나 성적학대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참작한다.

<선고>

벌금 7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학생과 교제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여, 당시 16세)는 같은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업을 마친 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18고단2325, 부산지법 2019노814)

<판단>

피고인이 사제지간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학교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살시도를 하는 등 피해자가 앞으로 인격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건전한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큰 것으로 염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한다.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24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명령

(2) 부적절한 신체 접촉

- 수업시간에 잘 했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토닥거린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체육수업시간에 잘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19고단1348, 광주지법 2020노2724)

<판단>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포함되므로 피해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가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처벌 외 범죄경력 없는 점 참작한다.

<선고>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혀로 피해자의 코와 볼을 핥은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영강사이다.

피고인은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남, 10세)가 수영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코를 2~3회 핥으면서 ‘맛 없네’ 라고 말하고 다시 혀로 피해자의 볼을 2~3회 핥으면서 ‘볼은 그래도 좀 낫네’ 라고 말하는 등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서울고법 2019노906)

<판단>

피고인은 공개된 수영장에서 어린 수강생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까지는 쉽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선고>

벌금 3,0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명령

·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 팔뚝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는 어깨동무 행위, 엉덩이를 밀어내며 옆에 앉으며 5분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다음,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하자 ‘알았어 갈게’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초 동안 주무르고 양 팔뚝 안쪽 부위를 2~3초 주무르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여주지원 2021고합22, 수원지법 2022노350)

<판단>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훈계를 듣던 피해자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부풀려 진술하는 것이라 하면서 해당 행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제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하며, ‘친근감의 표현이나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현저히 약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일부 무죄> 피고인은 자습시간에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돌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를 툭툭 건드려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학생인 것으로 착각하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개적 장소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추행하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툭툭 건드린 정도는 성적

인 의미가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남학생으로 오인했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자 바로 깜짝 놀라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자유 침해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선고>

벌금 2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건이기는 하나, 교직원에 의한 학생 신체 접촉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각도로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 여성 교사가 여학생에게 “살이 좀 썩 것 같네” 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영어교사이고, 피해자(여, 14세)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중학교 복도에서 복도를 청소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몇 개월에서 걸쳐 네 차례에 걸쳐 “살 빠졌네?”,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 “살이 좀 썩 거 같네, 관리 좀 해야겠어” 라는 등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후 한 손으로 엉덩이를 1~2회 두드리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정읍지원 2020고합54, 광주고등 전주재판부 2021노160)

<판단>

피고인은 추행과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모나 체형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손으로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양손으로 훑은 후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이 있고, 해당 행위들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으로, 피해자는 학생인권센터의 조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발 없이 인사 조치 만으로 종결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형사고소에 이른 것인 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의혹의 제기부터 경찰에의 고소까지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아버지나 동료교사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과장되었다는 점 등 진술 경위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은 찾기 어렵다.

당시 중학교 2학년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신체적 변화를 느끼며 감수성이 예민해지던 시기로, 체중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온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의 용모나 체중을 과도하게 지적해왔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온 상황에서, 허리나 엉덩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조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에서 피해자의 체형이나 용모를 평가하는 발언과 동시에 행해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선고>

선고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행위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

‘여학생들 중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벗겨 버리겠다’ 라는 등의 말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생부장이다.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명의 여학생(16세)이다.

피고인은 두달 가량 학교 복도나 급식실, 강당 등에서 피해자들에 ‘바지가 짧다. 벗겨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 의자 뒤로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등에 기대거나, ‘남자는 목젓이 성감대이고 만지면 흥분한다’ 라고 말을 하거나, ‘여학생들 중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벗겨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18노1062)

<판단>

피고인은 생활지도를 한 것이고 언어 유희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재판을 받는 태도도 양형에 고려되었는데 ‘교원 신분을 유지할 목적으로 궁색한 변명으로 잘못을 회피하며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불리한 양형으로 기재되었다. 피고인이 유죄인 결론은 변함이 없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부당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되어 감형되었다.

<선고>

벌금 600만원

※ 이 사건은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언어를 바탕으로 한 사건이지만 오로지 정서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만 기소되었다. 경미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만으로 기소하는 실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너는 얼굴과 몸매가 안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한문 과목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수업시간 중 피해자 F(여, 15세)이 머리를 빗자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지·공의 뜻이 뭐야, 운 띄워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미·지·공을 순차적으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지가, 공주인 줄 알아. 이 반에는 미·지·공이 많다.” 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H에게 “너는 얼굴과 몸매가 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고, 교실에서 화장과 네일아트를 하던 피해자 I에게 “남자 꼬시러 클럽 가느냐” 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고, 사자성어 종두득두(種豆得豆)를 가르치던 중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네가 나중에 성형을 해서 예쁘고 섹시해졌는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치자. 그런데 아기가 네 성형 전으로 닮게 태어나면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고, 수업 중 밖에서 ‘중고 물건을 구매한다’ 는 광고를 하던 중고물품업자 차량이 지나가자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너희 아빠가 너를

부른다” 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적 학대>

피고인은 자습 중에 피해자 E(여, 16세)가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교실에 온 것인지, (유흥)업소에 온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으며,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교사로부터 훈계를 듣는 것을 보고 “너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대학가면 남자가 많이 꼬일텐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웃자 “그렇게 하면 남자가 바로 넘어온다”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고, 자율학습 종료 전 피해자가 가방을 앞으로 매고 있는 것을 보고, “어차피 임신 할 건데, 왜 벌써부터 임신 연습을 하느냐” 라고 말하여 성희롱 하였고, “한문수업이 시작할 때 피해자의 무릎에 다른 여학생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 자세는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아니냐” 라고 말하여 성희롱 하였고, ‘괄목상대(刮目相對)’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에게 “애가 나중에 커서 수원역에 야시꾸리하게 화장하고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떨 것 같으냐”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고, 수업 중 중국 한나라 황제 ‘유방’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에게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것 있잖아” 라고 말하여 성희롱 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교육·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해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의 15~16세의 학생들로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고,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업과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으며, 피고인의 여러 학생들이 있는 교실,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학

생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발언들이 농담이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발언의 경위 및 내용, 발언 상황과의 관련성, 그 행위가 같은 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 및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학생들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이러한 발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피로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피해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한 발언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게 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아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과 같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동인 학생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 정서적 안정감 내지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갖게 되거나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에게 농담으로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탓하는 등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저항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

벌금 10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 위 판결은 유사해 보이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정서적 학대로, 일부는 성희롱의 성적 학대로 판단하였다. 이 때의 기준을 판결 이유에서 추정해 보면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성의식을 표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등 왜곡적 성의식이 담긴 내용”,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학생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고, 당황하였으며, 자신들을 남자를 접대하는 여자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다”,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언어적 성희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발언은 피해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이나 정상적인 인격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하여,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으로 보이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성희롱으로서의 성적 학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수업시간에 부적절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다수한 행위

· ‘다른 남자 모듬원들의 기쁨조를 하라, 우리 나라 여자들은 드세다, 일본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라는 등의 발언을 다수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아동들은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E에게 “너는 내 아들과 4살 차이인데 궁합도 안 보는 네 살 차이니 너 내 며느리하자, 보쌌해가고 싶다. 그런데 보쌌해가며 너네 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겠지? 너 내 양딸해라”, F에게 “너는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눈 뜰 때마다 보고 싶다”, G에게 “한 여자에게 정착하기 싫다,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다”, I에게 “다른 남자 모듬원들의 기쁨조를 하라, 우리 나라 여자들은 드세다, 일본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H에게 “잠도 되게 몽환적으로 자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하였다.

(서울고법(춘천) 2020노121)

<판단>

피고인은 제자들을 상대로 교사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범행 횟수 및 빈도 등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선의로 한 발언이거나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교과 수업에 감사를 표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학생도 여럿이고, 1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료 교사들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정 참작한다.

<선고>

벌금 25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피해자에게 ‘눈웃음이 섹시하다’ 거나 가슴 쪽을 응시하며 “너는 단추를 잠그는게 낫겠다” 는 등의 발언을 다수 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음악교사인 자이고, 피해자들은 중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음악 수업 중 학생들에게 “E가 왜 인기가 많냐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 D(여, 15세)를 보면서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고, 음악 수업 중 악기인 우크렐라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D의 교복 상의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상의 단추를 풀어둔 다른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유독 피해자의 가슴 쪽을 약 30초 정도 응시하면서 “너는 단추를 잠그는게 낫겠다”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고, 음악 수업 중 피해자 F(13세)가 실수로 눌러 죽은 달팽이를 휴지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딸딸이 치고 닦고 있었냐”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고, 중학교 3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14세), H(14세)에게 “니들 둘이 뭐 하나, 딸딸이 치냐, 둘이 게이냐”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고, 음악실에서 피아노 위에 있던 휴지 뭉치를 보면서 피해자 I(여, 13세), J(여, 14세)를 비롯한 반 학생들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누가 딸쳤냐” 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다.

(포항지원 2019고단723)

<판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점인 점을 참작하였다.

<선고>

벌금형 선고유예

· 수업 중 피해 아동들에게 “너희 엄마, 아빠가 밤에 더러운 짓해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라는 말을 수시로 반복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역사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중학교 학생들이다.

<성적 학대>

피고인은 역사 수업 도중 피해아동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얼굴을 밀착하여 들이댄 후 눈을 맞추고 ‘후’ 하고 바람을 불었고, 사회 수업시간 중 피해아동들에게 “여자는 첫날밤에 다 벗기는 것보다 속옷만 입혀 놓았을 때 더 매력이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손으로 스스로 브래지어 끈을 내리는 시늉을 하며 입으로 ‘우~~’ 라는 소리를 내었으며, 역사 수업시간 중 피해아동들에게 “너희 엄마, 아빠가 밤에 더러운 짓해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라는 말을 수시로 반복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수업시간 중 ‘태조왕건’, ‘고종황제’, ‘명성황후’ 등 역사인물을 소개하거나 ‘임진왜란’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상황극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성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성관계시 여성이 내는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흉내내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평택지원 2019고단2205, 수원지법 2021노1947)

<판단>

피고인은 중학교 사회교사이자 학생인권부장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직 정서적·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학생들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상

처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진심이 확대·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선고〉

벌금 10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

※ 다만, 원심(평택지원 2019고단2205)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며,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정서적 학대는 위와 같이 그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곤란한 반면,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는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경우, 교사의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언사가 문제될 때마다 도의적인 비난이나 교내에서의 징계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과 더불어 취업제한을 통해 교사의 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유형력이 동반되지 않고, 단지 부적절한 발언 등만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학적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거나, 그 발언의 수준 자체가 사회

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거나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희롱’과 ‘성적 학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위와 같이 공공기관 등이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자체에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하에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성희롱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는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고,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하여 높은 법정형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적 학대행위는 성희롱 등의 행위에서 나아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것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평택지원 2019고단2205)

그러나 이상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판결 모두가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원심의 판시를 다른 판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좁히고 있으며, 성인에 대한 행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성희롱에 가져와 판단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5) 수업 외 온라인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발언이나 요구를 한 경우

· 여교사가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여)은 중학교 교사이고, 피해자(여, 16세)는 위 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장학회에 신청서를 내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언니 뽕이 대박이다, 내눈을 의심했네, 진숨이가 가슴이가, 아니 의느님작품인지, 뽕느님 작품인지, 모든남성들의 눈깔을 뽐을 태세군, 최소 경범죄 수준이다’, ‘여자들은 빅꼬추남 더러워하자나, 격하게 튀어나온놈들 추리닝꼬추남, 꼬추가 한쪽으로 쏠려서, 남자들도 브라자처럼 그런거 좀 해야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가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뽕알 털기전 보송한 뽕알 좀보소, 성기가 저토록 귀여울수가’ 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법 2019고단413)

<판단>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해당 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표현하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여성 가슴 및 남성 성기와 관련한 언어적 성희롱을 할 경우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도 남성 성기에 대한 저속한 표현들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력 등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옷테가 난다는 칭찬을 듣자, ‘니도 팔뚝살 쏘만 빼면 ㅎㅎ, 셔츠가 잘 맞을겨, 니가 굵다고, 마블리처럼 ㅎㅎ, ㅎㅎ진짜 신통할 정도로 볼록하더구나 셔츠가 딱맞’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부분 표현은 아동의 신체부위인 팔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으로서 친하게 지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선고〉

벌금 300만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선고

· 교사가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동들의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도록 강요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반 소속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한 후, 학부모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여 가입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학부

모들에게 과제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과제를 올리도록 시키는 한편으로 학부모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육관과 교육방침을 따르도록 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일 저녁 19:00까지 댓글을 쓰도록 하고, 댓글을 쓰지 않는 학부모에 대하여는 야간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댓글을 쓰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불응하는 학부모는 강제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퇴장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고인 개인의 운동 동영상을 게시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3개월 계획 신청자를 모집하고, 학부모들에게 매일 읽은 책을 한 페이지씩 사진으로 찍어 게시하도록 하거나 운동사진을 올리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게 ‘칭찬씨앗’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따라 그 자녀를 포상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이상과 같이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효행 레크 숙제’의 해당 주말 숙제로 ‘자신의 팬티를 빨고, 이를 이행한 인증사진을 게시하라’고 시켜, H(여, 8세) 등 피해 아동 20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여 부모를 통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아동의 부모들이 게시한 숙제 사진에 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T(여, 6세)의 숙제 사진에 ‘○○이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U(여, 6세)의 숙제 사진에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V(여, 6세)의 숙제 사진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 이빠여’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20고합400, 부산고법 2021노62)

<판단>

피고인은 아동 인성 지도 목적으로 수년 전부터 시행하였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2020학년도 C초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었던 ‘속옷 빨기 인증샷’ 과제를 주말 효행 숙제로 냈던 것으로, 속옷 자체가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라고 하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댓글은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달았던 것으로,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얻거나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위 사건 원심의 결과 배심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제5장 장애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례

1. 분석의 개요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가진 장애인에 해당될 수도 있고,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상 등록된 특수교육대상자일 수도 있다. 판결문에서는 그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당수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장애아동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은 특수학교 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학교 소속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통합교육을 받거나 특수학급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다. 비장애아동이 학원 등 학교가 아닌 사설 외부기관에서 학대 당한 사례가 있듯이 장애아동은 ‘치료실’ 혹은 ‘치료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을 이용하는 가운데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가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이므로 장애아동이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려다가 거부당하는 등 장애인 차별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선별 시 제외하였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교육의 현장에서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다양한 보호자들을 만난다.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소속되어 있는 학급의 담임교사,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돌봄교사, 보조교사, 보조실무사, 사회복지복무요원 중 일부의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곳에도 담당 치료사, 보조교사 등이 존재한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복무요원이 배치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직접 가르침을 행하거나 지도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사회복지요원이나 행정담당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³⁶⁾.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성격이 보다 더 강한 곳이므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역시 특별히 눈여겨 볼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으로부터의 학대를 분석하는 장이지만, 이 연구에서 심층분석을 하기 위하여 선정된 판결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를 모두 빠짐없이 이 장에 모아서 분석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해당 판시의 주된 쟁점이 장애가 아닌 행위자의 행위가 중점인 사건 혹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아동학대 사건

36) 사회복지요원의 장애아동에 대한 판결 중 공소사실 및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피고인 A, B, C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17세, 지적장애 1급)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 좀 들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 옆구리 부위를 약 5~6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15세, 자폐성장애 1급)이 다른 학생을 밀었다는 이유로 약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K(13세, 자폐성 장애 1급)이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2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께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k(13세, 자폐성장애 1급)이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차렷”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부위에 갖다 대며 “씻”이라고 말하여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채로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그 동안 피해자 앞에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4개월 동안 일주일에 약 2회 소리지르거나, 물장난을 치거나,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회복지요원으로 배치되기 전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이 없고, 병무청이나 위 학교에서 실시한 간단한 교육만 받은 후에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투입되어 별다른 지식, 기술, 경험이 없어 피고인들이 감당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전과 없는 20대 젊은이들로써 대체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모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선고됨.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743, 서울북부지법 2020노328, 대법원 2020도11208)

중 무죄 혹은 일부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쟁점을 분석한 장에 배치하였다.

이 장에 쓰인 장애아동에 대한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판결번호를 바탕으로 배치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아동학대 판결 중 신체적 학대로 원심에서 간혹 실형이 선고되었다가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여 원심보다 중한 형으로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건도 있었다.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서의 작성자가 장애아동의 보호자로서 본인 역시 장애가 중하여 자신의 이름 정도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였는지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는 감형요소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것이 힘들었던 점, 피고인 자신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르는 사람인 점 등이 감형요소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 판례

· 장애아동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다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학급의 담임교사인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는 위 특수학급 소속 장애아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합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으로 데려가 불꽃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게 등을 맞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특수학급 책상 위에 앉혀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나무몽둥이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수학급에서 다른 학생과 다툰 것에 대해 훈계하다가 피해학생이 욕설을 하자 ‘입 닥쳐’ 라고 말하며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2017고단606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백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탓하는 변명을 하기도 한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집행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다(부산지법 2019노104). 피고인은 이 형마저도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이 사건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2989).

· 지적장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행위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16세)의 교육지도를 맡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업 전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하는 말을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고법 2019노2270, 의정부지법 2019고합144)

아동에 대한 학대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이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품행이나 성향을 문제삼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초범이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단〉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원심은 배심재판 무죄)

· 지적장애 아동이 지시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행위

피고인은 초등학교 체육 방과후 교사이고, 피해자(13세)는 지적장애 2급 특수학급 학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실에서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 소재 난타봉(길이 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아동과 부모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방과후 체육교사를 한 과정, 이 사건 폭행 횟수, 정도, 훈육의 동기 등 고려한다.

〈판단〉 벌금 300만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년

· 지적장애 아동이 교실에서 떠들어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벌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7세)를 보육하는 교사로서, 교실에서 피해자가 큰소리로 떠드는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피해자에게 교실 뒤에 서 있으라며 벌을 세우고, 피해자가 벌을 서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인형이 달린 나무 막대기를 세게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아랫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안양지원 2019고단1039, 수원지법 2021노475)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황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인 체벌을 하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판단〉 벌금 500만원

세우고 때린 행위

· 지적장애 아동이 손톱깎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행동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장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손톱 깎는 것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로 머리와 몸을 누르는 행위,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팔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 피해자가 놀이를 하기 싫어하자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의자에 앉히고 나가지 못하게 끌어 안은 행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복부를 때리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해자 머리 위로 세게 돌려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 등 거칠게 힘으로 제압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거창지원 2022고단237)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설시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기재하면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음을 명시하였다.

3. 정서적 학대행위 판례

· 지적장애 아동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밥을 억지로 떠먹인 행위

〈범죄사실〉 장애학생 특수지도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냄새난다, 옷 좀 빨아 입어라’ 라며 신경질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천천히 가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등을 신경질적으로 밀면서 채찍하고, 피해자를 매점 앞에 혼자 서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주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고, 피해자가 우유를 엮지르면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도록 누르면서 강제로 닦으라고 시키고, 급식실에서 식판을 들고 앞에 가는 피해자가 자리를 찾지 못하면 뒤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채찍하고, 급식실에서 억지로 떠서 먹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판단 - 선고유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1년 6개월 간 피해자의 용변 뒤처리는 물론 생리대까지 직접 갈아주며 피해자를 보살핀 점, 거동이 불편한 다른 학생과 피해자를 함께 보살피느라 힘에 부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훈육하면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를 유예하였다.

(군산지원 2018고단6)

· 지적장애 아동이 재채기를 하여 얼굴에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행위

피고인은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7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는 아동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구소 교육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무료하게 교육을 기다리다가 재채기를 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들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듯이 강하게 피고인의 얼굴을 5회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팔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간지럼을 태우고, 피해자가 책상 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의자에 앉힌 다음 의자를 책상 깊숙이 밀어 넣어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을 손가락으로 5회 찔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19고단2543)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기 전에 보인 피해아동의 행동,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급작스럽게 보인 반응, 그 이후 약 3분간 이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 그 과정에서 보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피해아동이 지적장애 2급의 7세 아동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행동개선을 위한 치료행위라고만 볼 수는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단〉 벌금 3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선고

· 발달장애 아동에게 강압적으로 밥을 먹인 행위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피해아동(3세)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들의 인지학습 치료사 및 특수교사로 근무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원 내 조기발달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리자 피해아동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한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밥을 먹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밥을 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1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048)

양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붙잡아 제압한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보여도 그러한 방식의 제압이 아동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제출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경위일 뿐 범죄사실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2년 가량 근무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사용자인 의사, 다른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태도를 칭찬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이고 경미한 1회적 행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이 사건으로 수차 조사, 공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위하와 경고가 가하여졌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점, 피고인이 전공공부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미 충분히 받았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

· 장애아동에게 반찬을 더 먹지 못하게 하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린 행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초등 담당 특수교사이고, 피해아동 C(14세, 지적장애 1급), 피해아동 D(11세, 자폐성 장애 1급)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내식당에서 C가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자 반

찬을 더 먹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D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D 뒤통수 1회 때리고, D가 의자에 앉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좀 앉아라 앉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D가 친구 F가 가져온 뽀로로 노트북 게임기를 빼앗자 “F가 D를 때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F의 손을 잡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고법(춘천) 2020노56, 영월지원 2019고합34).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로서는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 자신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스스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아동들을 때려 학대행위를 해왔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D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며 교사로서 책무는 성실히 이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으며 피해아동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나 후유증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 부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

<판단> 벌금 8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영월지원 2019고합34)

특수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인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때려 죄질이 나쁘다. C 부친이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 피고인이 C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믿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D 부친과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D 모친이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종용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 D 모친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본인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판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 지적장애 아동이 지시 내용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언한 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15세)가 남학생들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5교시 및 6교시 수업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E 학생 아니야. 네 거 다 빼 버릴 거야. 네가 그린 것도 다 뜯어서 버릴 거야. 나중에 칼로 파 버려야지. 네 책도 내가 다 버릴 거야. 너랑은 수업 안 해. 장난 같아? 눈물도 안 나오면서 눈물 짜지 말고 너도 잘 생각해 봐.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거를 정말 다 불에 태워버릴까 지금” 이라고 말하고 큰소리를 내며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뜯어내었고, 쉬는 시간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야!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가!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소리 지르는 사람 되잖아. 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

(안산지원 2020고단2567)

〈판단 - 선고유예〉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이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함에 있어 문제 행동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및 반응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단어, 표현 및 어조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격하였고, 일부 행위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질책하는 행위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 당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불안감, 당혹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나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행위

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아동의 교육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하였다.

· 자폐아동이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식사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

피고인은 일반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육실무사이다.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6세) 학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합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아동이 수업 중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여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자, 피해아동의 책상과 의자를 교실 뒤 사물함 쪽으로 붙여 피해아동을 앉히고 그 앞에 피고인이 앉아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22고단809)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행위를 부인하면서, 타임아웃을 시행한 것이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징역 6월을 1년간 집행유예). 특히 이 판결은 ‘타임아웃’이 통용되는 훈육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행 내용이 보육자의 편의나 자폐 아동에 대한 행동 특성의 몰이해 등에 기초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장시간의 억제 내지 방치에 가깝게 이루어진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장애 아동이 소리치며 울음을 그치지 않자 폭언하고 방치한 행위

<범죄사실> 뇌병변 1급인 피해자 D(여, 16세)가 소리치며 울어 피해

자를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이렇게 울 거면 나가, 나가, 필요없어. 다른 데 가. 아무도 너 안 봐줄 거야. 어디서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교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벽을 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만 안 울어? 고등학생이 창피하게. 초등학생도 안 울고 유치원생도 안 우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누가 울어. 누가” 라고 말하며 약 40분 동안 스스로 목을 돌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계속 그러면 여기 앉아서 다음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벽보고 있어. 별이야. 니 옆에는 아무도 안 보내. 침을 흘리든 땀 하든 마음대로 해.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오줌을 싸든 말든 니 마음대로 해”, “가만 안 뒤, 선생님이 농담하는 거 못할 거 같지? 너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20고단3390).

위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로서 공소제기 되었으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녹취파일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이를 근거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 및 신체강직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학대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거의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사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계속된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판단> 벌금 400만원

4. 성적 학대행위 판례

· 중증장애인에게 동침을 한 행위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실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여, 당시 12세에서 15세)의 항문과 음부 주위를 발가락으로 약 5회 찌르는 소위 ‘똥침’을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남지원 2017고단2111)

<판단> 피고인은 1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

5. 중복 학대행위 판례

· 울고 있는 지적장애 아동에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한 행위

피고인 A, B는 사회복지시설인 *학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생활지도, 양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생활실에서 담당하는 피해자 I(6세, 지적장애 2급)의 이마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생활실에서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J가 나체 상태에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입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너한테 똥냄새 난다고’라고 큰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생활실에서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K(3세), L(5세)의 각 양쪽 관자놀이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누르며 비비는 일명 ‘주먹돌리기’를 수 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생활실에서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E(9세)의 손바닥을 철자를 이용하여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생활실에서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C(13세, 지적장애 3급)과 D(11세)가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거실에 있던 공부책상을 들고서 던지려고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생활실에서 담당하는 아동들인 피해자 E(10세), N(9세, 지적장애),

D(11세), C(13세, 지적장애 3급)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새끼, 개새끼, 쌍놈 새끼’ 등의 욕설을 수 회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법 2019고단629)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들 중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도 있었던 점,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단>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

· 지적장애 아동이 수업 중에 집에 가겠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교실에 가둔 행위

피고인 A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학교의 교사로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보조교사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집에 가겠다고 가방을 챙겼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다른 반의 매트를 교실 안으로 들고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간식을 먹고 싶다고 의자를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의자를 발로 4회 밀듯이 차고, 피해자가 다른 교과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려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를 교실에 가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건어차고, 분무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강하게 밟는 등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담임교사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보조교사로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A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5859, 2019노1768)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는 상태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며 장애아동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 바, 피고인의 폭행기간 및 횟수, 폭력의 행태,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교사들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원하여 피해아동들의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것이었는데 피해아동의 문제행동이 심해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는 등 심신이 지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24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해왔고, 피해 아동들의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잘 지내왔던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민사소송 결과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였다.

<판단>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 6월),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3년 취업

제한

-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 언어장애 아동이 강당에서 나가지 않아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어난 행위

피고인은 복지관에서 유소년스포츠를 지도하는 강사이고, 피해 아동 D(5세, 언어장애 4급)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강당에 들어와 있던 피해 아동 D가 강당에서 나가지 않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쪽 팔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팔을 잡아들어 올려 강당 안쪽에서부터 강당 출입문까지 약 9.4미터를 강제로 끌고 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9고정834, 의정부지법 2020노300, 대법원 2021도2259)

피해아동은 복지관에서 언어치료수업을 끝내고 강당에서 놀고 있었고 외할아버지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으나 피해아동이 나가기 싫다면서 강당 내 단상에 앉아 있었고 외할아버지가 계속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버티면서 단상 위에 드러눕기까지 하였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들어 올린 다음 그 상태로 약 9.4미터 질질 끌고 가는 행위 그 자체로 피해아동의 팔과 어깨 또는 허리 부위에 손상을 줄 위험성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고 자원봉사를 하던 중인 사정을 참작한다.

<판단> 벌금 200만 원(원심은 벌금 300만 원)

제6장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무죄 판결 심층분석

1. 분석의 개요

이 장은 교육이나 지도를 하는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정리하였다. 우선은 기소된 행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같은 행위 유형 안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판결번호를 바탕으로 배치하였다. 다만 유사하거나 비교할 지점이 있어서 함께 보아야 할 판례의 경우에는 이 시간의 순서에 상관없이 가독성을 위해 비교 판례에 이어 정리하였다.

법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공소제기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쉽게 말해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된 것이 대표적임)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 이 사유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대부분의 무죄판결 이유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거나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이 보기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이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 분석 가능하다. (1)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

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과 (2)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야말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으로 나누는 양상을 보였다.

이 장에서 무죄 판결을 분석할 때에는 위에 실시한 모든 무죄 판단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는 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그 이유만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 장의 심층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시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건에도 참고가 될 만한 재판부의 신빙성 판단 이유가 보여지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전부 무죄로 선고된 판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선고되었다. 이 장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분석하는 장임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유죄가 인정된 공소사실보다는 주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과 무죄의 이유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다만, 행위 분석의 누락을 피하고자 일부 무죄 판결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제3장 해당 부분에 분절하여 서술하거나, 필요시 아래 무죄 판결 분석 부분에 병기하여 실시하여 빠짐없이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 무죄 판례

· 자폐아동에 대한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이다. 피해자(4세)를 상대로 1:1 개인 인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코를 파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끝을 자신의 두 손가

락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게 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18고정1318)

무죄이유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증)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1:1 인지치료 수업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업 도중 코 판 손가락을 입에 넣거나, 주먹 권 손을 입에 넣는 등의 과잉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이 사건 행동을 한 것인 점, 자폐경향 아동의 과잉행동을 교정, 치료하기 위해 ‘촉 자극을 강화하는’ ‘누르기(압각)’의 행동치료 기법이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이는 자폐경향 아동인 피해자의 과잉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은 짧은 시간, 일회성에 그쳤고, 달리 반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사건 행동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느낀 통증의 정도가 강하여 적절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운전기사 및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의자를 넘어뜨리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귀를 약 20~30초간 잡아당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0고단265)

무죄이유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가 그 당시 한자 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바 C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 C를 비롯하여 아동들 및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전수조사를 한 후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가 유죄가 선고된 범행사실만을 진술하고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죄 부분 범행과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존재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피고인 A는 피해자 F(여, 10세)가 문을 세계 닫았다는 이유로 10분간 무릎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하여 신체학대하고, 피해자 G가 숨바꼭질을 하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G 엉덩이를 1회 때려 신체학대 등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B가 사용인인 A가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7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이유 : A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양벌규정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외 A의 유죄 부분은 B가 연 1회 정기감사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감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B가 A의 학대사실 알게 된 후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A와 D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임명종료 조치하였기 때문이다.

· 자폐아동에 대한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작업치료사이며 피해아동 D(여, 4세, 자폐 2급)는 2년 동안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아온 아동이다.

피고인은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가 놀자는 모습을 취해 빈백(BEAN BAG)을 피해자 머리에 세게 수 회 떨어뜨려, 고무 재질 스쿠터 패들을 아동 옆 바닥에 세게 치고, 스쿠터 패들 달라는 아동의 손바닥을 3회 때리고, 밀치고, 목덜미 수회 잡아 누르고, 얼굴 누르고, 볼풀장 안으로 밀어 넣고, 거꾸로 들어올려 끌고 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지원 2019고단322, 인천지법 2020노210)

무죄이유

그러나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빈백을 이용한 행위는 던지는 방식이나 강도 또한 감각통합치료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은 D 보호자로부터 D가 머리를 박지 않도록 훈육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에 스쿠터 패들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치거나 스쿠터 패들을 달라고 조르는 D를 밀어낸 행위를 한 것이고 효과가 없는 때 바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안전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마룻바닥으로 이동하여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하자 D를 뒤에서 안아 들고 볼풀장으로 이동하여 볼풀장 안에 던지듯 넣은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다.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어캠프를 위한 숙소에서 피해자 E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어단어 끝말잇기를 시키면서 엉덩이와 머리를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산지원 2017고단800, 대전지법 2018노3013)

무죄이유

피해자 E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에게 영어를 배웠고 4학년에 올라가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범행일시가 4학년이 되기 전인 점, 범행 내용은 영어단어 끝말잇기를 시키면서 엉덩이와 머리를 수 회 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직접 수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영어단어 암기 등의 수업은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어 위와 같은 암기 강요나 관련된 벌칙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가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4년이나 더 지난 뒤에 기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신체적 학대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학학원의 운전기사, 피해자 D(남, 5세)는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귀가하는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놓여 있던 연습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20고단1363, 의정부지법 2020노3132)

무죄이유

승합차에는 운전사인 피고인 외에 다른 보조교사는 타고 있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D는 운전 중

인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로 ‘할멈’ 또는 ‘할망구’ 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굴었다. 피고인은 조용하라고 몇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D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난을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침 운전석 옆자리에 있던 연습장(종이뭉치인 사진을 첨부함)를 든 후 뒤로 몸을 틀어 D의 머리 등을 연습장으로 건드리듯이 치며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당시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 호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D의 신체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된 수학교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우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머리를 수회 쥐어박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20고단1828)

무죄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매주 2회 수업을 받으면서 대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마지막 수업을 한 날도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폭행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날은 폭행당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말했다고 한 날과 모친이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하는 날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될 때 경찰에게 본인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면서 그날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고 변명하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인과 수업시 매번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관되고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한 동기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 이후 유죄의 취지로 판단 변경이 있었는지는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20노1604)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학 강사이고 피해아동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학원에서 수학 문제집 풀이를 해주던 중 피해아동(12세)이 우측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다리를 걷어차 책상다리가 피해아동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법 2019고단5242)³⁷⁾

무죄이유

피고인이 발로 책상다리를 툭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 책상을 걷어차서 피해아동에게 신체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과 달리 학원 내 책상의 경우 책상다리가 좌우로 크게 하나씩만 앉아 있는 방향과 나란한 사선방향으로 달려 있는 형태이고 그 책상다리 사이로 가로방향으로 지지대 등이 없는 구조여서 책상다리를 발로 찬 사실만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아닌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학원에서의 문제풀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들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과장된 진술했을 개연성도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 그대로를 모두 신빙하기는 어

려운 점,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아동의 친구가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책상 다리를 걷어차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고 피해아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다(남, 6세).

피고인은 유치원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귀 밑 부분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산지원 2020고단720)

무죄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목에 난 상처로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원 담당 교사가 사건 당일 피해 아동에게 목이 왜 그런지 물었으나 피해아동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면서 상처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아동도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긁힌 상처’가 발생한 여지가 크지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목조름에 의한 상처인지 긁힘으로 인한 상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진을 통한 육안으로는 손톱이나 외부 물체에 의해 긁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아동 부모가 유치원 측에 CCTV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상태에서

37) 위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책상다리가 피해아동의 무릎에 부딪히게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갑작스럽게 기존의 CCTV를 폐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음은 자명하나 피고인이 CCTV 교체, 폐기 과정을 주도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자발성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건 발행 후 피고인이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상처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모르고 자신이 담당하던 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과행위가 곧바로 학대행위에 대한 사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창원지법 2021노86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사안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채용된 채용된 수학교사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외를 받은 피해자 E(11세)와 B(13세)는 시각장애인의 자녀로서 서로 남매관계이다.

피해자 E(11세)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고 문제가 틀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계 밀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20고단1828)

무죄이유

진단일이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가 넘는 시점에서의 진단이고 그 사이 피해자가 유사한 추가 피해를 입은 상황까지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큰 정황이 있고, 피해일 직후 응급진료 당시 육안으로 보이는 턱 부위의 멍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로 판단되어 귀가조치되었고, 진료 당시 동일한 취지의 진료와 항균 작용의 약물 정도만 처방되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임을 감안하더라도 통상 자연스레 치유되는 명보다 심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훈육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

〈유죄가 선고된 부분〉

피고인은 초등학교 영어교사이고, 피해자들(3명)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저 새끼는 정말!’ , ‘저 개새끼’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고, 피해자 B에게는 필통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니 엄마도 너 이려고 다니는 거 아냐?’ 라고 하고, 친구의 연필을 주워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피해자 C가 책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 ‘돌대가’, ‘싸가지야 나가’ 라고 하며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강릉지원 2017고단1244)

〈일부 무죄〉

공소사실

장난을 많이 친다고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 다른 아이가 장난친 것을 피해자가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의 말을 따라 하였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지도하는 아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이 특별히 상처를 입거나,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보호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훈육 차원에서 1대 때린 것이고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피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며 신체적 학대에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원심의 유죄와 무죄 각 판단 부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기에 직권파기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줄여 선고하였다.

(강릉지법 2018노252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와 무죄의 이유에 대하여 원심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1) 유죄의 이유로 ‘피고인의 욕설 등 행위의 기간, 횟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그 주된 목적이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에 있었을 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데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무죄의 이유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남자아이들이었으나 피고인은 왜소한 체구의 여성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가격당한 직후에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내지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신체적 학대의 개념을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해석(2015도6781 판결)함과 더불어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때린 행위를 처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3. 정서적 학대행위 무죄 판례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유죄가 선고된 부분〉

피고인은 4명으로 특수학교 담임교사, 돌봄교사, 보조교사, 보조실무사이다. 피해자는 사립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다. 피고인 4명은 모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손, 발, 도구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차례 마구 때림)하여 모

두 징역형(주범인 담임교사는 실형,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5859 외)

〈일부무죄〉 이 중 담임교사의 일부 행위와 보조교사의 일부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1)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교실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교실에만 있게 하여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2회). 피해자의 바지가 물에 많이 젖었다는 이유로 복도에 홀로 방치하였다.

(2)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는 공모하여 위 (1)의 이유로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서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무죄이유

위 행위들에 대하여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 하는 집착이 심해지면서 교실을 자주 이탈하였는데,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점, (2) 피해자의 체격이 크고 힘이 보통 성인 남자와 같은 정도여서 교실을 이탈한 피해자를 힘으로 다시 교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성인 남자 여러 명의 힘이 필요할 정도였던 점, (3) 피해자 부모가 ‘교실 문 안 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문을 잠궈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교실 문을 잠그는 것에 동의했던 점, (4) 피해자가 일종의 시위행위의 일종으로 돌발적으로 소변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신체적 학대나 유기 방임에 상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상급심>

검찰과 구속 피고인이 항소하여 시작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기존 원심의 유죄 및 무죄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민사조정을 거쳐 피해배상을 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19노1768).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8637).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유죄가 선고된 부분>

피고인은 어학원(영어유치원) 교사이고 피해자는 해당 어학원에 다니는 아동(5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학원 강당에서 뛰어 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옆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로 갔고, 피해자가 혼자 교실에 들어가 계속 고통을 호소함에도 하원시까지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법 2017고단6279)

<일부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1)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어있는 교실로 데려가 가방과 옷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샷대질을 하고, (2) 다시 피해자를 교무실에 데려가 약 32분 간 피고인 옆에 서서 모니터를 보면서 영어 대사를 외우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이유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동에게 훈육 목적으

로 다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행위’로 의율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1)에 대하여는 CCTV 등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정황(놀이 도중 피고인의 지시로 한 아동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과 당시 물을 틀어 놓은 사정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해당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물을 틀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옆 교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옆 교실로 이동하여 옷과 가방을 한쪽으로 치우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를 하지만, 이것이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거나 신경질적인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훈육한 시간이 길어야 4분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훈육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2)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교무실에서 영어 연습을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여행 등으로 공연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 지시하는 것은 정서적인 압박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교무실은 여러 선생님이 드나드는 환경이었고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정서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법 2018노1062 쌍방항소기각) 및 상고심(대법원 2018도15473 상고기각)에서도 이 원심의 판결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이다. D가 수업시간에 필요한 가위와 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무렵 D가 학교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카메라를 소지하고 등교한 사실을 빗대어 “너네 집은 카메라 살 돈은 있으면서 가위랑 풀 살 돈은 없냐”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② 피해자들을 포함한 반 학생들에게 수업 중 “내가 처음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악기로 때리면서 수업했어”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③ 스승의 날을 맞아 피의자에게 쓴 편지에 대하여 ‘걸레 같다’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18고단2727)

무죄이유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이전에 D와 그 모친이 학교폭력을 대비하여 교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면서 교실 뒤편에 카메라를 설치하자 D의 모친에게 교실 내부를 촬영하지 말라면서 카메라를 돌려준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D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가위와 풀 등 교구를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D가 이를 준비하지 않자 준비를 잘하라면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포함한 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학생들이 떠돌고 자리에 앉지 않아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일회에 그친 점, 실제로 악기 등으로 학생들을 때린 사실은 없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훈육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③ 피고인이 D를 포함한 반 학생들에게 4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안부 편지를 써 오는 과제를 부과하였고, 2015. 12.경 D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4학년때 담임선생님께 쓴 편지를 제출받았는데 편지지가 심하게 구겨져 있어 피고인이 D에게 ‘편지지가 걸레같다. 다시 써라’ 라고 말한 점, 이에 D는 다른 편지지에 편지를 다시 써서 제출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른에게 쓰는 편지이므로 예의를 갖추라는 취지로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훈육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G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낚아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끌고 교탁 옆 칠판 앞으로 데려가 칠판을 보고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계속하여 간식시간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간식을 주지 않은 상태로 10여분간 벌을 더 서도록 하였다.

자유선택활동 수업시간이 끝나갈 무렵 피해아동을 포함한 반 아동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탁 앞 매트리스 위에 피해아동들을 앉혀 있게 한 다음 피고인 혼자 간식을 먹으며 피해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간식을 주지 아니하고, 체육수업 시간이 되지 피해아동들에게 간식을 먹지 않은 채 체육수업을 받게 한 후 뒤늦게 간식을 제공하였다.

수업시간에 피해아동 G가 장난감을 어지르며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뒤쪽에 홀로 남겨둔 채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교단 앞에 모이게 한 후 일제히 피해아동을 바라보게 하고 ‘너희들도 장난감을 어지르면 저렇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간식시간이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음 수업인 체육수업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채 장난감을 치우게 하였다.

(천안지원 2017고단2551, 대전지법 2018노1744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이유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신체적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

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되는 강력한 제재 또한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훈육행위가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만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혼자 28명의 만 5세 아동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발로 차 흩어놓거나 무너뜨리고, 장난감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엮거나 던지고, 책상과 의자를 비뚤어지게 놓는 등 다른 아동들의 놀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피해아동을 제지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끝날 무렵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간식시간 및 체육활동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교실을 정리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다른 아동들은 정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계속하여 교실을 어지르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스스로 정리하기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교실을 어지르자 정리하도록 지시하고 정리한 후에 간식을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아동의 간식을 남겨두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모습을 상당 시간 관찰하고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부여한 후 훈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른 바, 피고인이 감정적·충동적으로 훈육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훈육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교탁 앞에 모인 다른 아동들에게도 어질러진 교실 뒤쪽을 보게 하면서 ‘저 친구만 저렇게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지러운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 습관이 있다. 바르게 놀이하는 약속을 지키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에게 뒤를 돌아보게 한 것은 피해아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실이 어질러진 모습을 보면서 아동들에게 정리습관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정리를 하고 나서 간식을 주겠다’고 말하였기에 피해아동이 장난감 정리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아동

이 상당시간이 경과하도록 정리를 시작하지 않아 간식시간이 지체되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늦게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른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하러 나간 후 피고인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얼른 정리하고 간식 먹자’, ‘너는 7세니까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함께 정리를 하거나 피해아동을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만 5세로 장난감 정리를 할 수 있는 연령인 점, 정리하는 습관을 가르치려 하였던 피고인의 훈육취지, 피해아동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격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방치할 의도로 혼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늦게 주고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소 제약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기가 어지른 물건은 자기가 치운다’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행위의 하나로 설령 그것이 훈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16세)은 학생이다.

① 피고인은 1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학생들과 학교 내에서 싸운 사건에 대해 훈계를 하면서, 다른 학생 앞에서 피해아동의 무릎을 꿇리면서 진술서를 작성케하고, ② 위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단소로 손바닥을 2회 때렸고, ③ 피해아동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옆드려뺨쳐를 시키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였고, ④ 등교한 피해아동에게 ‘누구세요? 담임선생님이 누구냐’며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놀렸고, ⑤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의 내용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피해아동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충주지원 2018고단49)

무죄이유

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무릎을 꿇리면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해당 학교생활규정에서 규정한 지도방법의 하나로 볼 소지가 있는 사실, 당시에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D, E등 다른 학생도 같은 자세로 반성문 등을 작성한 사실, 피해아동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 교무실의 물적 시설이나 상황,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또는 모멸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아동이 작성한 반성문을 찢고 단소로 손바닥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아동이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처음에는 반말로 한두줄 정도 짧고 간략하게 작성하고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자 처음 작성한 내용을 엑스자를 쳐서 지우고 그 아래에 다시 작성),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폭력행위와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우, 단소로 손바닥을 때린 정도(단소를 손바닥에 대는 정도의 수준), 단소의 크기와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주먹을 쥐고 앞드려뺨쳐를 시킨 것은 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한 지도방법의 하나로 볼 소지가 있는 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의 나이와 체격·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전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받던 도중 무단으로 학교를 나간 사실, 다음날 등교한 피해아동이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말이 모욕적인 언사로 보이지는 않은 사실, 몇대로 학교를 나가거나 선생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훈계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⑤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피해아동의 수정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아동이 E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난동을 피운 사실, 생활기록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기재요령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사실,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센터에서 독서지도 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독서지도를 받는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 D(10세)가 책을 읽고 발표하는 수업 중에 손을 들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감금이야’ 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E(여,10세)는 피고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교실에 남아 의자에만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교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고, 피해자들이 울자 ‘울면 또 한번 남아있게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독서 수업 시간 중에 피해자 F(12세)가 글을 쓰다가 종이가 찢어지자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11세)는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 남으라고 한 후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나오라고 하여 다시 교실로 데리고 오고, 이에 피해자 F가 다시 교실 밖으로 도망을 가자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교실로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 F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순천지원 2019고단554)

무죄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업 전에 떠들거나 수업 중에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미리 말한 다음 아동들을 교실에 남게 하였다. 교실에서 D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E는 다른 아동과 함께 피고인이 틀어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른 아동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G는 교실 안에 들어온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들로 하여금 일정 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 가급적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실 안에서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았다. 교실 안에서 피고인은 함께 앉아 있다가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간이 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자 아동들을 교실에서 나가게 하였다. 교실 안의 상황에 대해서 D는 ‘E는 다른 아이와 놀고 있었다’라거나 ‘선생님이 엎드리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엎드려 있었다’라고 말하였고, G는 ‘친구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 동영상을 찍고 놀다가 친구들이 나가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교실 안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동들을 교실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업 중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교실에 남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실 안에서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험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평소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은 30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아동들로 하여금 교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당시 아동들이 다소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아동들의 행동, 이후 생활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내지 6학년 아동들이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에 상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2세, 여)를 체육관 사무실로 따로 불러 진로, 공부 얘기하면서 손을 잡거나 쓰다듬어 성학대, 자세 교정한다는 이유로 발목과 종아리 부위 만지고, 옆구리와 허리 만져 성학대, 생리통 때문에 수행평가 시험을 잘 못 보았으니 기회를 다시 달라는 피해자에게 “생리가 대수냐, 피 조금 흘린다고 많이 아픈 것도 아니면서 자꾸 그러냐, 애 낳는 것은 생리보다 더 아픈데 할 수 있겠느냐, 니들이 임신을 했냐, 뭘했냐,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라고 성학대, 수업 시작 전 피해자 E에게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너는 옆에서 봐도 직사각형이야” 라고 말하여 성학대, 피해자 B의 책을 뺏아 이에 항의하는 B에게 “씹할 내가 일부러 그랬냐” 라고 욕설하여 정서학대, B가 OMR카드를 교체해달라고 하자 “너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하였다.

(순천지원 2019고단1348, 광주지법 2020노272, 대법원 2021도13756)

무죄이유

이 사건을 판단한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거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동임에도 자세한 설시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 특히 유사한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뚜렷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9세)는 반학생이다.

피해자가 보건실에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수업시간 시작 후 교실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마, 너 진짜 나쁜 애다. 나대지마”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는 D에게 “너 C랑 놀지마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애, 너같이 더러운 애가 왜 우리 반에 있어, 나대지마, 따지지마, 거짓말 하지마, 너 진짜 나쁜 애다. 어떻게 3학년이 욕을 해”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교실 뒤로 나가서 서 있도록 한 후 피해자가 뒤에서 울음을 터트리자 “시끄러우니 나가서 서 있어” 라고 말해 피해자를 복도로 나가게 하고, 양손으로 눈 부위로 올려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린 것을 흉내내며 “질질 짜지 마라, 거짓말 하지마, 따지지마”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모욕하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천지원 2018고단3240, 인천지법 2020노813)

무죄이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같은 반 아동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만 9세 아동 진술을 특성상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상황을 다소 과장하는 부분, 기억이 혼재된 부분이나 자신의 감정 및 생각 등을 기준으로 묘사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훈육 목적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혼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경위, 피해자가 많이 울어서 마비가 왔던 상황은 다른 아동들이 피해자가 변기통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누는 것을 보았다고 이르면서 욕을 많이 했다고도 이르자 피해자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울면서 아니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혼내자 더 심하게 울게 된 것으로, 피해자만 물리는 상황에 따른 것이지 오로지 피고인의 발언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거짓말하지마 너 진짜 나쁜애다 라고 말을 한 것도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니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므로, 표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인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교육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종교와 철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 C(여, 16세), D(여, 16세), E(남, 16세) 등 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25명에게 “룸싸롱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번다” 라고 말하여 학생들에게 여성接客원들이 남성을 접대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것을 권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918, 서울중앙지법 2021노1661)

무죄이유

피고인이 “룸싸롱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실용음악학교였고, ‘종교와 철학’ 에 관한 수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들에게 여성接客원들이 남성을 접대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것을 권하는 취지’ 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직책,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돈을 추구하기 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인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교훈을 말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예시용으로 사용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해당 발언이 오해를 살만한 상당히 부적절한 것인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16-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아는 범위 내의 예시로써 사실 또는 정보의 전달에 그쳤던 이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훈계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요리듬 특기적성 강사로서 피해자 D(8세, 남)의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업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업재료인 컵과 악보를 주지 아니한 채 교실 뒤편 책상에 엎드리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고양지원 2020고정520, 의정부지법 2021노217, 대법원 2021도15458)

무죄이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수업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수업 배제가 일정 횟수 반복된 점, 훈육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피고인의 교육방식이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1학기에는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나, 2학기에 이르러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태도가 더욱 불량해지자 불상의 시점부터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한 충동적 감정이나 분노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피고인 나름의 교육관과 고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고성, 그 밖에 아동들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아동을 헐뜯하는 등 피해아동이 직접적으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 훈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고, 피해자는 학원 수강생(10세)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다른 학원생(피해아동의 누나)에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 피해아동과 아동의 누나 2명, 친구 1명을 원장실로 부른 후, ‘너희 엄마가 너 편을 들더라,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등 다른 학원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책하고,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원장실로 찾아오자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 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법 2022고단4193)

무죄이유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학원 내 질서 유지와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하여 훈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아동의 잘못된 언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수준에는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더 적절한 방식으로 훈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비교 판결) 훈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다. 피해자는 해당 유치원의 원아(6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원아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없으니, 그 행동을 멈추고 나에게 와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목에 가방을 걸어 준 이후 피해자를 외면하고, 상당 기간 눈길조차 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법 2018고정740)

<유죄-선고유예>

피해 아동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친구의 머리를 포크로 찌기, 손목 깨물기, 머리 잡아당기기, 가위 던지기, 교사에게 발을 쿵쿵거리며 소리치기, 교사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기, 교구를 친구에게 던지기, ‘오지마 됐어’ 라고 말하며 친구를 밀기, 너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친구의 오른팔을 젓가락으로 찌르기 등 다수)을 해서 친구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항의가 많았던 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고, 눈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동인 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의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타임 아웃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다친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울산지법 2018노1342).

4. 유기·방임행위 무죄 판례

· 찜질방에서 숙식하여 폐렴에 걸리게 한 행위를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죄가 선고된 부분>

피고인은 소수 장애아를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여러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체험학습을 가는 차량에서 고성을 지르고 조용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왼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피해자 B가 복도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등과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1622)

<일부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으로부터 월 300만원의 교육비를 받음에도 아동이 원하는 만큼의 식사를 공급하지 않고,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밥 대신 시리얼과 라면을 제공하였고, 아동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동이 폐렴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등 방임행위를 하였다.

무죄이유

판결에서는 이 부분 무죄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방임행위로 피해자가 폐렴에 걸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급심>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동부지법 2018노1221). 검사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3418).

· 숙소에 피해자들만 놔두고 야간에 외출한 행위를 방임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2019.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태권도 문화 교류 사업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선수로서 피해자 B(여, 12세)과 피해자 C(여, 12세) 등을 선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솔교사 자격으로 2019. 11. 20. 중국 항저우로 피해자들과 함께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솔교사로서 낯선 중국 항저우의 불상의 숙소
에 피해자들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야간에 취침하
는 경우 숙소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 피해자
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
리한 채 2019. 11. 21.경 및 2019. 11. 22.경 저녁 식사 후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불상의 중국인 태권도 사범 2명에게 피해자들의 보
호 의무를 맡긴 채 위 숙소에서 외출하여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숙
소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400)

무죄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2019. 11. 21. 밤과 같은 달 22. 밤 숙소에서 외출하였다가 돌
아와 학생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 아침 F에게 학생들 인솔을 부탁하고 사우나에 갔다가 학생
들과 합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밤
숙소를 비울 당시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연락을 취하면
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
의 보호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모인 메신저 그룹채팅방
에,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진들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든 학생들을 수행하였던 F이
나 학생들로부터 전송받은 것이든 위 사진들과 동영상의 존재는 최
소한 당시 피고인이 학생들을 수행하던 F이나, F을 포함한 E의 직원
들과 함께 있던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2019. 11. 21.과 같은 달 22. 당시에 피고인은 직
접 혹은 E의 직원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아동B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 일행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은 것에 관해 “기분이 나빴다”
라며 당시 느낀 감정을 진술하였는데, 달리 그로 인한 공포감이나 위
협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12세였던 피해아동들은 실제로

방임에 해당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면 구조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2019. 11. 21.과 같은 달 22. 국내에 있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인솔했던 다른 3명의 학생들이 방임 피해를 호소하거나 한국의 보호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솔 내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평가> 태권도 관장이 아동들을 부모 대신 인솔하여 외국의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이전에도 해당 외국측 주체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음을 신뢰한 태권도 관장이 일정 중 일부 시간에 숙소를 비우고 외출한 적이 있었고, 외출이 있고 난 직후 새벽에 외국인 사범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범죄피해 발생에 있어 관장의 인솔에서의 소홀을 문제삼은 사건이다.

5. 성적 학대행위 무죄 판례

· 단순한 신체접촉에 불과하고 추행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유죄가 선고된 부분>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1학년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2회 주무르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조희 중 ‘쉬어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30cm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아직 조희 중 피해자가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자 손가락을 때렸다.

(광주지법 2019고합173)

<일부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다

른 손으로 (손을) 만지거나, 머리를 톡톡치는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무죄이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을 격려 훈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행해진 것으로서 성적 만족을 얻을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손과 팔 같은 신체 부위의 경우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성적인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어떤 맥락에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행위들이 있었던 곳은 대부분 복도인데, 혼잡한 복도를 지나면서 무심결에 신체접촉이 있었거나, 격려 차원의 가벼운 신체접촉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접촉이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은 허벅지, 입술, 배와 같은 내밀성이 높은 신체부위와 달리 손과 팔 같은 외부 신체부위의 추행은 상황, 접촉의 방식이나 장소, 의사소통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판시하고 있다.

<항소심>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행위 중 하나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변경한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광주고법 2018노498)

-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해자는 해당 학원 학생으로 16세 여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아파트 앞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고민을 이야기 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러셈’이라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거기에 털이 많이 안 난 것이 예쁘다’고 하면서 ‘너는 어디까지 털이 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여기까지요’라고 말을 하자, 손을 뻗어 엄지손가락으로 성기를 누르며 ‘여기야?’라고 물으며 더 밑으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것을 만졌더니 내 것이 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럽다. 싫다’고 하자 ‘뭐가 더럽냐 만져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성남지원 2017고단3495)

무죄이유

피고인의 이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대하고 피고인과 남녀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가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 어떠한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진 이후 ‘남자 친구의 것보다 작다’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그만 만지라고 하면 피고인이 그만 만진 점,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기는 하지만 남자친구와 성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설시하였다.

<항소심>

이러한 무죄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다시 설시하면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법 2018노5867)

이 판결은 입법적인 불비와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혹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연령을 벗어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학생과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특수관계 상황에서의 동의의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 판결이다.

·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유죄 부분>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 담당교사이다.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해자(16세)에게 점프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잡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농구 레이업 슛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허벅지 아래, 골반, 옆구리나 가슴 아래쪽, 허리 등을 만지고, 체육수업 시간 또는 전후에 피해자들의 어깨나 손을 주무르거나 배구대 봉을 옮기는 피해자의 골반에서 엉덩이 사이를 잡아 미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1심 일부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사를 하는 피해자 B의 왼쪽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으며 “귀엽다” 라고 하고, 배구공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 C에게 빨리 가라며 엉덩이를 파일철로 2~3회 툭툭 쳤고, 체육관 신발장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신발을 꺼내던 피해자 R 엉덩이에 피고인 신체가 닿자 “엉덩이 들이대고 다니지마” 라고 성희롱하였다.

(충주지원 2019고합20)

<항소심 추가 무죄선고 부분>

공소사실

배드민턴을 치던 중 심판을 보던 피해자 H의 손을 갑자기 잡고, 배구 수업 중 피해자 M의 자세가 좋지 않다며 한 손으로 배구공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M의 오른 손목을 감싸 잡았다.

(대전고법(청주) 2020노12)

무죄이유

<1심 무죄부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B의 볼을 살짝 잡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가다 피해자를 만난 상황에서 추행의 의도로 볼을 살짝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을 빨리 가지러 가라고 손에 쥐고 있던 파일철로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엉덩이 들이대고 다니지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발을 꺼내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말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항소심 추가 무죄부분> 배구 언더핸드 서브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M의 손목을 감싼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위치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사전 양해를 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정상적인 체육 수업에서의 지도재량을 넘어서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배드민턴 심판을 보던 피해자 H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가 다소간의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다른 성적인 발언과 결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기 시작 전 심판을 맡은 피해자와 가볍게 인사하고 경기에 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신체접촉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가 않다.

·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며, 피해아동(여, 16세)들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학생 2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잊혀진 권리’를 설명하던 중, 피해아동 A가 “잊히다가 뭐예요?”라고 묻자, 피해아동의 실명을 기재하며 “네 전남친이 내가 나오는 야동을 찍었어. 그게 인터넷에 풀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그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겠지? 그게 잊힐 권리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가 친구의 전화번호를 “C(청소년들이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은어)”로 저장해 놓은 캡처 사진을 그 친구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하자, 그 글에 ‘이 댓글보고 D(다른 SNS 어플)에 들어갔는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했어’라는 댓글을 달면서, ‘E’라는 제목의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여 성희롱하였다.

(대구지법 2020고합352, 대구고법 2021노559)

무죄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수업 중에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던 사건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해

당 온라인 수업이 끝난 후 열어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피해 아동 A가 ‘잊히다’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을 전제한 다음 이상의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대화 경위와 전후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발언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고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해아동은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나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도 기억하지 못하다가 다른 친구가 당시 일을 말해주어야 다시 보니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성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청소년들이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은어)”를 성적인 뜻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C”를 ‘친한친구’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링크를 게시한 동영상은 10대 청소년들이 출연하여 10대들의 이성 문제 및 사생활 등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는 것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평가〉 이 판결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의 판결은 무죄 5명, 유죄 2명이었다. 범행 당시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 및 단체 채팅 등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등의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답변, 댓글 등의 경위와 내용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6. 중복 학대행위 무죄 판례

·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문화센터 발레 시간강사이다.

피고인은 나무스틱으로 피해자 C, D, E, F에게 “맞을래 죽을래” 라고 때릴 듯 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고향을 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선 채로 바지에 오줌을 누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통영지원 2019고단388, 창원지법 2020노259, 대법원 2021도1803)

무죄이유

피고인은 나무스틱을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원진술자 J, M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C는 다른 피해자들과 공연 연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모두 녹음이나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틱을 하용하였다거나 스틱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F가 연습 중 화장실에 간다고 이야기하기가 무서워 참고 있다가 오줌을 누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욕설을 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7장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분석

1.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개요

가. 아동학대 범죄 양형 관련 선행 연구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형량’의 경중에 집중한 연구와 아동학대범죄의 특수한 ‘양형요소’에 집중한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에 있어 “형량” 중심의 연구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2000년 ~ 2015년) 동안 아동학대범죄 피고인 중 실형 선고 비율이 20%에 불과함을 분석 ³⁸⁾
- 아동학대 사망사건 20건을 분석하여,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죄’가 선고되고, 실형 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전체의 1/5를 넘으며 양형 편차가 매우 심함을 분석 ³⁹⁾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에 있어 “양형요소” 중심의 연구
-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상황이 양형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피해아동의 상황이나 양육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분석 ⁴⁰⁾
-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 95건을 분석하여 감형 요소로서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

38) 이세원, 201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7(2), 113-136.

39) 이세원, 2015,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울산 계모 사건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254-286.

책감' 등이 작용한 점을 이유로 담당 법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인 재량에 따라 편향적인 양형 편차를 보인다고 결론⁴¹⁾

-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보다는 가해자 측면에서 양형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중심 양형 중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피해 아동의 의사이나,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가족이 아동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위 동기로서 우발성을 감형 요소로 보고 훈육을 아동학대의 동기로 인정하기도 하였음을 확인⁴²⁾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1)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 실제 선고형은 중하지 아니하며, (2) 양형의 편차가 심하고, (3) 양형요소에 있어 피해아동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 아동학대 범죄 양형의 특수성

(1) 법률 개정 및 양형기준표의 마련

이상의 선행연구 이후, 2021. 3. 16.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⁴³⁾’와 같은 새로운 구성요건이 신설되었고, 2023. 8. 8. 형법상 ‘영아살해죄⁴⁴⁾’가 폐지되었으며, 2022. 3. 28.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양형의 가이드 라인을

40) 이경은, 2015,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 사회과학연구, 31(3), 183-202.

41) 정익중 외, 2016,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68(2), 131-160.

42) 이세원, 2017,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인자에 대한 연구’ ,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0호), 125-157

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1. 3. 16.]

44)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폐지, 시행 2024. 2. 9.]

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특유한 양형요소를 반영한 양형기준표를 발표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과 관련된 일련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을 분석함에 있어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바,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 중 2022. 3. 28. 이후에 선고된 판례의 경우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진행 가능성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로서 처벌하는 것 외에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⁴⁵⁾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아동학대범죄이거나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사건 수는 2019년 4,851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9,570건에 달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 2022년 아동보호사건수⁴⁶⁾>

년도	아동보호사건 수 합산	심급별 사건수
2019년	4,851건	제1심 4,658건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46)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항소심 170건
		상고심 23건
2020년	8,764건	제1심 8,521건
		항소심 218건
		상고심 25건
2021년	10,257건	제1심 10,007건
		항소심 226건
		상고심 24건
2022년	19,570건	제1심 18,964건
		항소심 565건
		상고심 41건

이처럼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징역, 벌금 등과 같은 형종으로의 ‘처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 아동학대 행위태양의 다양성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범죄는 형법상의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손괴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처벌되는 금지행위가 포함되는데⁴⁷⁾,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는 다양한 행

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위태양으로서 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형량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은 정량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4) 피해자 중심의 양형요소 고려의 필요성

양형은 선고형을 정하는 단계로,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기반은 응보형주의⁴⁸⁾이다. 응보형주의 하에서는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주변인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의 회복과 같은 요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배상과 화해, 조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대두되었다⁴⁹⁾. 이러한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8)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는 기본으로 하는 사상으로, 형벌은 따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이론이다.

49) illiam G. D. & Steven P. L.(2011) 피해자학(조운오, 김순석, 양문승, 원혜옥, 이동원 외 공역). 서울: 도서출판 그린. (원서 출판: 2011), 이세원, 2017,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인자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0호), 128쪽

‘회복적 사법’의 관점하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가 처한 환경, 피해의 회복 등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욱 “피해자” 관련 양형요소의 반영이 요청된다 할 것인데,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⁵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아동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인바, 처벌에 대한 피해아동의 의사 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호상황 등), 범행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⁵¹⁾ 양상 등이 양형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양형분석의 특수성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⁵²⁾,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는

5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조적 권력관계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의 여성폭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상의 2차 피해 양상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 피해 양상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포함되는 바⁵³⁾,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경우 해당 조항을 통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라 하더라도 부모에 의한 경우보다 교원과 같이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 등을 부모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교원 등의 아동학대가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결국 초·중등학교 교원은 많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근거리에서 관찰이 가능한 관계로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됨과 동시에 아동과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함께 보내면서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만약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근거리 관찰이 가능한 초·중등학교 교원마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는 커녕 이들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아동은 그야말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이나 발견 및 처벌은 요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도입 경위와 그 목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초·중등학교 교원의 역할과 책임 및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

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의 경우, 그 가해자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⁵⁴⁾

가. 2014년 舊양형기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은 2014. 3. 31. 의결되어 2014. 10. 1. 에 시행된 것이 최초의 기준으로,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상에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제7조)’, ‘상습범(제6조⁵⁵⁾)’, ‘아동학대중상해(제5조⁵⁶⁾)’, ‘아동학대치사(제정당시 제4조, 현재 제4조 제2항⁵⁷⁾)’에 대한 양형기준을 실시 하였다.

다만, 그 실시의 형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상습범’의 경우는 기존 형법상의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에 행위자 가중요소로서 각 “종사자”, “상습범”을 규정하는 형태였고, ‘아

54)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치사’는 별개의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다.

〈2014년 체포·감금·유기·학대 중 아동학대 양형기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자	동종 누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아동학대 중상해와 아동학대치사의 경우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치하였다.

〈2014년 아동학대 중상해·아동학대 치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 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아동학대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2018년 수정 양형기준

2018. 7. 23. 에 수정되어 같은 해 8. 15. 에 시행된 2018년 수정 양형기준은, 기존 2014년 양형기준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아동학대 중상해와 아동학대 치사에 있어 형량을 다소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8년 아동학대 중상해·아동학대 치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 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이처럼 2014년과 2018년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은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유기·방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내지 치사의 결과에 이른 경우인 아동학대 중상해와 아동학대 치사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형량에의 논란이 있어 온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아동에게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에 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에 있어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21년에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이상의 지적들을 반영하여 2022. 2. 공청회를 거쳐 2022. 3. 28. 현행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기·방 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기 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

			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 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 로 한 범행
	행위 자/기 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u>상당한 피해 회복(공 탁 포함)</u>	· 이종 누범, 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 력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 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 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외)

또한,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새로운 범죄구성요건
으로서 아동학대살해에 대한 양형기준도 실시하였다.

〈현행 아동학대 중상해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 살해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 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 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 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사체손괴(2, 3유형)
	행위 자/기 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사체유기(2, 3유형)

	행위 자/기 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u>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u>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	--

이처럼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일부 양형을 상향하였고, 아동학대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인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들에 대한 양형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양형기준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는데, 감경요소로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하여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를 제외’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처벌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

만을 포함한다.’ 라고 하여 피해아동이 처벌 불원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진의에서 비롯된 처벌 불원 의사만을 양형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시하고 있던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⁵⁸⁾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살해 모두에 감경요소로써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의 회복’을 규정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양형인자에서 정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본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계량할 수 없고, 이러한 피해는 사후적으로 회복하거나 전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보시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⁵⁹⁾.

3. 교육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판례 양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분석의 한계를 감안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사건을 제외하고, 공개가 되고 검색이 가능한 형사사건 판례 중에서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

58)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들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녀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로, 성남지원 2020고단3750 참조

59) 이진화,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법 통권 통권 31호, 사법발전재단, 2015, 46-49면 참조,

판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형량 자체의 분석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태양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없으므로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가중인자와 감형인자로 나누어 분석을 하되, 아동학대 범죄에서 특히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할 “피해자” 중심의 양형요소로서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 ‘2차 피해’의 요소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 요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즉 “교원 등”의 지위와 관련된 요소, 그리고 비록 현행 양형 기준표에서는 명확히 배제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으나,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경우 피고인의 주된 변소 사유인 “훈육”이나 “지도”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영향 판단의 경향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가중인자

분석 대상 판례에서는 아동학대 범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선처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를 형량의 가중요소로 삼고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요소로 명시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인자라 할 것이다.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아 선처한 경우〉

피고인이 교사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법 2020고단339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속어 내지 욕설을 1회를 한 외에 다른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않았고

(서울동지법 2021고정219)

〈범행의 지속성, 반복성을 가중요소로 본 경우〉

자신의 지도를 받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한 훈련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언·폭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의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수원지법 2020고단6718, 수원지법 2021노2262)

위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아동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868)

한편, 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는 등으로 행위요소의 평가에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양형의 가중인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판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나. 감경인자

감경요소로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이 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교원의 경우 임용과정 및 자격 유지에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기 어렵고, 초·중등교육법령상 특히 학교 내의 체벌이 금지⁶⁰⁾되었기 때문에 피해아동

6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구 시행령 [시행 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 3. 18., 일부개정]	현행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에게 상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수위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으로 보여진다.

〈범행의 경미함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 판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장난을 치고, 규칙을 어겼다고, 뒤를 돌아본다고, 밥을 남겼다고 등의 이유로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고, 지휘봉으로 손바닥을 때리고, 프린트물로 머리 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학대행위가 의도적 상습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선고유예
(고양지원 2017고단3358)

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

우슈관장인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몸무게가 70kg이 넘었다고 운동부 선수들을 불러 모아 놓고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를 꼬집으면서 ‘이게 지방덩어리지 운동선수 몸이나 돼지새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운동을 하다가 목을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지 집에서 찜질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의 운동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정도 때려 멍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열린 정식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등 범죄나 벌금형 초과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순천지원 2018고정239)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지도교사인 피고인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시설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의 방에서 자려 한다는 이유로 ‘왜 규칙을 어기냐 네 방에서 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 옆드리고 손들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싸우는 등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업을 듣겠다고 다시 수업 장소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열린 정식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이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순천지원 2021고정637)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왼쪽을 향해 내리치며 ‘너도 친구 마음을 알겠지. 너희들 말 안들으면 머리통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고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나. 월요일 각오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와 가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새로운 지도 방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광주지법 2022고합36)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원 안에서 수업시간에 떠들고 장난스러운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1회, 배를 1회 폭행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로만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대전지법 2018고정137)

영어 공부방 원장인 피고인이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영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50cm정도의 나무막대기로 손바닥을 6대, 왼쪽 어깨를 2회,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열린 정식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학대행위가 의도적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부산서부지원 2018고정728)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자가 혼자만 과제 수행을 하지 않고 매트에 엎드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에 놓여 있던 약 100페이지 상당의 책을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맞춰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열린 정식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이를 학대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과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 학대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점, 동료교사 또는 이전 제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모범적인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통영지원 2018고정25)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단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열린 정식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학대행위가 1회성이고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고양지원 2023고정136)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강당 앞에서 달리기 후 땀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주물러 만지면서 ‘튼튼하다 이야’ 라고 말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부산지법 2022고단3748)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우발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감형하는 취지의 판시도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김천지원 2017고단879)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안아주거나 물건을 정리해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구지법 2021고단4347)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피해아동의 잘못된 수업태도나 언행을 지적하고 훈육하려는 차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구지법 2022노238)

학생부장인 피고인이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교육자로서 진중한 태도를 망각하고 우발적으로 부당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법 2018노1062)

또한, 피고인이 학대 범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보인 태도

등이 판결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안산지원 2020고단5227, 수원지법 2021노6653)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양지원 2017고단3358)

피해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학생복지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강릉지원 2017노348)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새로운 지도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광주지법 2022고합36)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상관계를 반영하여 선처한 판례도 있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증세를 겪고 있는 점(성남지원 2021고합145, 수원고등 2021노807)

피고인이 당뇨, 간질환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수원지법 2020고단6718, 수원지법 2021노2262)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점

(거창지원 2022고단237)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

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산지법 2018노1062)

관행이나 사회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언급하며,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 판례도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1985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서울북부지법 2019고합362)

단순히 피고인 개인만의 일탈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여 온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수원지법 2020고단6718, 수원지법 2021노2262)

다. 피해자 관련 요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의 양형보다 피해자 관련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측면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의 양형기준은 이러한 특수한 피해자의 요소를 반영하였다. 분석대상 판례에서도 이러한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언급한 판시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주로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서 언급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2차 피해 양상을 반영한 판례도 확인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역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시

당시 피고인의 담임학급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 시기는 교과학습은 물론 인성교육 등 학교에서 배우고 익힐 것이 많은 신체적·정신적 성장기이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학급에 차별의식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인천지법 2021고단1501, 인천지법 2021노2437)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과 성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진주지원 2021고합81)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 및 신체강직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학대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거의 없고

(서울서부 2020고단3390)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 2020고합155, 서울고등 2021노465, 대법원 2021도9429)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들로서 성적 가치관을 비롯하여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수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전주지법 2021고합255, 광주고등 전주제판부 2022노132)

피해아동은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그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

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인천지법 2020고합70, 서울고등 2021노437)

피고인은 체육 강사로 신체 건강하고, 체육 강습에서는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애매한 체벌 유사 벌칙이 허용된다고 오해되기도 하므로 (이는 현재 아동학대로 취급되나 아직도 이러한 폐습을 유지하는 학원들이 존재한다), 체육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피고인의 부당한 지도에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2022고단2911)

어떤 목적을 가졌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성장기 청소년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2021고단1913)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또래의 아동들 앞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말을 잘 듣지 않은 아이로 낙인이 찍혀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2017고단6741)

※ 비록 법정대리인(부모)이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아동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 판결도 있었다.

(2)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판시

피해자 아동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병가를 내고 도피한 후 스스로 언론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성남지원 2018고단2999, 수원지법 2021노1469, 대법원 2022도10503)

피고인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한 행위를 변명하거나 학부모·동료 교사로부터 피고인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받고자 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명예 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가족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과 주변으로부터 일상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하는 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법 2021고단1501, 인천지법 2021노2437)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여, 8세)가 있는 초등학교로 찾아와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대구서부 2021고합176, 대구고등 2021노461)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모를 모함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에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람인양 소문을 내는 등 하여 피해아동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온갖 사람들을 동원하여 허위 사실로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을 비난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제출하게 하였는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목포지원 2019고단2201, 광주지법 2021노1525)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울산지법 2021고단476)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혐의를 축소·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고

(수원지법 2020고단6718, 수원지법 2021노2262)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은 사건 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

(인천지법 2020고합70, 서울고등 2021노437)

피해 아동을 문제아로 몰아가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 측에서 받은 2차 피해도 가볍지 않다.

(마산지원 2020고단720)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고 보다는 피해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탓하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법 2017고단6061)

피해아동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법 2019고단6118)

피고인은 언어폭력을 반복하고 일부 아동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교육목적이나 교습방식에 관한 그릇된 인식과 통제적 태도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영지원 2019고단388)

피해자측을 상대로 오히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로 인한 2차 가해도 상당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원지법 2020고단3967)

라. 교원 등의 지위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양형에 있어 가중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거듭되고 있다. 교육기관 종사자 등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으로도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원 등의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이라도 교원 등의 지위를 가진 피고인의 경우 특별 가중요소로서 양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원 등의 지위가 가중요소로서 반영되는 것은 아동을 자주 접하는 전문가이자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이중적인 지위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광주고법 2018노89)

피고인은 학교 내에서도 경력이 있는 중견 교사이므로 피고인이 하는 행위는 담임학급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의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나아가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인천지법 2021고단1501, 인천지법 2021노2437)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진주지원 2021고합81)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춘천지법 2021고단12)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

(인천지법 2020고합70, 서울고등 2021노437)

약 30여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원지법 2020고단1612, 수원지법 2021노2979)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학교의 장애아동 3명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1:1 수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함에 있어 문제 행동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및 반응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지원 2020고단2567)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교사이자 역도부 감독으로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특히 체육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학교에 비해 위와 같은 우월성은 현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2021고합37, 대전고등(청주) 2021노77)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상 지적장애 학생들의 부모들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어려운 결정들을 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

더라도, 교사로서는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 자신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스스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행위를 해 왔는 바
(영월지원 2019고합34)

한편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교원의 지위가 박탈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 감경의 요소로 작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직한 점
(김천지원2020고단2039)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에서 해임되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도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주지원 2021고합81)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울산지법 2021고단476)

현재 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
(안양지원 2019고단1039, 수원지법 2021노475)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었고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인천지법 2020고합70, 서울고등 2021노437)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파면을 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취

업이 제한되어 본건과 같은 일이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부산고법(울산) 2021노6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재직하던 학교에서 파면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교직에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부산지법 2022고합85)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811)

마. 지도 및 훈육의 목적 등 참작할 사유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의 경우, 해당 범행에 있어 훈육 등의 목적을
행위의 동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범죄성립 단계에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되, 일정부분 양
형에서 감경요소로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
와 같이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훈육, 지도 목적의 행위의 동기를
참작할 만한 동기로서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향후 아동학대 양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훈육·지도 목적의 동기를 참작한 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김천지원 2020고단2039)

계속된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 2020고단3390)

피고인의 행위들이 적정선을 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안산지원 2020고단2567)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강의실 내이고,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아동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지시한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을 때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대체로 훈육 의도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주지법 2020고단2582, 전주지법 2021노881)

피고인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용변 뒤처리든 물론 생리대까지 직접 갈아줘가면서 피해자를 보살피 왔다. 다만 거동조차 불편한 아동과 피해아동을 함께 보살피느라 다소 힘에 부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훈육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원 2018고단6)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학생 지도를 위한 동기 내지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동기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분명하여 이를 교권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대구지법 2021노4368)

※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아동의 훈육의 필요성, 피해 아동 부모의 태도 등을 양형에 실시한 사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평가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우선, 이 사건 전, 후의 D의 성행이 일반적인 중학생의 비행을 월등히 초월한다. 이 사건 이전에 D는 중학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생활 지도를 받았음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만 14세 1개월에 불과한 소년범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중략) 다음으로, D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D은 종종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꾸지람을 듣는 것을 어머니에게 불평하였는데, D의 어머니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고 그 녹음 내용으로 D과 함께 학교, 교육지원청 및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중략) D의 어머니는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D을 집에 데려 오지조차 못하고 심야에 다시 가출하게 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하였는바, D의 부모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자녀를 적절히 보호, 지도, 훈육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이 D은 교사들의 지도와 훈육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사들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의 부모 역시 비행을 일삼는 자식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방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고를 부추기며 교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매우 특수한 사정이다.

(제주지법 2021고단1075)

<훈육·지도 목적의 동기를 참작하지 아니한 판례>

한문 수업을 하면서 어원을 설명하여 쉽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위를 벗어난 것이다.

(마산지원 2021고단395, 창원지법 2021노3198)

피해아동이 장난을 쳤거나, 장난을 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지도하는 아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고

(강릉지원 2017고단1244)

피고인의 욕설 등 행위의 기간, 횟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그 주된 목적이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에 있었을 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바

(강릉지원 2018노252)

학생이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 학생을 판시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 학생의 잘잘못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순천지원 2018고단1502)

제8장 결어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 내 교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판례를 기관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타 학원과 과외 등)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행위, 성적 학대, 중복 학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았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줄어든 반면 성적 학대 비율이 높아졌고, 장애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사의 경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았으며, 학원 강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에 있어서는 대부분 교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행위자의 말과 의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원은 이들 행위를 유죄로 보면서 피고인이 훈계나 시정을 위한 신체 학대 이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고 신체 학대로 나아갈 불가피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음을 설시하며 유죄로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2022. 12. 27. 법률 제19096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정화 되었지만, 체벌과 훈육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교원이 훈육이나 훈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체벌이나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학대 유형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벌이 금지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동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들, 욕설 등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 신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기·방임행위로 분류된 사건은 다른 학대행위 유형에 비하여 그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었고, 특히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유기행위로만 기소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성적 학대의 경우, 통상의 성범죄와 성착취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은 물론이고,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 행위 역시 포함되므로 통상의 성폭력 범죄보다는 범주가 넓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 중에는 교육기관에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한 사례가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의 주목하여 분석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신체 접촉 행위만 아니라 언어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여러 유형의 학대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한 중복 학대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유형의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동시에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행위)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제4장에서는,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판례 중, 1) 아동학대 해당 여부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을 이유로 심급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경우, 2) 훈육·지도 등의 목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3) 양형에 있어 교육기관 내의 특수한 사정 등을 반영한 경우로서 아동학대 여부 판단 기준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판례 38개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판단의 경위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국 판례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준하여 아동학대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1)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과 무관하게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학생에게 강요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2) 피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도, 훈계, 훈육의 필요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등 목적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3) 지도, 훈계,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이 선택한 지도 등의 방식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지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즉 지도 방식이 부적절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도, 훈계,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지도 방식이 폭력성을 가지는 등 과도하여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한편, 성적 학대행위에 있어 판례는, 1) 강제추행 등 애초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하는 행위, 2)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안, 3)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성적 요구를 한 경우에 대하여 유죄로 판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 제5장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아동학대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로 원심에서 간혹 실형이 선고되었다가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는 감형 요소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것이 힘들었던 점, 피고인 자신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르는 사람인 점 등이 감형요소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제6장에서는, 교육이나 지도를 하는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정리하였다. 아동학대 무죄판결의 대부분의 이유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과 2)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야말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전부 무죄로 선고된 판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선고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제7장에서는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에 있어서 양형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경우 해당 조항을 통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바, 아동을 자주 접하는 전문가이자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이중적인 지위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양형에 있어서 가중인자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범행의 반복성 등이며, 피해자가 ‘아동’ 이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는 취지로 형이 가중되는 것도 확인되며,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2차 피해 양상을 반영하여 형이 가중된 판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감경요소로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이 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우발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감형하는 취지의 판시도 확인되며, 피고인이 학대 범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보인 태도 등이 판결에 유리하게 반영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교원의 지위가 박탈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 감경의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의 경우, 해당 범행에 있어 훈육 등의 목적을 행위의 동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판례는 범죄성립 단계에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되, 일정부분 양형에서 감경요소로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훈육, 지도 목적의 행위의 동기를 참작할 만한 동기로서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향후 아동학대 양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은 교사들마다 다를테지만, 지도하는 행위가 학생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이 판례의 경향은 훈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상당한 지도방법이 아니거나, 과도한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수업시간에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고, 성적인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기관 내에서 교육종사자들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특히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에 대해 혼란이 많았다. 교육기관 내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하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교육기관 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개념을 정립하는 참고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